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9 Summer 2015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연구논문

유미림 |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4

이상균 · 최희 |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44

김주환 | 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74

황재원 |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100

신승복 · 최재영 |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베트남 · 중국 관계와 조선 · 중국 관계의 변화, 그리고 두 관계의 상호작용 124

연구노트

유미림 | 가제나, 강치나 - 호칭의 유래와 변천에 관한 소고 156

연구에세이

오송 | 동해 표기 문제와 위키피디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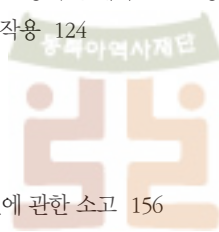
서평

이명찬 |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 다케시마=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184

영토 · 해양 일지

영토 · 해양 일지 194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98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I. 머리말

이 글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이 독도를 관할해온, 이른바 ‘실효 지배’¹를 입증하는 연구의 일환이자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전에 필자는 1902년 대한제국 내부가 울도 군수에 대해 내려준 「울도군 절목」의 세금 조항을 ‘독도 강치’에 적용하여 군수가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왔음을 입증한 바 있다.²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울도군 절목」에는 한인과 일본인의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의 ‘출입 화물에 대한 100분의 1세’ 운운은 일본인에게 해당된다. 당시 화물은 일본인이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1900년 이전부터 별목과 교역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대가로 울릉도 도감에게 물건 값의 100분의 2세를 납부해왔었다. 이것이 1902년에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이 조항을 보면 군수가

과세해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입증하려면 울릉도 수출품 안에 독도 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산 영사관에서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강치 통계가 들어 있다. 이때의 강치는 독도에서 포획된 것이었다.³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에서의 납세과목을 ‘수출세’⁴라고 주장했다.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의 규정에 의거, 독도 산물에 대해서도 납세했다면 이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고 그에 대한 군수의 관할권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 대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비판은 「울도군 절목」에서 규정한 ‘출입 화물에 대한 세금’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필자가 잘못 이해했다는 점, 두 번째 비판은 독도 강치는 울릉도에서 가공되어 수출된 것이므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재반론을 한 바 있다.⁵

전자⁶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899년 6월과 9월, 1900년 6월 모두 세 번에 걸쳐 울릉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때 일본 외무성과 해군성, 프랑스 해관 세무사, 대한제국 관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화물에 대한 세금으로 울릉도 수장에게 100분의 2세를 관행적으로 납부해왔다는 점이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수세’ 조항은 이 관행을 인정해준 것이며, 1902년의 「울도군 절목」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울릉도의 일본인은 수출품에 일종의 수출세를 납부했지만 물건에 따라 납세하는 ‘종가세(從價稅)’ 체제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독도 산물을 제외하고 납부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3 이때의 강치가 울릉도 강치인지 독도 강치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것. 『通商彙纂』 50호(鬱陵島現況, 1905. 9. 3), 「랑코도(ランコ島)의 강치잡이는 작년(1904년-역자) 경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고」라고 했으므로 독도 강치를 의미한다.

4 ‘수출’이란 용어는 국내 간 운송 물품에도 붙이지만, 외무성이 언급한 ‘수출세’는 외국으로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세목임을 의미한다.

5 유미림, 2014, 「1900년 칙령 제41호의 제정 전후 울릉도·수출세의 성격」, 『영토해양연구』 7호, 동북아역사재단; 竹島問題研究會,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ワック出版), Q85항에 대한 반론.

6 절목이 울도군에 하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수세관행에 따른 입증 사실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이 수출세를 납부했음은 여러 정황으로 입증되며, 절목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정황 중의 하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배계주가 군민에게서 고소당한 1902년에도 중앙정부는 배계주가 2% 세액(十二之稅額)을 거둔 것을 인지했음에도 “爲補於公用 而不得已而行之者也 오 實不欲營私之計 이온즉”이라며 선처를 검토하고 있다(『司法彙報』(乙) 36, 보고서 제 137호, 1902. 8. 25). 이는 절목 이후에도 2% 세율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1 이 글에서는 ‘실효 지배’(실효적 지배)에 대한 정의를, 무주지(無主地)에 대한 일국의 선점(先占)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영역에 대하여 영유 의사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점유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의미한다. 무인도인 경우, 실제적인 인간의 정주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토지에 자국 법령을 적용하고, 경제활동에 과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효 지배의 조건을 충족하는 통치행위다(김현수·박성욱, 2007,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2011, 『독도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유미림, 2013, 「수세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우리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독도산물에 대한 과세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현재 일본은 1905년을 전후하여 울도군이 강치에 과세한 사실이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행위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 대신 일본이 직접적인 주권 행위를 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1905년의 편입 후 시마네현(島根縣)의 어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竹島) 어업을 허가제로 한 뒤 감찰(鑑札)을 교부하여 국유지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다⁸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직접적인 주권 행위의 예로 제시한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바로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이른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편입한 이후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행위를 주장하려면 편입 이후의 증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편입 이전의 증거, 즉 1905년 이전 독도 강치에 대한 과세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편입 이전 강치어업자에게 과세한 사실이 있는가? 이 글은 그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다.

II. 오키국의 어업과 강치 포획

1. 오키에서의 강치어업

오키(隱岐)인들이 울릉도로 가다가 독도에서 수백 마리의 강치를 목격한 시기는 1890년대 초다. 이때 오키인들은 독도가 포경장(捕鯨場)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⁹ 오키인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은 시기는 1897년으로 추정된다.¹⁰ 그러나 이때는 본격적으로 독도로 출어 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오키인들의 목적지는 울릉도였으므로 독도 어로는 울릉도 출어 중에 있는 일이었다. 오히려 독도 출어는 주로 울릉도를 근거지로 해서 이

뤄지고 있었다. 울릉도와 오키, 두 지역민이 독도 강치를 본격적으로 포획한 것은 1903년 전후로 보인다.

강치 포획은 독도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전부터 오키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 시기는 1886년경으로 알려져 있다.¹¹ 이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시마네현 농상통계표』(1890~1903)와 『시마네현 통계서』¹² 등의 통계서로 남아 있다. 『시마네현 농상통계표』에는 농사, 잡사(蠶事), 축산, 상사(商事), 공업, 수산, 회사, 선박 등에 관한 통계가 실려 있다. 이 안의 '수산'에는 수산제조 물산의 가액(價額), 포획고, 선명(船名) 및 어부, 어선 통계 등이 실려 있다. 이들 통계서에 나타난 오키국¹³의 어획고와 과세 여부를 보면, 과세와 실효 지배의 연관성이 파악될 것이다.

오키국의 어업 통계는 1890년(1892년 발간)부터 보인다. 오키국 어획물로는 약 34종¹⁴이 있지만 강치는 보이지 않는다. 강치가 보이는 것은 1895년 통계부터다. 강치는 오키국 통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즈모국(出雲國)과 이와미국(石見國) 통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¹⁵ 고래와 강치는 모두 합수산에 속하는 어종이다.¹⁶

1894년에 시마네현은 새로 건조한 어선을 조사하면서 해역을 빈포호천(濱浦湖川), 중해(中海), 외해(外海)로 구분했다.¹⁷ 오키국은 외해¹⁸로 분류되어 있다. 오키국의 스키군(周吉郡), 오치군(穩地郡), 아마군(海士郡), 지부군(知夫郡) 4군은 다시 각각의 연해로 세분되었다. 또한 4군 안에는 각각 '사이고정 외 16개 촌', '쓰도촌(津戶村) 외 9개 촌', '아마촌(海士村) 외 7개 촌', '미타촌(美田村) 외 4개 촌' 순으로 소속지명이 밝혀져 있다.

1894년에 이즈모국과 이와미국 어획물에 고래가

11 井上貴央·佐藤仁志, 1991, 『隱岐島のアシカ獵』, 『隱岐の文化財』 22호, 74쪽.

12 『島根縣統計書』(勤業之部)에는 농업, 차업(茶業), 잡업, 축산, 임업, 어업, 공업, 광업, 어업, 금용, 기상, 잡(雜)을 실고 있다. 어업은 어선, 난파어선, 어획물, 수산제조물, 수산양식, 원양어업에 관한 통계를 실고 있지만, '현세총량(縣勢總攬)' 형식으로 어획, 수산제조, 기타 수산의 총액을 적고 있다. 『島根縣農商統計表』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같은 해의 통계가 다른 경우가 있다.

13 이즈모·이와미·오키가 시마네현 관할이고, 다시 스키·오치·아마·지부군 4군은 오키국 관할이다.

14 어종을 명기하되 '기타'로 분류한 것도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의 숫자는 파악할 수 있다.

15 1891년 통계에 따르면, 오키국의 어획물은 약 34종, 이즈모국은 68종, 이와미국은 52종이, 1892년에는 이즈모국이 65종, 이와미국이 50종, 오키국이 36종이 있다. 그러나 고래나 강치는 보이지 않는다.

16 수산물은 합수산물(鹹水産物, 해수산물로 도 표기)과 담수산물로 구분되는데, 합수산물은 다시 건조류(乾物類), 염물류(鹽物類), 태조류(苔藻類), 잡류(雜類)로 세분된다.

17 '외해'의 사전적 의미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즉 외양"으로 '내해(內海)'와 반대되는 의미이다. '내해'는 '중해(中海)'의 의미에 가깝다고 되어 있지만, 시마네현 자료에도 명확한 구분 기준은 없다.

18 1905년에는 '다케시마' 즉 '독도'도 외해의 범주에 들어 있다.

7 竹島問題研究會,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ワック出版), Q85항에 대한 반론 참조.

8 竹島問題研究會,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ワック出版), Q85항 참조.

9 『山陰新聞』, 1894. 2. 18, "朝鮮竹島探檢" [兒島俊平, 1988. 2. 『隱岐漁民의 竹島(鬱陵島)行』, 『郷土石見』 21호, 42쪽에서 재인용].

10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에 따르면, 1897년 울릉도에서의 난파선 수색을 위해 도항했던 오키 어선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판매한 이래 포획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 따르면, 1890년대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했으나 강치잡이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시바시 쇼타로는 1890년대 중반에 울릉도는 가지 않고 독도에서만 강치잡이에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였지만, 오키국에서는 보이지 않았다.¹⁹ 1895년이 되면 강치(원문은 海驢, 아시카)²⁰가 오키국 합수산²¹ 어획물로 맨 앞에 나온다. 오키국 가운데 지부군 연해 5개 촌²²의 어획물로서 어획량은 750관, 가액(價額)은 35엔²³이다. 이 숫자가 오키국의 총계이므로 지부군의 총계가 바로 오키국 총계임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 농상공부통계표』에는 1896년도분이 누락되어 있다.²⁴ 강치는 1897년의 통계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데, 스키군²⁵의 어획량은 300관 250엔, 지부군²⁶은 60관 40엔, 합계가 360관 290엔이다. 1895년에 비해 수량은 감소한(750관→360관) 반면, 가액은 35엔에서 290엔으로 증가했고 스키군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해에는 해역이 ‘중해외해(中海外海)’, ‘중해’, ‘외해’²⁷로 분류되어 있다. 1895년에는 ‘스키군 연해’ 안의 ‘스키군’으로 칭했는데, 1897년에는 ‘스키군’으로 칭하고 있다.²⁸ 1894년에는 스키군 소속의 ‘사이고정 외 16개 촌(村)’²⁹으로만 표기했는데, 1895년에는 스키군에 속한 정촌(町村)의 이름을 전부 표기하고 있다.²⁹ 그런데 ‘다케시마’³⁰라는 촌명은 1905년 4월 이전까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1898년의 강치 어획량은 스키군이 400관 40엔, 지부군이 30관 15엔이고, 오치군과 아마군의 어획량은 보이지 않는다. 1899년에는 어획량이 강치, 고래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강치 어획량은 스키군이 330관 64엔, 지부군이 250관 75엔으로, 합계가 580관 139엔이다. 이해에도 스키군이 지부군을 앞섰다. 그렇다면 강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반적으로 어획물은 ‘잡종세’ 안에서 ‘어업채조’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구체적인 것은 ‘어업채조세 과목과

19 어종은 이즈모가 51종, 이와미가 96종, 오키는 58종이 있다. 고래 포획이 어선의 크기와 관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에 시마네현에서 5칸 이상 어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아이카군(秋鹿郡)이다. 5칸 이하의 선박은 스키군이 6척, 지부군이 5척, 아마군이 2척, 오치군은 없다.

20 한국은 강치 혹은 바다사자라고 부르지만 조선시대 문헌에는 가지어(可支魚, 嘉支魚, 可之魚)로 나온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가지’는 동해 사람이, ‘강치’는 북해 사람이 붙인 명칭이라고 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어명(魚名)에 ‘치’자를 붙이는 것은 방언이라고 했으므로 바다사자에 대한 조선시대 속명(俗名)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호칭 ‘아시카[海驢]’의 대(對)로서, 그리고 특정 시기의 호칭으로서 ‘강치’로 칭하고 필요한 경우 원문을 병기했다.

21 이하 강치가 합수산 어획물이라는 사실은 생략한다. 이 글의 통계는 합수산 어획물 통계다.

22 美田村, 別府村, 宇賀村, 浦郷村, 知夫村이다.

23 1895년 쌀 10kg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엔은 약 6,000엔이다. 메이지 시대 쌀값은 변동이 심해 10kg 기준, 2,500엔에서 6,000엔까지도 편차가 크다. 2004년 기준으로는 10kg당 3,536엔이다(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6쪽 참고).

24 일실된 듯하다. 『島根縣統計書』는 마이크로필름이 있지만 어획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25 사이고[西郷] 나카정[中町] 외 21정촌(町村)이다.

26 미타촌(美田村) 외 4개 촌이다.

27 이즈모국 아쓰카군[八束郡]은 ‘중해외해’로, 노기군은 ‘중해’로 분류되어 있다. 오키국 외에 이즈모국과 이와미국 가운데 ‘외해’로 분류된 지역은 簸川郡, 邇摩郡, 安濃郡, 那賀郡, 美濃郡이다.

액(漁業採藻稅課目課額)’을 따르는데, 고래는 마리 수³¹에 따라, 어망은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원별로 과액을 매긴다. 채조(採藻)에 대한 세금은 인원 혹은 어장을 구분하여 매긴다. 주로 연세 혹은 계절제로 부과된다.

1900년 강치 어획량을 보면, 스키군이 102관 40엔, 지부군이 275관 72엔이다. 전과는 달리 ‘강치’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1901년에도 어획물 64종 가운데 강치 어획량은 스키군이 75관 31엔, 오치군이 60관 18엔, 지부군이 918관 306엔이다. 지부군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오치군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³² 1902년에는 62종의 어획물 가운데 강치는 스키군이 608관 116엔, 지부군이 632관 210엔으로 비슷하며 이번에는 오치군이 빠져 있다. 아마군은 줄곧 통계가 없었다. 1903년의 어획량은 스키군이 550관

那賀郡, 美濃郡이다.

28 스키군은 사이고 나카정 외 21정촌, 오치군은 津戸村 외 8촌, 아마군은 海士村 외 7촌, 지부군은 美田村 외 4촌으로 변동이 없고, 오치군만 촌 한 개가 증가했다.

29 스키군에는 3개 정(町)과 16개 촌이 있다. 오치군에는 10개 촌, 아마군에는 9개 촌, 지부군에는 5개 촌이 있다. 이 글에서 촌의 이름은 생략한다.

30 이 글에서 칭하는 ‘다케시마’는 특기하지 않는 한 ‘독도’를 가리킨다. 다만 인용문 등에서 일본이 주체일 경우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다.

31 1889년 포경에 대한 과액은 한 마리당 25엔이다.

32 고래는 오치군이 425만, 85엔의 어획고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 강치보다 많다.

33 어획물은 어류, 개류(介類), 조류(藻類)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를 포함해서 대략 48종의 어획물이 명기되어 있다. 고래는 어류에 보인다.

34 편의상 오키 강치, 독도 강치로 칭하기로 한다.

165엔, 지부군이 887관 288엔이다. 그런데 『시마네현 농상공부통계표』에서 강치 통계가 보이는 것은 1903년까지다. 이 통계표는 이후 『시마네현 통계서』에 통합된 듯하지만 여기에도 1904년 이후 어획물 명단에 강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³³

한편 1904년은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통계가 보이는 해다. 위에서 언급한, 1903년까지 시마네현이 강치 과목을 명기하지 않은 원인을 구명하기 전에 먼저 오키국의 강치 어획량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조사일은 12월 말일 기준, 1896년은 통계자료 자체가 없음).

이상의 통계로 알 수 있는 것은 1890년대 중반부터 1903년까지는 오키국 4군의 연해에서 강치가 포획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의 강치가 독도 강치가 아님을 포획지를 ‘지부군 연해’라고 밝힌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오키 강치³⁴ 포획은 1895년경 지부군에서 시작되었지만 스키군, 오치군으로 확대되었다. 스키군의 포획량이 지부군을 초월하다가 다시 지부군이 스키군을 초월하는 양상을 띠지만 큰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 오

〈표 1〉 오키국의 강치 어획량

연도/지역	스키군(수량/가액)	오치군	아마군	지부군	오키국 총계	해역 구분
1895	없음	없음	없음	750관/35엔	750관/35엔	외해/지부군 연해
1896						
1897	300관/250엔	없음	없음	60관/40엔 ³⁵	360관/290엔	외해/스키군
1898	400관/40엔	없음	없음	30관/15엔	430관/55엔	외해/스키군
1899	330관/64엔	없음	없음	250관/75엔	580관/139엔	외해/스키
1900	102관/40엔	없음	없음	275관/72엔	377관/112엔	외해/스키
1901	75관/31엔	60관/18엔	없음	918관/306엔	1053관/355엔	외해/스키
1902	608관/116엔	없음	없음	632관/210엔	1240관/326엔	외해/스키
1903	550관/165엔	없음	없음	887관/288엔	1437관/453엔	외해/스키군
1904 이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치군은 뒤에 포획지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 1903년까지 보이던 오키 강치가 이후로는 통계서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1904~1905년간의 ‘울릉도 수출통계’에서 보인다. 이때의 강치는 독도 강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시마네현은 1903년까지의 오키 강치에 대해서는 과세했을까? 이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오키국의 어업 현황이 강치 포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오키국 어업 인구나 강치 포획 통계

같이 시마네현 관할인 이즈모국과 이와미국 일부에서는 강치 포획에 관한 통계가 보이지 않는다. 오키국 4군 가운데서도 지부군이 가장 먼저 보인다. 이런 현상이 어업 현황과 관계가 있는가? 1893년 오키국의 어업 인구³⁶를 보면, 겸업인구를 포함하여 스키군이 2,998명, 오치군이 868명, 아마군이 2,138명, 지부군이 1,527명, 모두 7,531명이다. 스키·아마·지부·오치군 순서다.³⁷ 그런데 어선 현황을 보면, 이즈모국은 18척인데 오키국은 한 척도 없다. 수산제조물에 고래기름이 들어 있지

³⁵ 지부군도 해역이 ‘외해/지부군’ 혹은 ‘외해/지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³⁶ 통계서에는 전업 인구나 겸업 인구로 구분되어 있다.

³⁷ 이즈모국 시마네군의 어업 가호는 1,901호다. 이 가운데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남자가 1,628명, 여자는 215명이다. 겸업으로 하는 남자는 1,771명, 여자는 59명이다. 모두 3,973명이 어업 종사자다. 대체로 겸업 가호가 많다.

만 오키국은 어유(魚油) 제조 기록도 없다. 이즈모국의 해수산물은 65종이지만, 오키국은 38종이다. 어업 인구, 어선, 어획물 종류로 보면, 이즈모국에 비해 오키국이 상대적으로 어업이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치는 오키국에서 포획되고 있다.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오키국의 어업 가호를 보면,³⁸ 인구나 어선 보유면에서 스키군이 다른 군을 앞서고 있고 그다음이 지부군이다. 1903년 어선 보유현황을 보면, 스키·지부·아마·오치군 순이다.³⁹ 1903~1904년에 독도로 출어한 자들도 대부분 스키군 출신이었다. 어선 보유현황, 어업 가호나 인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키국 어획고에서 강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표 2〉와 같다.⁴⁰

³⁸ 가호 숫자는 겸업을 포함한 숫자고, 어선은 총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선은 1890~1893년까지는 어망에 따른 어선으로 구분하다가, 1894년부터는 신조어선, 폐용어선, 난파어선, 어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5칸 이상과 5칸 이하, 3칸 이하로 구분하는데, 3칸 이하가 대부분이다. 1903년까지는 「島根縣農商統計表」에 근거했고, 이후는 「島根縣統計書」에 근거했다.

³⁹ 5間(1891년 도량형법에 기초, 1間을 6척, 약 1.818미터로 하는 단위를 따름) 이상 어선을 보유한 군은 4군 가운데 하나도 없고, 5칸 미만 3칸 이상 어선 보유현황을 합하면 스키군(1,741척)이 가장 많다. 지부군이 1,242척, 아마군이 842척, 오치군이 577척이다.

⁴⁰ 「島根縣農商統計表」의 ‘해수산물 포획고 표’에서 오키국(스키, 오치, 아마, 지부)의 통계만을 적었다.

⁴¹ 원문이 분명하지 않다.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종의 상품성이나 어로기술, 어선의 크기와 보유현황, 인구 등을 들

〈표 2〉 오키국 어획고와 강치 비율 (1896년은 자료 없음)

연도	어종	수량(관)	가액()	강치 표기	강치 포획 통계
1892	鯛, 烏賊 등 36종	1,854,121	89,983	없음	통계 없음
1893	鯛, 烏賊 등 38종	2,536,582	138,890	없음	통계 없음
1894	58종	1,750,532	98,761	없음	통계 없음
1895	59종	1,863,114	141,712	海鱸(アシカ)	750관/35엔
1897	96종	8,859,773	6,822,800	海鱸	360관/290엔
1898	96종	11,042,435	10,577,432	海鱸	430관/55 ⁴¹ 엔
1899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海鱸(アシカ)	580관/139엔
1900	57종	10,386,444	880,684	海鱸	377관/112엔
1901	64종	8,127,243	917,669	海鱸	1,053관/355엔
1902	62종	9,305,617	1,016,702	海鱸(アシカ)	1,240관/326엔
1903	60종	8,153,995	942,889	海鱸	1,437관/453엔
1904	62종	통계 없음	87,337	없음	통계 없음
1905	40종	통계 없음	1,067,942	없음	통계 없음

수 있다. 강치 어획은 오키와 다른 지역 간 비교에서는 어선 보유량 등과 무관한 데 비해, 오키국 안에서는 어선이나 어업 인구나 상관성이 있었다. 다만 스키군이 어업 가호나 인구, 어선 보유 면에서 다른 군을 앞지르지 만, 강치 포획 총량은 지부군이 가장 많다. 총량이 아닌 연도별 가액은 대체로 스키군이 고른 포획량을 보인다. 평균적으로는 스키군, 지부군, 아마군, 오치군 순이다. 다만 오키국 전체의 어획량과 어획고에서 볼 때 강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고래는 한 마리당 25엔의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1901년 오키국의 고래 포획량은 425관 85엔이고, 강치는 355 엔이었다. 이해의 오키국 총 어획고는 917,669엔으로 이는 64종에 대한 가액이다. 이는 하나의 어종당 14,338엔 정도의 어획고를 올린 셈이 된다. 고래와 비교하면 강치 어획고가 많은 편이지만, 전

42 합자회사의 3개년 통계는 1909년 6월 7일 오키 도청 농상계 서기 有美孫(유비손, 아리 비손?)의 조회(농農) 제377호에 대한 나카이의 답신서에 나온 통계다.

43 가족 통계만을 적었다.

44 박병섭은 현재의 쌀값으로 환산하여 240만 엔으로 보았다(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 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름).

45 4,260엔으로 기록한 것도 있다. 이시바 시 쇼타로,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이구치 류타 세 사람의 주업자, 종업자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진술이 엇갈린다. 4,260엔은 자본금을 뺀 금액이다(『메이지 37년 다케시마(구 리양코도) 강치어업조합 사업』,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문서 제목은 시마네현이 철하면서 붙인 건명(件名)으로, 원문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시마네현이 붙인 소장 문서의 건명을 따랐다. 이하도 마찬가지다.

46 자본금은 1,500엔이다(『메이지 36년 조사

체 어획고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고래에 대한 '과목 과액'은 있고, 강치에 대한 '과목과액'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다시 고찰할 것이다. 다만 강치 포획은 1901~190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1903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음을 밝혀둔다. 1904년부터는 <표 3>에서 보듯이 강치는 오키인과 울릉도인, 두 지역민이 포획하고 있었다. 포획지를 불문하고 1903~1908년까지의 강치 포획 통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통계는 1903년에 오키와 독도⁵⁰ 두 지역에서 강치 포획을 했음

을 보여준다. 다만 이때까지는 오키에서의 어획고와 독도보다 많다. 그러다가 1904년부터는 오키에서의 강치 포획 통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포획이 이뤄지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통계가 누락되어서인가? 1904년부터는 『시마네현 통계서』로 통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도 1904년부터 강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오키에서 더 이상 강치 포획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마네현이 강치 포획을 독도로만 제한한 것은 1905년 4월 이후다. 그런데 그전부터 오키인들은 더 이상 오키에서 포획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中井養三郎 강치어업),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47 1904년 조사, 자본금은 300엔이다. 이 문서에는 어획고만 나와 있다(『메이지 37년 조사中井養三郎 강치어업 경영』,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포획한 개체의 두(頭)수와 무게는 「리양코 섬 영토 편입과 대외 요청 설명서 사본」, 『秘』竹島』에 보인다.

48 「리양코」 섬 영토 편입과 대외 요청 설명서, 『竹島一件書類』 및 『昭和28年度涉外關係綴』(1953) 중 「竹島어업의 변천」에 수록된 「다케시마 강치어업 성적도(成績圖)」, 38년도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 영업보고서(『竹島一件書類』 수록), 박병섭(2011, 『竹島=獨島漁業의 歷史와 誤解(1)』, 『北東아시아文化研究』 第34号)에는 금액을 2,559엔, 현재 쌀값으로 998만 엔으로 적었다.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의 포획 두수는 같으나 금액은 5,437엔, 5,940엔, 5,878엔으로 각각 다르다.

49 수량과 어획물 가액은 기록에 나타난 대로 적었다. 가액은 자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다.

50 다루라는 1903년 이전 독도 강치어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김선희, 2010, 『다무라 세이치로로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신연구」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표 3> 1903~1908년간 강치 포획 통계⁴⁹ (단위는 포획량/가액)

연도/포획자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⁴²	포획지
오키인	1,437관/453엔						오키
울릉도인 ⁴³		800관/600엔 ⁴⁴	1,275관/700엔				독도
하시오카 도모지로 외	/1,960엔	610마리/4,025관/ 4,235엔 ⁴⁵					독도
나카이 요자부로	/849엔 30전 ⁴⁶	7,690관 (2,760마리)/ 2,723엔 40전 ⁴⁷	3750관 (1,003마리), 가름 3,200관 ⁴⁸				독도
나미 간이치		890엔(자본금은 1,121엔)					독도
가토 주조		300엔 (자본금 200엔)					독도
이구치 류타, 이시바시 쇼타로	326마리 (2,142관+가타/ 1,261엔 35전)	975엔 (가족이 715엔)					독도
다케시마어업 합자회사				1,385마리/ 1,948엔	1,600마리/ 2,094엔	1,680마리/ 1,889엔	독도

했다면(표 3)), 이는 포획지가 오키에서 독도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강치는 일본 연안과 동해안에 서식하는 동물이지만 생식을 위해서는 조용한 무인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강치에게는 오키 연해보다 독도가 생식에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어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강치를 포획하던 시기도 생식기였다. 오키 강치는 독도에서 암컷을 쟁탈하기 위한 권력투쟁에서 패한 수컷들이 오키로 내려온 것이라는 설이 있다.⁵¹ 이에 근거한다면 강치 생식지는 오키가 아니라 독도라고 볼 수 있다. 1903년 이전 오키인들이 오키 연해에서 포획한 강치가 본래는 독도에서 간 것이라면, 독도 왕래자들은 오키에서보다 더 많은 강치를 독도에서 목격했을 것이다. 1904년과 1905년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⁵²를 비롯한 어로자들이 독도에서 포획한 숫자가 오키인들이 오키에서 포획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1904~1905년에 독도 강치를 포획한 사람은 두 부류다. 하나는 오키에서 건너간 사람들, 다른 하나는 울릉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울릉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독도 강치에 대해 울도 군수에게 이른바 ‘수출세’를 납부했음은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오키에서 건너간 독도 강치를 포획한 사람들도 오키 도사에게 납세했을까?

시마네현 지사는 현재의 관할구역의 장(長) 즉 도사(島司)나 군장(郡長), 시장(市長)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와 징수권한을 부여해왔다. 지방세 징수체계는 부현제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하여⁵³ 1887년 3월에는 ‘영업세잡종세 징수규칙’이 제정되었고(현령 제20호), ‘지방세 징수규칙 취급수속’도 제정되었다. 어업 관련 세제는 ‘현세부과규칙(縣稅賦課規則)’ 안에서 ‘영업세잡종세’로, 그 가운데서도 ‘잡종세’로 분류되고, 잡종세에서 ‘어업채조(漁業採藻)’의 범주에서 과세되었다. 규칙이 제정되면 ‘시행세칙’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영업세잡종세 과목과액’⁵⁴이 상정된 것은 1889년 1월(현령 4호)에 와서고, 잡종세에는 조수렵(鳥獸獵) 규정도⁵⁵ 포함된다.

51 이노우에는 오키에서는 어린 강치가 잡힌 기록이 없음을 들어 적어도 메이지 중기 이후로는 미타베[三度] 근처에서 강치 서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井上貴央·佐藤仁志, 1991, 앞의 글, 82쪽).

52 나카이는 1909년 기록에서 이전부터 오키 도젠의 미타베에서 강치를 생포할 수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53 일본에서 부현제가 제정된 것은 1878년 7월 부현회(府縣會) 규칙을 반포하면서부터다(『現行地方制度提要』, 川又岩吉, 1892, 12).

54 ‘영업세 과목과액’은 상업, 공업으로 분류된다. 상업은 다시 회사·은행·소매상 등으로, 공업은 공장·직종별 제조장·직공에 대해 매겨진다. ‘잡종세 과목과액’은 요리점, 음식점, 이발사, 배우, 스모, 시장, 인력거, 승마, 도축, 조수렵, 자전거 등과 연관된 모든 직업에 매겨졌다.

55 조수(鳥獸) 한 마리당 연세(年稅)가 1엔(圓)으로 정해졌다가 삭제되기도 한다.

56 시마네현령 제109호(1887. 12. 14).

57 현령은 현 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현세부과규칙’, ‘어업단속규칙’ 등이 현령으로 제정·개정된다.

58 영훈(令訓)에는 달(達), 훈령, 통지(通知)가 포함된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하부기관에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59 고시 문서철에는 고시(告示)와 고유(告諭)가 철해져 있다. ‘고시’란 공기관이 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혹은 그 형식의 하나다.

60 시마네현립도서관 소장 소장 『島根縣令』은 秋鹿村役場, 서무 1부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청구번호는 S54 093.1).

61 이를 테면, 地引綱은 1등급 1측의 길이가 920심(寸) 이상인 경우, 7엔 50전이 부과된다고 했다.

62 1등급 1측에 대해, “1엔부터 어획고 300엔 미만은 100분의 1,300엔 이상은 100분의 1.5, 400엔 이상은 100분의 2를 늘려 부과한다”고 했다.

63 투망어업의 경우 1등급, 한 사람당 연세(年稅)가 40전이다.

64 ‘湖川部’ 어획물에 대한 과액도 규정되어 있다.

65 연세가 “어획고 300엔 미만은 100분의 1,300엔 이상 500엔 미만은 100분의 2,500엔 이상은 100분의 3”으로 정해졌다.

66 1890년 9월 30일 법률 제88호에 따라 ‘府縣稅徵收法’이 공포되었다(관보 10월 1일). 각 시정촌은 부현세를 징수하여 이를 부현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부현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이 법을 지방세 징수에 적용하게 했다(国安久助 編, 1891, 『縣稅取扱規程』).

어장 및 어구, 어망 등 어업에 관한 사항은 ‘어업조합규약’⁵⁶과 어업단속규칙[漁業取締規則]⁵⁷으로 규제된다. 시마네현은 어업 환경이 변할 때마다 현세부과규칙과 시행세칙, 어업단속규칙,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을 거의 해마다 개정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현령(縣令),⁵⁸ 훈령,⁵⁹ 고시⁵⁹ 등의 형식으로 공포된다. 시마네현령 제1호⁶⁰는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86년 11월(1887. 12. 28 간행)부터 발령되어 현공보(縣公報)에 등재되었고, 군사무소 및 호장(戶長) 사무소에 게시되었다(1886. 11, 시마네현령 제43호). 어업 관련 세제도 대부분 현령으로 공포되었다.

‘어업채조세 과목과액’(1. 29, 현령 제6호)이 처음 보인 해는 1889년이다. 포경(捕鯨)과 지인망,⁶¹ 중인망, 대부망,⁶² 수조망, 잠수기, 오징어낚시, 해조류 채취 등 모두 39종으로 분류하되 각기 두(頭), 측(側), 측장(側長), 인원⁶³에 따라 연세(年稅) 혹은 계절세를 부과했지만⁶⁴ 강치에 관한 과목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강치를 잡은 기록이 없으므로 과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1890년에 개정된 ‘어업채조세 과목과액’(1. 31, 현령 제8호)은 관할 구역 밖에서 왔을지라도 본적지에서의 납세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시마네현의 규칙에 따라 납세하도록 했다. 포경세 내용도 1889년보다 구체화되었다.⁶⁵ 이해에는 ‘부현세 징수법’⁶⁶이 공포되고 세칙⁶⁷도 정해졌다. 1891년 1월에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이 다시 개정되었다(현령 제14호). 1892년에는 ‘부현세 징수법 세칙’도 개정되었다(현령 제5호). ‘어업채조세 과목과액’도 개정되었는데, 포경세가 없어지고 과세 대상인 어망의 종류도 감소했다. 1893년의 ‘영업세잡종세 과

목과액'(1. 20, 현령 제9호)을 보면, "잡종세 안의 어업채조세 과목액은 별도로 정"한다(제3조)고 했다. 변경된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에(1. 26, 현령 제11호), 포경세가 다시 포함되었다. 이어 개정된 '영업세잡종세 과목과액'(현령 제123호)에서는 '조수렵'⁶⁸도 개정되었다.

1894년(현령 제15호)의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에는 '포경'과 '지인망' 등 약 32종에 대한 과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망(大敷網)'의 과액은 1889년보다 감소했다.⁶⁹ 1895년에 처음으로 오키 강치에 관한 통계가 보인다. 이해에 '수산업 조합규칙'이 만들어졌다(12. 27, 현령 제71호). '영업세잡종세 과목과액'(12. 29, 현령 제73호)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강치 관련 과목은 보이지 않는다. 강치 포획에 관한 통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목과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강치를 포경이나 다른 어망에 포함시켜 과액을 매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어망 명기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잡종세의 '어업채조' 부분을 보면, 포경과 어망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1896년의 '어업채조세 과목과액 시행규칙'(2. 19, 현령 제14호)에는 이전에 없던 '부망(浮網)' 등이 추가되었다. 1898년(2. 1, 현령 제7호)의 '지방세 부과규칙'의 '어업채조'에는 서양형 증기선과 풍범선, 50석(石) 이상의 일본 선박 등에 관한 과목도 추가되었다. 1899년의 '현세부과규칙'(현령 제14호) '어업채조'를 보면, 이전처럼 52종의 어망과 선박 종류를 명기하고 있지만⁷⁰ 강치를 잡을 만한 어망은 보이지 않는다. 1900년에도 '어업채조'를 포경, 대부망, 부망 등으로 분류한 것은 이전과 같은데⁷¹ 세수(稅收)가 오키국 4군 가운데는 스키군이 1,425엔 40전으로 가장 많다. 1900년은 '한해통어조합 규칙'이 정해진 해다(2. 13, 현령 제7호). 이 규칙은 한국 연안으로 가는 일본인 어업자에게 조합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조합은 '시마네현 한해통어조합'으로 칭하게 했다. 이해에도 '현세부과규칙 시행규칙'

67 세척의 골자는 "島司 郡長 市長이 징수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매년도 지조할(地租割), 호수할(戶數割), 영업세, 잡종세를 징수한다"(제1조)는 것이다.

68 "수렵규칙에 따라 면허료를 납부한 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69 1등급 1축을 기준으로, 춘하에는 "1엔부터 그 이상 300엔 미만은 1,000분의 7, 300엔 이상 400엔 미만은 1,000분의 10, 400엔 이상은 1,000분의 15"를 과세하도록 정했다. '추동'은 이보다 적게 과세한다.

70 서양 선박에 증기선, 풍범선 외에 밧테라선(バッチーラ船, bateira, 포르투갈어로 작은 배를 뜻함-필자주)이 추가되었다.

71 다만 오키 4군을 '스키군 사이고 니시마치 외 2정(町)' 등의 형식으로 묶었다. 다른 3군도 마찬가지다.

이 개정되었는데(3. 25, 현령 제26호), "어업채조업을 하는 자로서 어장구역(場區)을 정하는 자는 지명 및 차구(借區)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1901년(3. 11, 현령 제11호)에는 '현세부과규칙'⁷²의 '어업채조'⁷³에서 해역이 '해부(海の部)'와 '호천부(湖川の部)'로 나뉘었다. '해부'에서 포경과 서어(鱸漁), 대부망(大敷網), 지인망(地引網), 사장망(四張網) 등 모두 39개에 걸쳐 과액이 매겨져 있다. 또한 이해에는 '해조채'에 '어업구역(漁業場區)'이 추가되었다. 어업구역에 대한 세금은 차구(借區) 1반보(壹反歩)당 5리(厘)로 정해졌다. 시마네 현에서의 포경세 규정은 1889년부터 보였지만, 오키국에서는 1901년부터 보였다. 이해의 '현세부과규칙 시행규칙'은 "서양형 선박과 일본형 선박은 감찰(船鑑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1903년에 개정된(2. 26, 현령 제7호) '현세부과규칙'의 '어업채조' 부분은 1901년에 추가한 '어업구역'을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과액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등급은 연세를 구역당 2엔을 부과하는데 주로 정치(定置)어업 1호·2호와 특별어업 1호·2호가 이에 해당되는 대신, 이전에 있던 포경세가 없어졌다. '현세부과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세부과규칙 시행규칙'과 '현세징수기한'도 따라서 개정되었다. '한해통어조합규칙'은 1903년에 폐지되었다(4. 13). 1904년 '현세부과규칙'(3. 11, 현령 제12호)⁷⁴의 '어업채조' 관련 내용을 보면, 수조망, 쾌망, 투망, 사수망 등이 크기에 따라 과액이 변경된다.

이렇듯 어업에 관한 과목이나 과액은 어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에 맞춰 계속 개정된다. 어망의 크기에 따라 과액이 개정되거나 잠수기어업 등이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1905년까지 '강치어업'이 따로 명기되거나 이와 연관지어 만든 어망이 추가된 경우는 없었다. '현세부과규칙'의 '어업채조'에 어망이나 어종, 어장을 명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세금이 부과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업채조'에 명기된 어망이나 어종이 39종인데 '과목과액'에 39종이 보였다면, 모든 어종에 과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어획물은 50종이 넘는 데 어망의 종류는 39종만 명기되어 있다면 모든 어종에 과세된 것이

72 이 현령은 "다이쇼 6년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수기(手記)로 덧붙여져 있다.

73 1892년 규칙에는 '어업'과 '채조'가 구분되어 있었다.

74 1901년 3월 현령 제11호에 대한 개정이다.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장에 과세되었기 때문에 어종에는 과세되지 않은 것인가? 1900년 오키국의 어획물은 약 57종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이해의 '어업채조'에는 포경(捕鯨)을 위시하여 약 53종에 대한 과액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과액이 거의 모든 어종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반드시 '과목과액'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900년에도 강치는 포획되었다. 그렇다면 53종⁷⁵ 가운데 강치는 어느 어망에 속하는가?

강치와 같은 포유류인 고래는 초기부터 '포경'으로 과목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때의 '포경' 안에 강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1905년에 굳이 '강치어업'을 분리해서 추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905년에 현은 '강치어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강치가 포경을 포함한 53종의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1904년부터는 오키에서 강치를 더 이상 포획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아래에서는 1905년에 강치어업을 따로 명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2. '어업단속규칙'과 1905년 '오키국 다케시마' 삽입

어업 관련 세제는 '현세부과규칙'의 잡종세 안에서 규정되었지만, 실제 어로상의 규제와 규칙은 '어업단속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다. 1889년에 '어업단속규칙'이 상정되었고(10, 19, 현령 제118호), 1893년에 개정되었다(11, 20, 현령 제59호). 이때 '어업'이란 '해천호소지(海川湖沼池)'에서 생산 또는 양식한 어개수조류(魚介水藻類)를 채포(採捕)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902년 말(11, 28, 현령 제30호)에 개정된 '어업단속규칙'은⁷⁶ 1905년 4월에 개정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1902년의 내용 중 관계된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제1조 아래에 든 어업을 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타뢰망어업(打瀨網漁業) • 간망어업(竿網漁業)

⁷⁵ 이 가운데 이름만으로 어종이 드러나는 것은 포경, 鰵漁, 鯖網, 鰹網, 章魚掛, 章魚繩, 鮭掛網, 鮭掛, 鰻搔 등이다. 잠수기, 해조, 貝採 등도 어종을 짐작케 한다. 나머지는 어망이므로 어종을 특기하기 어렵다.

⁷⁶ 시마네현 소장 행정문서 1, 『竹島關係資料集 제2집』(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158~159쪽 참조.

- 수조망어업(手繰網漁業) • 백어장절망어업(白魚張切網漁業) • 반괘망어업(鰕掛網漁業) • 부망어업(浮網漁業)[야쓰카군(八束郡), 히카와군(簸川郡) 지방의 명칭]

- 일정한 예양장(曳揚場)을 지니지 못한 지예망어업(地曳網漁業) 전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감찰을 교부한다.

제2조 잠수기어업 허가 기간은 1개년 이내, 백어장절망어업과 부망어업의 허가 기간은 3개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서에 허가 기간(백어장절망어업, 부망어업, 잠수기어업에 한한다)과 어업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즉 1902년의 '어업단속규칙'은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강치어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1903년에도 '어업단속규칙'이 개정되었지만(현령 제30호), 1902년의 규칙 가운데 '어망'에 관한 내용만 개정되었다. 1904년에는 어망의 '강목(綱目)의 길이[寸法]'가 개정되었다. 이렇듯 '어업단속규칙'은 1889~1904년까지 개정되는 동안 어망이 추가되거나 허가어업의 종류가 명시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지만, 강치어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강치어업과 관련된 변화가 보인 것은 1905년 4월의 개정(현령 제18호)에서다. 이해의 '어업단속규칙'에서 관계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고딕은 인용자)

제1조 가운데 부망어업(浮網漁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 1. 해려어업[오키국 다케시마(隱岐國竹島)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 가운데 부망어업 다음에 해려어업을 삽입한다.

제3조 괄호서(括弧書) 가운데 잠수기어업 다음에 해려어업을 삽입한다.

.....

이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905년의 '어업단속규칙'을 재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고딕은 인용자)

제1조 아래에 든 어업을 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타뢰망어업 • 간망어업 • 수조망어업 • 백어장절망어업 • 반괘망어업 • 부망어업(야쓰카군, 히카와군 지방의 명칭), 해려어업[오키국 다케시마(隱岐國竹島)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 잠수기어업 허가 기간은 1년 이내, 백어장절망어업과 부망어업, 해려어업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서에 허가 기간(백어장절망어업, 부망어업, 잠수기어업, 해려어업에 한한다)과 어업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렇듯 어업 관련 규칙에서 정식으로 해려어업(海驢漁業) 즉 ‘강치어업’을 명기한 것은 1905년 4월에 이르러서다. 오키 강치에 관한 통계는 1903년 까지 보였지만 강치어업을 명기한 적은 없다가 1905년에 명기된 것이다. 그런데 1905년에 명기된 강치는 오키 강치가 아니다. 제1조에 “해려어업(隱岐國竹島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했듯이, ‘다케시마’ 즉 독도 강치를 말한다. 그러면 시마네현이 오키에서의 강치어업을 1905년 4월에 ‘다케시마’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905년 2월 ‘다케시마’를 새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다케시마’를 ‘오키국 다케시마’라고 하여 오키국 소속임을 밝혔다. 이는 오히려 편입 이전까지는 ‘다케시마’가 오키국 소속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어업 통계에서 오키국 관할의 스키·오치·아마·지부 4개 군과 촌명을 모두 명기한 적은 있지만, ‘다케시마’를 명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케시마’를 오키국 관할로 명기하고 나서 1년 뒤인 1906년에 시마네현은 ‘어업제조’에서 ‘경어(鯨魚)’ 뒤에 ‘해려어’를 삽입했다. 1889년까지는 ‘어업제조’에 39종이 유지되다가 1892년에는 ‘오징어낚시(烏賊釣)’가 삭제되었고, 1894년에는 사수망(四手網)과 병지망(柄持網)이 하나로 합쳐지고 오징어 낚시가 삭제되어 다시 37종이 되었다. 어업상의 변화가 반영되어 어종이 추가 혹은 삭제되긴 하지만 포경, 지인망, 대부망, 사장망, 청망(鯖網) 등의 순서로 나온다. 그러다가 1906년에 ‘경어’ 뒤에 ‘해려어’가 들어가게 된 것

이다. 이 역시 고래와는 별개로 강치를 다룬 것임을 보여준다.

1906년의 ‘현세부과규칙’은 강치에 대한 ‘연세를 어획고의 1000분의 15’로 매겼다. 이는 대부망에 매겨진 과액⁷⁷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1906년 이전 강치에 대한 과액이 대부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랬다면 1894년에 ‘四手網(柄持網을 포함함)’이라는 형식으로 변화내용을 밝혀주었듯이, 1906년에도 ‘대부망(해려어를 포함함)’ 혹은 ‘자망(해려어를 포함함)’⁷⁸이라는 형식으로 설명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강치어업’을 따로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1905년 이전까지는 오키 강치에 대해서도, 독도 강치에 대해서도 과목으로 분리하거나 과액을 표시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고래와 오징어, 어망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어업제조세 과목 과액’도 개정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강치에 대해서는 1905년 4월 이전 까지 개정되지 않았을까? 또한 일본은 왜 1905년에 ‘강치어업’을 새로 넣으면서 ‘오키국 다케시마’라고 명시했을까? 이에 대하여 일본은 시마네현이 1905년 이전에는 ‘강치어업’을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오키 강치의 포획량이 통계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마네현은 왜 1906년에야 비로소 강치에 대한 과목을 마련하게 되었을까? 이는 1904~1906년 사이의 과세공백과도 연관된 문제다.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롯한 오किन들이 1904년에 독도에서 잡은 강치는 모두 3천 마리, 가액으로는 8천 원⁷⁹이 넘는데 이 액수는 1903년 오키 강치의 가액 453엔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다. 그런데도 시마네현은 1904년의 포획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마네현이 포획지인 독도를 오키 관할로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마네현이 1904년에 독도를 오키 관할로 간주했다면 독도 강치에 관한 통계도 당연히 시마네현의 통계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04년부터는 오키

77 “1엔부터 그 이상 300엔 미만은 1,000분의 7,300엔 이상 400엔 미만은 1,000분의 10,400엔 이상은 1,000분의 15”다.

78 1906년에 오쿠하라는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방법에 대해, 자망(刺網)을 쓴다고 했다. 즉 그물을 동굴 입구에 쳐놓고 양 끝을 동굴 입구에 있는 두 명의 어부가 잡고 있고, 다른 어부는 동굴 안에 잠복해 있는 강치를 내몰아 강치가 달려나오다 그물에 걸려 폐사(斃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작살로 죽이거나 총으로 쏘아 잡기도 했으므로 1905년 이전 어망에 강치어업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9 1904년 오키국 총 어획고는 87,337엔이었으므로 강치 어획고가 약 10%를 차지한다.

국 통계에 강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강치를 포획한 1904년 시점에 시마네현은 독도를 오키국 관할로 여기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강치에 대해 1904년까지도 과세할 생각을 못하다가 편입 이후에야 과세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4장에서 다시 다루겠다. 1905년 이전 세제 가운데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⁸⁰

⁸⁰ 어업과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적었으므로 법령명을 모두 적은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라 거의 해마다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실제 법령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

⁸¹ 아래 호수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현령의 호수다.

<표 4> 현세 관련 법령 변천과 어업 관련 내용의 변천

연도	현세 관련 법령	어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호수 ⁸¹
1886. 11	시마네현령 제1호 발령		
1889. 1	'영업세잡종세 과목과액' 상정	어업채조: 포경, 조수렵에 과액 명시, 어망에도 종별로 과액 명시	4호
1889. 1	'어업채조세 과목과액' 개정	포경 등에 과액 명시	6호
1889. 10	'어업단속규칙' 상정	과료(科料) 규정	118호
1890. 12	'부현세징수법 세칙'	도사(島司), 군장(郡長), 시장(市長)이 징수	84호
1892	'어업채조세 과목과액' 개정	'포경' 삭제, 어망에 따른 과액 명시	
1893. 1	'영업세잡종세 과목과액' 개정	'어업채조세' 과목액 별도로 정함, '포경'에 다시 과세	9호
1893. 11	'어업단속규칙' 개정	본현 관할지 연해천(沿海川) 및 관유 호소지(湖沼池)에서 어업하는 자 모두에 규칙 적용	59호
1894	'어업채조세 과목과액' 개정	포경, 어망별 과액-대부망(400엔 이상은 1,000분의 15) 외	15호
1897. 1	'지방세 부과규칙' 기한 개정	포경, 어망 명시하고 지역별 연세를 규정	3호
1897. 1	'부현세 징수법 세칙' 개정, '지방세 부과규칙 시행규칙'	도사, 군장이 징수, 시장은 제외	5호
1899	'현세부과규칙' 개정	대부망(大數網) 외에 부망(浮網) 추가, 세수 명기	14호
1900	'현세부과규칙' 개정	오키 4군을 묶어 세수 합산	21호
1901. 3	'현세부과규칙' 개정	남부 일시 변경, '海部'와 '湖川部'로 구분, 포경 과액을 세분	11호
1901. 3	'현세부과규칙 시행규칙' 개정	선박은 감찰을 받도록 규정	17호
1902	'어업법 시행규칙'	특별어업 제한, 부망어업(數網漁業) 예외	
1902	'어업단속규칙' 개정	부망어업(浮網漁業) 명기	130호
1903. 2	'현세부과규칙' 개정	어장 구역을 세분, '포경' 삭제	7호
1903. 7	'어업단속규칙' 개정	어망에 따른 과액 개정	30호
1904. 3	'현세부과규칙' 개정	어망에 따른 과액 개정	12호
1904. 4	'어업단속규칙' 개정	어망 길이 개정	29호

3. 강치어업 허가 과정과 관유지 대장 등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포된 이후 시마네현은 바로 강치어업 허가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자마자 오키 도시는 나카이 요자부부가 제출한 10년 대여 신청서와 도면⁸²을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했다. 1905년 2월 26일 나카이의 청원을 시작으로 강치어업 허가원 신청이 잇따랐다. 이전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오키인들이 청원하기 시작했다. 3월 3일에는 오키국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나카마치

⁸² 도면에는 방위가 동경 131도 5분, 북위 37도 15분으로 되어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동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로 되어 있다. 1953년 시마네현 고시 제352호 해면 공동어업권 면허에는 어장의 위치가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있는 다케시마) 일대로 되어 있어 현 고시 제40호를 따르고 있다.

⁸³ 「副申案(中井養三郎이 대여를 청원) 2월 26일의 신청서에 대하여」,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⁸⁴ 「다케시마 출어 요청에 대한 內申 사본」 (1905. 3. 7), 「秘」 竹島. 어업허가원이 많이 제출되자 오키 도사가 현 지사에게 어업단속규칙을 공포할 것을 내신한 것으로 이해한 경우(김수희, 2010, 「나카이 요사부부(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호, 138쪽)가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자료(갑 서 제16호)의 내용을 보면, 도사가 건의한 것은 지적 편입에 대한 별도의 훈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업단속규칙을 공포하는 일은 지사가 할 것으로 예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즉 단속법의 공포를 도사가 지사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임을 언급한 것이다.

에 거주하는 나미 간이치(永海寛市), 3월 5일에는 오키국 오키군 고카촌 오아자 구미 거주자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가 허가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허가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지 않고 '리양코도'를 병칭했다. 한편 나카이는 포획 제한이 없을 경우의 경쟁적 남획을 우려했다.⁸³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는 독도 출어의 율례를 잘 아는 자였다. 그는 독도 출어가 2~3년 전부터 행해져왔으며 두세 명의 섬사람이 그 섬에 출어하여 상당한 양을 포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개정된 '어업단속규칙'이 공포되더라도 누구에게 허가할 것인지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시마네현 지사에게 내신했다.⁸⁴ 그는 1905년 4월 11일자 문서(農 제 487호)에서 "관하(管下) 다케시마의 강치어업이 이번 어업단속규칙에 따라 허가어업으로 되어 지난번 부내(部内)의 아래 사람들이 제출한 원서에 대하여 각각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⁸⁵이라고 했다. 이는 그가 4월 초에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할 방침이 정해졌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마네현 내 무부장 호리 신지(堀信次)는 청원자들의 경영 공로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오키 도사에게 요청했고(4. 11),⁸⁶ 이어 개정된 ‘어업단속규칙’이 공포되었다(4. 14). 시마네현은 신청자 가운데 울릉도에 도항한 경험만 있거나 도해했지만 목적이 불확실한 사람은 심의에서 탈락시켰다.⁸⁷ 청원자들은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강치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포획기간과 크기, 숫자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1904년에 독도에 출어했던 가토 주조(加藤重造)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⁸⁸

1905년 5월에는 돗토리현 사람도 허가를 신청하여 5월 10일 이전의 신청자만 해도 11명이었다. 이때 오키 도청은 4명만 불러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소환 예정자는 가토 주조(스키군), 나카이 요자부로(스키군), 이구치 류타(스키군), 하시오카 도모지로(오치군)였다.⁸⁹ 이에 앞서 시마네현은 오키 도청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나카이 요자부로, 나미 간이치,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시이 주타로, 아마네 후사마쓰, 미우라 주이치로, 몬와키 사다타로, 이구치 류타였다. 오키 도사는 5월 6일자 문서에서, 이들 가운데 나카이, 이구치, 하시오카 3명은 1903년부터, 가토는 1904년부터 어업을 해왔지만 다른 사람은 독도에 도항하여 종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바가 있다. 도사는 4명 가운데 영토 편입에 대한 나카이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나카이가 독점하면 다른 사람의 설비를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할 경우 남획의 폐해도 우려된다고 보았다. 이에 도사는 4명의 공동어업 형태를 제안했고⁹⁰ 현은 5월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도사는 4명에게 새로 공동출원서를 받기로 하고 이전 원서를 반환했다. 공동허가제는 관행을 존중하는 어업법⁹¹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05년 5월 17일 시마네현은 (독도가-필자주) “영토에 편입되어 이름만 있을 뿐 아직 지적(地籍)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면적 등도 확실하지 않으니, 해당 규정에 따

라 처리하기가 어렵”⁹²다고 여겨, ‘다케시마’를 오키국 4군의 관유지 대장에 등재했다(5. 17, 제32호). 1905년 5월 27~29일에는 일본과 러시아 간 해전이 있었다. 관유지 사용허가가 내려진 것은 5월 27일에서 9월 21일 사이였고, 나카이 등은 그 사이 독도에 출어하여 1,000마리 이상(3,750관)의 강치를 잡았다. 1905년에 울릉도에서 출어한 사람들도 1,275관/700엔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나카이가 잡은 양에 비취 계산해보면, 울릉도인은 대략 300마리 이상을 잡은 것이 된다.

앞서 5월 20일, 4명의 청원자는 공동어업으로 하기로 규약을 맺고 3개년 간⁹³ 강치어업을 허가해줄 것을 현 지사에게 요청했다. 현은 이들에게 공동어업을 허가했다(1905. 5. 20, 乙農 제805호). 4명 중 3명은 스키군 사이고정 나카촌 오아자 거주자였고, 하시오카 도모지로는 오치군 고카촌 오아자 거

주자였다. 나카이는 하쿠슈 도하쿠군(陳伯郡) 오가모촌(小鴨村) 출신이지만, 오키국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의 출자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기로 했다.⁹⁴ 5월 22일, 오키 도사가 시마네현에 허가를 요청했고,⁹⁵ 마쓰나가 다케요시 지사는 6월 3일 허가를 통지한 뒤 5일에 어업감찰을 교부했다.⁹⁶ 4명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같은 날 ‘강치어업 불허 통지’가 내려졌다. 회사 정관을 만든 4명의 어업자는 ‘어업법 시행규칙’(1902) 제18조에 의거, 다케시마해협합자회사⁹⁷ 업무집행사원 나카이 요자부로를 대표자로 하여 6월 8일 시마네현에 신고서를 제출, 6월 13일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로 정식 등록되었다. 강치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합자회사에게 강치 포획의 길을 열어준 시마네현은 독도에 이어 울릉도 침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그 시발은 두 섬에 대한 시찰이었다. 계획은 1905년 8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 시찰은 1906년 3월 말에야 이루어

85 「다케시마 강치어업 관련 종래 경영자 조사 조회」, 『秘』竹島.

86 「다케시마 강치어업 관련 종래 경영자 조사 조회」, 『秘』竹島.

87 몬와키 사다타로[門脇貞太郎]와 노쓰 이치타로[野津市太郎]가 전자에, 고베 요시키치[甲邊由吉]가 후자에 해당된다(『농 제265호 강치어업 계속 관련 건 회답』, 농 제271호, 1905. 4. 29.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88 「다케시마 대어 청원, 가토 주조의 청원」,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89 「다케시마 강치어업 출원자 소환서 초안」,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90 「다케시마 강치어업 경영사업 전망 조 회 회답서」(乙農 제92호, 1905. 5. 6), 『秘』竹島(원문에는 1903년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

91 어업법 부칙 34조에 “종래의 관행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의 어업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때는 그에게 면허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제3조와 제4조는 정치어업 또는 수면전용어업을 하는 권리를 얻으려 하는 자를 말한다.

92 「副申案(中井養三郎가 대어를 청원) 甲農 제13호(1905. 2. 27)」,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93 1905년 4월의 ‘어업단속규칙’ 제2조에는 강치어업의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94 「다케시마 강치어업 공동어업 규약 신고서 사본」, 『秘』竹島; 「다케시마 海獵합자회사 설립 신고서」,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95 나카이가 100분의 40(1,200엔)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시오카와 이구치는 23%(690엔)로 동일하며, 가토가 14%(420엔)로 가장 낮다. 「나카이 외 3명 공동어업 요청서 허가 통지 사본」(1905. 5. 22, 乙農 제805호), 『秘』竹島.

96 5월 20일 감찰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김수희, 앞의 글), 이날은 청원한 날이다.

97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를 보면 원문은 ‘다케시마해협합자회사’로 되어 있고, 정식명칭인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졌다.⁹⁸ 시찰단 일행이 타고 갈 배의 편승자 명단에는 시마네현과 오키 도청 관리, 기술원, 경찰, 교사, 사진사 외에도 적지 않은 수산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⁹⁹ 수산업자 대부분이 독도 출어와 관계된 자들인 점에 비춰보면, 1905년 편입 후 시찰을 계획하던 당시부터 희망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5년 6월 합자회사가 어업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납세절차는 구비되지 않았다.

IV. 강치어업에 대한 과세와 포획량, 그리고 어업권

1. 1906년의 독도 강치 과세규정과 이후의 변천

1905년 6월, 시마네현은 독도의 강치어업¹⁰⁰을 허가제로 했지만 과세규정을 구비한 상태는 아니었다. 1906년 3월, '현세부과규칙'(현령 제8호)의 '어업채조'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경어(鯨魚)'와 '해려어(海驢魚)'에 대한 과목과액이 추가됨으로써 비로소 강치에 대한 과세규정이 구비되었다. 이들 어종이 속한 해역은 '해부(海部)'에서 '외해부(外海部)'로 변경되었다. 두 어획물에 대한 '연세는 어획고의 1,000분의 15'¹⁰¹로 정해졌고, 이 지역 어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시마네현이 1906년에야 비로소 '현세부과규칙'을 개정하여 강치를 과목에 새로 넣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 규칙은 독도 강치에 대한 과세를 처음 법령으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오키 강치에 대한 과세 법령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은 시마네현이 현령 제8호로 인해 비로소 강치어업의 세율을 정해 과목에 추가함으로써 강치어업이 이익을 내게 되었다¹⁰²고 주장한다. 이는 그 이전에는 강치어업이 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강치어업 해역을 규정할 때 '외해부'로 변경한 것은 '오키국 다케시마' 해역을 '외해부'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독도를 외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래와 강치어업에 대해 오키 어업자 이외에도 과세하게 한 규정은 1906년 시점에 나카이 요자부로 의회를 의식한 과세규정임을 보여준다. 편입 이전부터 독도 강치를 포획하고 있던 나카이 요자부로는 돗토리현[鳥取縣] 출신이기 때문이다.

앞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1903~1905년 사이에 오키인들은 독도 강치를 포획했다. 그러나 오키인들은 1905년에 시마네현이 강치 포획지를 '오키국 다케시마'라고 규정해지기 전까지는 관할지를 단정하지 못했다. 오키인들은 자신들이 출어하던 섬의 이름이 '다케시마'라는 사실도 이때 확인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양코도'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시마네현은 1905년 4월에 강치 포획지가 '오키국 다케시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언명하지 1년이 다된 1906년 3월에야 '과목과액'을 정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재하는 일을 먼저 수행해야 했다(1905. 5).

독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받은 자가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업자들은 이른바 해면전용 어업권을 얻으려 했다. 이에 시마네현은 '어업단속규칙'을 개정했다. 1908년 6월 30일, '어업단속규칙'의 제1조와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98 당시 시마네현과 오키 도청이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독도에 대한 조사사항만 아니라 울릉도에 대한 조사사항도 거론되어 있다. 현은 "(울릉도에-역자주) 농어(農漁)를 위해 몇 호 정도가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농작물 종류와 경작의 개략, 차지(借地)의 유무, 연초(煙草) 재배의 가능성 여부, 삼을 팔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제3부장 회답안(다케시마 울릉도 시찰 조사)(1905. 8. 28).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99 나미 간이치, 나카이 요자부로, 나카하타 가네시게[中畑兼繁], 우노 외카지로[宇野若次郎], 이구치 류타, 가토 주조, 아하타 겐지[八幡源次], 노쓰 도미타[野津富太], 사사이 사다타로[笹井貞太郎], 우노 도키와[宇野常盤], 니시무라 기요[西村吉ヨ], 야마모토 가쿠노스케[山本覺之助] 등이다["다케시마 시찰 일행(시찰자 명부)"]. 『竹島一件書類』, 1906년 3월 18일 확정된 명단 가운데 수산업 관계자만 추출함.

100 1905년 이후 강치어업은 특기하지 않는 한 독도에서의 강치어업을 말한다.

101 원문은 "年稅金上り高千分の十五"다. 시마네현 소장 행정문서 1. 2011. 『竹島關係資料集 제2집』(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 실려 있다.

102 시마네현 소장 행정문서 1. 2011. 『竹島關係資料集 제2집』, 7쪽.

103 "아래에 열거한 어업은 그 어업을 하는 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다. 1. 藻手絲網漁業 2. 藻打瀬網漁業 3. 藻曳網漁業 4. 잠수기어업 5. 空釣繩漁業……"

제1조 「어업법 시행규칙」 제56조¹⁰³에서 든 어업 외에 아래에 든 어업을 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어업은 1905년 2월 본현 고시 제40호가 정한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에 한하며, 또한 제8호 내지 제11호의 어업은 호소하천에서의 어업에 한

한다.

1. 타뢰망어업…… 7. 해러어업…… 10. 공어괘망어업(公魚掛網漁業)……
전항(前項)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업감찰을 내준다.……

제8조 다케시마(1905년 2월 본현 고시 제40호 - 원주)와 그 지선(地先)
20정(丁)¹⁰⁴ 이내에서 해러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한다.

위 '어업단속규칙'은 허가어업의 종류를 개정했지만, 강치어업을 다케시마로 제한한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1905년에 “해러어업(오키국 다케시마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한 것이 1908년에는 “1905년 2월 본현 고시 제40호가 정한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둘 다 다케시마 이외에서는 강치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1908년에는 구역을 다케시마와 그 주변 '지선 20정 이내'까지로 구체화했다.

1910년에도 '현세부과규칙'의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지만(12. 6, 현령 제 40호),¹⁰⁵ 이때는 한국을 병합한 이후다. 따라서 1911년 5월 17일, 개정된 '수산업 보조규칙'(현령 제21호)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역으로 조선을 포함시켰다. 1911년에 개정된 '어업단속규칙'(12. 30, 현령 제54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1조 아래에 열거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지사에게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어업권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

1. 백어건망어업…… 11. 해로(海鱸)¹⁰⁶어업(자망, 박살, 총살)¹⁰⁷……

제15조 아래에 열거한 구역 안을 금어구로 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금한다…… 5. 다케시마(1905년 2월 본현 고시 제40호) 및 그 지선(地先) 별지 제5호도 빨간 선 안의 구역, 단 해러어업은 이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

¹⁰⁴ '町'과 같다고 보면, 1정은 109.09m로 20정은 약 2,180m다.

¹⁰⁵ 내용은 '어업채조'에서 '中海及湖川部'에 '魚來籠網一側'에 대한 세금을 추가한 것이다.

¹⁰⁶ 현의 관리가 수기(手記)로 '驢'자로 바로잡아 놓았다.

¹⁰⁷ 이 세 가지 어구는 1906년에 오쿠하라 헤카운이 언급한 바 있다.

즉 1911년에 독도는 수산동식물 채포가 금지된 금어구역이었지만, 강치어업은 예외였다. 그러므로 전용어업권¹⁰⁸을 지닌 강치어업자는 포획할 수 있었다. 1905년 편입 이후 법령의 변천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905~1911년 사이 어업 관련 법령의 변천

연도	개정된 세제 관련 법령	어업 관련 내용	호수
1905. 4. 11		오키 도사, 강치어업 허가어업이 된다는 사실 언급	農 제487호
1905. 4. 14	'어업단속규칙' 개정	제1조에 1. 海鱸漁業 (隱岐國竹島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 삽입, 부망어업 다음에 '해러어업' 삽입	18호
1905. 5. 17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재	
1905. 5. 20		현, 강치어업을 공동어업으로 허가	乙農 제805호
1906. 3	'현세부과규칙' 개정	'外海部'에 '鯨漁'와 '海鱸漁' 병기, 연세를 '어획고의 1,000분의 15'로 명기	8호
1908. 6	'어업단속규칙' 개정	허가어업인 강치어업을 '다케시마'와 지선 20정으로 한정	48호
1910. 12	'현세부과규칙' 개정	'어업채조'의 '中海及湖川部' 개정	40호
1911. 5	'수산업 보조규칙' 개정	조선, 대만에의 출가어업에 보조금 교부	21호
1911. 12	'어업단속규칙' 개정	전용어업권을 지닌 강치어업만 허가	54호

시마네현은 1905년 어기(漁期)에 나카이 등이 포획한 독도 강치에 과세할 수 없었다. 법령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이 구비되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했다. '현세부과규칙'과 '어업단속규칙'을 개정해야 했고, 관유지 대장에도 등재해야 했다. 이어 공동어업을 조건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에야 과세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를 정비해온 사실로도 일본이 독도 강치를 포획하던 초기에도 독도를 고유영토로 인식해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강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어업조합 설립 도모와 무산

¹⁰⁸ 「어업법 시행규칙」(1902. 5. 17)에 따르면, 전용어업이란 정치(定置)어업, 구획어업 및 특별어업이 아닌, 수면을 전용하여 하는 어업을 말한다.

나카이는 강치 포획을 본격화한 지 1년도 안 돼 '다케시마 경영상 필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1906. 4. 28), 「다케시마 경영에 관한 진정서」도 제출했다(1906. 4.

30). 이어 섬 전체의 장기 대부와 해면전용면허에 대해서도 진정했다. 강치 과세법이 시행된 직후에 납세도 하기 전에 나카이가 진정서부터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강치 포획 전망과 관계가 있다. 나카이는 강치 포획에 대한 허기는 받았지만 강치가죽 판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여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홋카이도 판매를 개시하는 등 여러 판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강치가 죽뿐만 아니라 기름과 비료를 만들 설비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즉 “강치어업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어업을 시도할 준비”¹⁰⁹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그가 어업조합 설립을 고려한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합자회사는 허가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다. 나카이는 어업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어업자에게 허가될 경우 강치 보호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강치사업을 장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기 대부와 해면전용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1906년 6월, 나카이는 하시오카, 가토, 이구치를 어업조합 발기인으로 하여 ‘다케시마어업조합 설치 건’을 신청하고 어업조합 규약도 만들었다. 어업조합 지구는 “시마네현 오키섬 소속 다케시마 구역”으로 했다. 주소지를 가져야 한다는 어업법을 의식하여 “가주소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의 어업권에는 강치뿐만 아니라 전복, 고래, 우뚝가사리 등 해산물과 해조류를 포함시켰다.¹¹⁰ 그러나 시마네현은 이들의 5~6개월 출어가 독도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어업법 제18조¹¹¹에 의거,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¹¹² 1906년 10월 20일, 나카이의 조합설치 신청은 기각당했다.¹¹³

1905년 6월,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는 시마네현으로부터 어업감찰을 받았는데, 현은 다시 1907년 6월에 청원한 어업 건을 허가하면서 9월에 감찰을 발급했다. 나카이는 청원서에서 “오는 1908년 5월로 허가해주신 기간이 일단 만기가 되어 신고를 하”니, 다시 허가기간을 ‘1908년 6월부터 1911년 5월까지 3년간’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1907년 5월 13일에는 스키군 사이고정 니시마치[西町]어업조합이,¹¹⁴ 5월 20일에는 오치군 고카촌 구미어업조합이 다케시마를 지선으로 편입하는 건을 신청했다. 특히 구미어업조합¹¹⁵은 다케시마 해면전용 어업면허까지 청원하며 농상무성에도 청원했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가 어업조합의 지구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다케시마 해면전용 어업면허 청원도 기각했다.¹¹⁶

이들이 신청한 해면전용 어업면허의 기간은 1907년 5월부터 1927년 4월까지 약 20년간이었다. 이들이 청원한 어획물 종류는 전복, 우뚝가사리, 오징어, 볼락, 고등어, 상어, 범고래 등이었다.

두 어업조합의 신청에 앞서 나카이 회사는 1906년 6월 20일 어업조합¹¹⁷ 설치를 청원한 바 있다. 이때 어업조합이 향유하는 ‘지선수면전용 어업권’에는 김과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뿐만 아니라 강치도 들어 있었다.¹¹⁸ 니시마치와 구미의 어업조합은 강치를 뺀 어업권을 주장한 데 비해, 나카이 회사는 강치를 포함한 어업권¹¹⁹을 주장하고 있었다. 오키 도사는 두(니시마치, 구미) 어업조합이 해면전용 어업면허를 신청한 목적이 어패류의 어획에 있기보다는 강치에 있으며, 강치어업자를 방해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 지사에게 기각을 건의했다.¹²⁰

1907년 8월 3일, 오키 도사는 나카이가 4월에 제출한 해면전용어업 관련 신청서를 시마네현 지사에게

114 신청자는 이사 마쓰자키 미치로다. 이때 사이고정 니시마치어업조합은 다케시마를 사이고정에 편입시켜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나카이는 상신서(1907. 5. 22)를 올려 반대했다.

115 신청자는 이사 이케다 요시타로다.

116 「다케시마 편입 관련 신청서 제출 지시 전달」 수(水) 제19호(1907. 8. 14),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17 수산조합과 어업조합은 별개다. 1906년 기준 오키 지역의 어업조합은 47개로 나타나 있다(『島根縣統計書』).

118 「다케시마 어업조합 규약 제25조」,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19 나카이는 1906년에 “지선과 수면의 배타적 이용은 합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메이지 39년도 업무집행 전달』,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20 「다케시마 본도 地先編入. 해면전용면허 신청」(8월 3일자 문서),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09 「다케시마 경영상 필요한 계획」, 『秘』竹島.

110 해면전용어업, 수면전용어업, 지선수면전용어업 등 원문의 용어 내지 후학자의 해석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필자는 해면전용어업과 수면전용어업을 같은 의미로 보았다. 당시는 수심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1 일본에서 어업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1893년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1901년이고, 시행은 1902년 7월 1일부터다(羽原又吉, 1952, 『日本近代漁業經濟史』, 岩波書店, 104~123쪽). 어업법 18조의 내용은 “일정 구역 안에 주소를 지닌 어업자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이다.

112 「다케시마 어업조합 설치 신청 건 不許 통첩」(1906. 10. 20),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13 1907년 6월 어업통제규칙이 개정되어 공동어업권이 어업조합이 아닌 나카이 개인에게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김수희, 2010, 앞의 글, 144쪽).

상신했다.¹²¹ 나카이가 1907년 4월, 다케시마 해면전용 어업면허에 관한 신청서와 진정서를 도사¹²²에게 제출한 바 있었는데, 오키 도사가 이를 상신했 것이다. 나카이는 4월의 신청서에서 “본사가 다케시마에서 강치[海馬]어업 권과 토지사용권을 허락받았을 뿐, 아직 해면전용에 대한 면허를 받지 않은 점을 노려, 근래 강치 이외의 수산물 채취를 표방하면서 다케시마로 도항하려는 사람이 있는데…….”¹²³라고 하며 다른 어업자의 도항을 경계했다. 그도 다른 수산업자들이 도항하면 강치 남획도 시도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나카이는 ‘다케시마 경영권 독점이 필요한 사정’과 ‘다른 어업의 피해’ 등을 적어 첨부했다. 그에게 독도의 가치는 오직 강치에 있었다.

오키 도사는 나카이의 진정서를 숙지했고 독도를 지선에 편입시키기 위해 두 어업조합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독도 주변 해면에서의 이익은 사실상 강치어업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현령의 ‘어업단속규칙’에서 다케시마 강치 이외의 모든 어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서둘러 추가하도록 해주기를”¹²⁴ 지사에게 상신했다. 그리하여 개정된 ‘어업단속규칙’에서는 강치어업을 ‘다케시마와 지선 20정’으로 한정했다. 이는 어업조합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인 듯하지만 사실은 나카이의 청원을 들어준 것이다. 오키 도사가 나카이의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1907년이지만, ‘어업단속규칙’의 개정은 1908년에 이뤄졌다. 1907년에 ‘현세부과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지만¹²⁵ 강치어업에 관한 개정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1908년 6월 30일, ‘어업단속규칙’이 개정되었다(현령 제48호, 7월 1일 시행). 강치어업을 독도로 한정하고 지사의 인가를 받게 하되, 독도 주변에서¹²⁶ 강치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1905년 4월에 강치어업을 독도로 한정한 것과 1907년에 독도어업을 강치어업으로 제한한 것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6~1907년의 독도 강치 어획고를 보면, 1906년

에 1,385마리(1,948)/5,437 엔, 1907년에 1,600마리(2,094)/5,940 엔,¹²⁷ 1908년에 1,680마리¹²⁸다. 주로 해륙(海陸)에서 그물, 작살, 박살(撲殺), 총 등의 방법으로 4월에서 9월 사이에 포획한다. 연간 포획 숫자는 1905년(1,000여 마리)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숫자다. 독도어업을 강치어업으로 제한한 시기가 1907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는 해면어업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어업조합은 해면전용 어업허가를 얻지 못했다. 설령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강치 주산지인 독도에서 그들이 강치 포획에 집중하지 않고 해면어업에 집중했을 리는 없다. 1905~1907년 사이의 강치 포획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독도에 군집해 있던 개체 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사 인력과 자본금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나카이 회사의 연간 포획량도 비슷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3. 1906~1910년간 강치 어획고와 과세 현황

1907년 공동으로 운영되던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는 이구치 류타와 사이가 벌어졌고, 7월까지의 강치 포획은 770마리 정도였다. 이 숫자는 제한숫자를 무시하고 초과 포획한 숫자다. 이구치 류타의 제한 해제 요청에 따라 나카이는 이미 포획한 초과량을 불문에 부치기로 하는 한편, 기존의 포획 한도 600마리를 1,500마리 이내로 변경할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다.¹²⁹

한편 나카이는 1907년부터 해마도(海馬島: 사할린)의 강치 포획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¹³⁰ 나카이는 7월에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독도 강치 판로를 여는 데 비용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도에서 강치 포획의 길이 열릴 것을 우려했다. 본래 해마도에서는 강치가 금어 어종이었으므로 나카이는 언제 개금(開禁)되는지 알아봐줄 것을 오키 도사에게 요청했고,¹³¹ 도사는

121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의 해면전용 건」 갑농(甲農) 제91호(1907. 8. 3),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22 제출처가 오키 도사에서 시마네현 지사로 바뀌어 있다. 「다케시마 해면전용 관련 신청서」(1907. 4. 17),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23 「다케시마 해면전용 관련 신청서」(1907. 4. 17),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24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의 해면전용 건」 갑농 제91호(1907. 8. 3),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125 1907년 2월 22일, 3월 26일, 4월 15일 ‘현세부과규칙’의 일부가 여러 번 개정된 바 있다.

126 “다케시마 및 그 지선(地先) 20정(丁) 이내에서의 강치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함”.

127 김수희 논문(2010, 146쪽)의 통계는 다무라 세이자부로의 『島根縣竹島の研究』(1953) 및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의 「自38年原書兼指令」, 『竹島關係綴』(1953),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에 근거한 것으로, 팔호 안 숫자는 어렵합자회사 내부 자료의 숫자다.

128 「1909년 6월 7일 오키 도청의 질의에 대한 답신」(農 제377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29 「咨申 오키 도청(1907. 7. 12)의 질문에 대한 나카이의 답신」(1907. 7. 15),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30 나카이는 1907년에 시마네현 시찰단과 함께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온 바 있다.

131 「願書 메이지 40년(1907) 7월 14일」,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현행 어업규칙으로는 허가할 수 없으며 언제 허가할지 모른다고 통보했다.¹³² 1908년의 독도 강치 어획고는 1,681마리였으나 1909년부터는 1,152마리로 감소했고, 1910년대부터는 679마리로 떨어졌다.¹³³ 1908년에 나카이는 홋카이도 치시마국[千島國] 시무시루도[新知島] 외 8개 섬에서 총 지적(地積) 12만 8천 184평의 유료사용 허가를 홋카이도청 네무로[根宝] 지청에 청원하여 허가받았다.¹³⁴ 1909년에는 해마도 어업 허가도 획득했다. 나카이가 1909년부터 홋카이도의 강치 포획에 매달려 강치 포획기에 숙련된 인부를 홋카이도 치시마국으로 보내자 독도 포획량이 감소했다. 나카이는 강치가 연해에서 번식하는 동물이므로 독도에 많이 군집해 있지만, 물개[鰻鰻]도 군집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어부들이 강치 새끼와 물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여겼고,¹³⁵ 'Sea Lion'이라는 서양 이름도 숙지하고 있었다.¹³⁶ 그는 1910년까지도 독도 강치의 전망을 낙관했다. 남획만 절제한다면 이익은 무궁할 것으로¹³⁷ 예측했다.

그렇다면 1906년 이후에는 오키인들이 독도 강치에 대해 잡종세를 납부했을까? 1901~1911년까지 통계로 확인된 울릉도와 오키에서의 강치 포획량을 보면 <표 6>과 같다.¹³⁸

<표 6> 1901~1911년 강치 포획량(1903년까지는 오키 강치, 이후는 독도 강치임)

지역/연도	1901	1902	1903	1904	1905
오키국(4군)	1,053마리/355엔	1,240마리/326엔	1,436마리/453엔		
울릉도(가족만)				800관/600엔	1,275관/700엔
울릉도 수출세*	7.1엔	6.5엔		6엔	7엔
잡종세**	5.3엔	4.8엔		9엔	10.5엔
다케시마어업 합자회사 6척			약 4,070엔 이상	7,690관 ¹³⁹ (2,750 ¹⁴⁰ 마리)	3,750관 (1,004마리 ¹⁴¹)

132 「農 제789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33 김수희, 2010, 앞의 글, 146쪽.

134 (도청에 제출함) 「이력서」,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35 「다케시마 상황보고」(1908. 4. 20),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36 그는 강치, 물개, 해표 등을 구분하고 있다. 나카이는 강치를 대부분 '海驢'로 표기했다(1909년 1월 26일 도사에게 보낸 나카이 요자부로의 답신).

137 (오키 도청에 제출함) 「이력서 부속의 사업경영 개요」,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138 박병섭에 따르면, 1,600엔은 현재 쌀값으로 환산하면 207만 엔, 10,000엔은 현재 쌀값으로 천수백만 엔이다(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1)), 21~23쪽; 「일본의 새 논조와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 239~242쪽. 그렇다면 당시 1엔은 약 1,293엔 정도로 추정된다.

139 '實'이 '枚'로 표기된 문서도 있다.

140 2,760마리로 기록된 것도 있다.

141 「사업경영 개요」에는 1,003마리로 되어 있고, 다무라도 수컷(535)과 암컷(339), 새끼(130)를 합쳐 1,003마리로 써놓았다.

지역/연도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	1,385(1,948)마리/ 5,437엔	1,680(2,192) ^{***} 마리/ 5,940엔	1,680(1,681)마리/ 5,878엔	1,153마리/ 4,344엔	679마리 (1,152)	796마리 (511)
잡종원 수			27인	23인	18인	23인
잡종세**	81엔	89엔	88엔	65엔		

* 울릉도의 수세 관행과 「울도군 절목」의 규정에 의거, 1902년까지는 물건값의 2%, 1903년부터는 1%를 세금으로 매긴 금액임.

** 잡종세는 어획고의 1,000분의 15를 매긴 금액임.

*** 1907년 이구치 류타가 나카이의 남획을 상신했을 때 나카이는 771마리를 포획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숫자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음.

1906년과 1907년¹⁴² 합자회사의 강치 포획량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오키 도청에 보고한 숫자와 회사 장부(괄호 안의 숫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제한 숫자를 초과해서 남획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든 셈이다.¹⁴³ 위의 표에서 1904년과 1905년의 독도 강치 포획량을 보면, 울릉도인이 포획한 숫자는 없고 가족의 총량만 나와 있는데 이를 오키인의 포획 숫자와 비교해보면, 일단 가족 총량 면에서 오키인의 포획량이 울릉도인을 크게 앞선다. 1904년에는 거의 9배가, 1905년에는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1904년과 1905년에 울도 군수가 울릉도인(일본인 포함)이 포획한 독도 강치에 대해 과세했음은 선행 연구에서 밝혔다. 그런데 시마네현은 1906년 3월 이전에는 법령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오키인에게 과세할 수 없었음도 확인했다. 1906년 3월 이후부터는 법이 구비되었으므로 합자회사는 현세부

과규칙대로 1906~1911년간의 어획고에 대해 납세했을 것이다. 그런데 1906년도 합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금과 인건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세금 관련 기술은 없다. 오히려 1905년도는 손실금이 1,500엔, 1906년도 손실금이 336엔 정도로 나와 있고¹⁴⁴ 1910년부터는 포획량도 급감했다. 나카이가 치시마 어업에 손을 대게 된 것도 독도 강치 포획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언에 비춰보면, 합자회사의 설립은 결국 이익도 보지 못한 채 독도 강치의 멸절만

142 1907년에는 2,094마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井上貴央, 1995, 「日本海竹島のニホンアシカ 2 捕獲頭数の変遷」, 「海洋と生物」 96, Vol. 17, No. 1, 生物研究研究社, 42쪽). 포획 두수는 기록마다 다르므로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143 이 글에서는 도청에 보고한 숫자를 공식 기록으로 보았다.

144 「메이지 39년도 업무 집행 전말」,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메이지 39년도 계산서」,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¹⁴⁵ 적자여서 그런지, 대차대조표라서 그런지, 세금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관유지 사용료를 납부했는가를 보면, 이것도 합자회사 장부에 명시된 바는 없다.¹⁴⁶ 통계상으로는 오키인들이 독도 강치를 포획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낸 시기가 남획이 극에 달했던 1904년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V. 맺음말

1900년 전후 강치는 오키(오키 강치)와 독도(독도 강치), 두 곳에서 잡히던 동물이었다. 오키인들은 독도 강치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부터 오키 연해에서 강치를 잡아왔는데, 그 사실이 시마네현 통계기록으로 남아 있다. 시마네현은 '현세부과규칙'에 의거하여 '영업세잡종세'를 부과해왔는데, 어획물은 '잡종세' 중에서도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록상 오키 강치가 처음 보인 1895년의 '어업채조세 과목과액'을 보면, 고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강치는 없다. 통계상 오키 강치가 보인 것은 1903년까지고, 오키국 전체 어획고에 비하면 강치 어획고는 너무 적다. 이 때문에 과세하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마네현이 강치에 대한 과세 입법절차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1905년에 '다케시마'를 편입하고 난 이후다. 1903년부터는 독도 강치의 포획 통계와 오키 강치의 포획통계가 함께 보이는데 독도 강치 포획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독도 강치의 일부가 오키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도 있다.

시마네현은 새 한 마리, 해조류 하나에도 면허세 혹은 어장별 과세를 해왔고, 어획물도 어망에 따라 과세해왔다. 그런데 강치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강치가 주요 어종이 아닌데다 어획고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같은 포유류인 고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과세해왔으며 또한 과세가 반드시 어획고와 비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04년부터는 오키인의 독도 강치 어획고가 급증했음에도 시마네현은 바로 과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마네현이 강치 포획지인 독도를 오키국 관할지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나서야 과세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첫 번째 조치는 바로 1905년 4월, 허가어업의 종류에 "海驢漁業(隱岐國竹島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1905년 4월 이전까지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오키국 관할지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은 '다케시마'를 편입한 뒤에도 바로 강치에 과세하지 못했다. 지적(地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은 1905년 5월 17일, '다케시마'를 오키국 4군의 관유지 대장에 등재했다. 1905년 이전부터 강치를 포획해왔지만 관유지 대장에 등재하고 나서야 과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경어(鯨魚)'에만 부과되던 잡종세 과목과액에 '강치어업'이 추가되었고, 1906년 3월 이후부터는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1906년부터는 실제로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를 상대로 과세했는가? 현이 관유지 사용허가를 내린 시기가 1905년 5월 27일부터 9월 21일 사이므로 관유지 사용료는 그 후에야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잡종세의 경우는 1906년 10월¹⁴⁷ 이후 아니면 다음해 3월에야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나카이의 합자회사가 잡종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관유지 사용료 납부도 기록상으로는 1920년대에야 보인다. 일본은 『竹島問題100問100答』(2014)에서 시마네현이 1905년 편입 이후 다케시마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를 매년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이 강치어업에 과세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1906년 이전까지는 잡종세를 부과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145 1911년 독도가 금어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1920년대에 소유권 양도 등의 복잡한 상황이 있어 강치포획 관련 보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하시오카가 생포한 강치를 서커스단에 판 기록이 보이긴 하지만 강치 포획 등 어획에 관한 보고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가 1933(4)년 부정기 출어를 하고부터다. 1933년 하시오카는 강치를 생포하여 팔았으나 1,242엔의 손실을 보았고, 1934년에는 210엔의 손실을 보았다. 1935년부터 1,700엔의 이익을 내기 시작하여 이후 1939년까지 이익을 냈다(김선희, 앞의 책, 147~149쪽).

146 기록상으로는 1925~1941년까지 관유물 대여료와 토지사용료를 오키 지청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금액은 도서면적 23정 3반(反) 3무보(畝步)에 대해 연액(年額)도 4월부터 3월까지) 4엔 700전으로 나와 있다(국세 외 제 수입 장수 원장 오키지청,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 중 참고자료). 도서 면적이 토지대장상으로는 69,990평(1945년 기준)으로 나온다.

147 연세 부과시기는 1년에 두 번, 즉 3월부터 9월, 10월부터 4월까지고, 납부기일은 각각의 첫달 1일이다.

〈표 7〉 1905년 전후 강제 포획지와 포획자, 포획기, 납세 여부

포획지	포획자	1904년 이전 포획	납세여부	1904~1905년 포획	납세여부	1906년 이후 포획	납세여부
오키	울릉도인	×	×	×	×	×	×
	오키인	○	×	×	×	×	×
독도	울릉도인	○	○	○	○	×	×
	오키인	○	×	○	×	○	△

※ ○는 포획 및 납세, ×는 포획 및 납세 안함, △는 불분명, 울릉도인에는 일본인 포함됨.

〈표 7〉을 보면, 1906년 이전까지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납세한 자는 울릉도인이다. 오키인은 1905년까지 독도 강치에 납세하지 않았다.

이렇듯 1906년 이전까지 오키인이 강치(오키 및 독도 강치)에 납세한 적이 없던 사실을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가 무주지였으므로 오키인들이 독도 강치에 대해 납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1905년 이전부터 울도군에 납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독도 강치를 포함한 울릉도 수출품에 대한 세목을 '수출세'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¹⁴⁸ 현재 일본의 주장대로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를 무주지로 여겼다면, 강치는 무주지의 산물이므로 울릉도 과세 품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산물, 이를테면 목재나 곡물에 대해서만 납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무성은 독도 강치를 '울릉도 수출품목'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출세 납부를 빌미로 군수에게 울릉도 거주권을 주장하도록 자국민을 사주(使賂)하기까지 했다. 1905년을 전후해서 오키 거주 일본인은 독도를 무주지로 인식하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인식하는 일이 양립 가능한가? 울릉도 거주 일본인 중 대부분은 겨울이면 오키로 가서 지내다가 봄에 돌아오곤 했다. 그런 사람 가운데는 선박과 자금을 제공하며 강치포획을

주도한 자들도¹⁴⁹ 있었다. 이들은 오키와 울릉도, 두 지역의 사정을 양측에 전하고 있었으므로 독도를 무주지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1903~1906년 사이에 시마네현은 포획한 독도 강치에 대해 자국민에게 과세하지 않은 반면, 울도군은 1905년까지 일본인에게 과세했다면 어느 쪽이 '실효 지배'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148 일본인들은 '양국통어장정'과 '통어규칙'에 따라 준단(准單) 즉 허가증 소지자에 한해 조선에서 해빈 3리 이내에서의 어로가 가능했다. 다만 울릉도가 비(非)통상항구이므로 교역은 금지되었다. 울릉도의 일본인이 군수의 징세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06년에 울릉도를 시찰한 오쿠하라 헤키운은 한국 정부가 군수에게 조세권을 일임했다고 기술했으므로 군수의 징세는 1906년에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울릉도에서는 과세했지만 1904~1905년 사이에 행해진 나카이 등의 독도 어로는 금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어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카이 등은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국 조합에도 신고하지 않고 도항한 불법 어로였다.

149 대표적인 자가 와키타 쇼타로[脇田 太郎]와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다. 와키타는 1899년 도감과 주고받은 약조문에 등장하며, 1901년 일상조합의 의원 명단에 나온다. 1905년에 한인과 일본인을 데리고 독도 강제 포획을 주도했으며, 1906년에 시마네현 관민 시찰단이 울릉도에 왔을 때 자신의 집을 휴식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1896년부터 거주했던 가타오카는 일상조합 조합장으로서 울릉도의 수산물 수출통계를 오쿠하라 및 농상공부 수산국에 제공했고, 1904년에는 초대 우편소장을 지냈다.

국문 초록

일본은 1900년대 초기 강치잡이사업의 안정을 꾀하려는 시마네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이른바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여 영유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울릉도인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오키의 일본인도 시마네현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일본도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시마네현 사람들의 어업활동에 '잡종세'를 부과해왔다. 오키 어민은 오키 연해에서 강치를 잡아왔는데 그 통계가 1895~1903년까지 보인다. 그런데 이때 시마네현이 오키 어민에게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1903년부터는 오키 어민이 독도에 와서도 강치를 잡았지만 시마네현에 납세(納稅)한 사실이 없다.

시마네현은 1905년 4월에 '어업단속규칙'에 "강치어업(오키국 다케시마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어민이 하는 어업종류에 강치어업을 추가하고 이를 독도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규정할 시기가 1905년 4월이라는 점은 그 이전까지는 '다케시마' 즉 독도를 오키국 관할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마네현은 1906년 3월에는 '현세부과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역시 일본이 그 이전에는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지 사용료다. 그것은 1905년 편입 이후 징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편입 이전에는 시마네현이 잡종세도 부과한 바가 없으며, 국유지 사용료도 부과한 바가 없었음을 일본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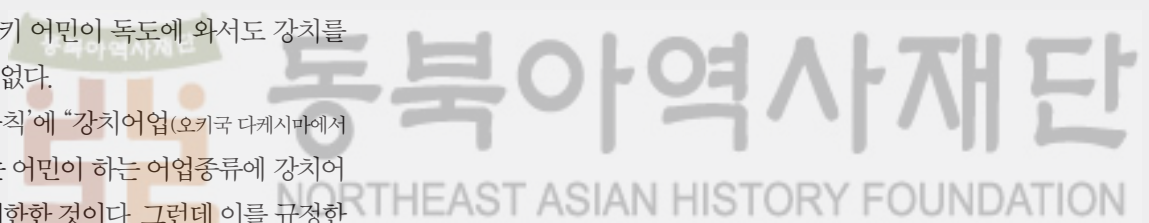
현재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으므로 나카이 등의 어업가가 납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도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외무성은 이때의 세금을

‘수출세’라고 불렀다. 수출세란 국가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 오키의 일본인이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은 반면, 울릉도의 일본인이 울도군에 납세했다면 이는 울릉도의 군수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실효 지배, 강치 포획, 어업단속규칙, 잡종세, 수출세



ABSTRACT

Japan's Local Taxes, Taxation of Sea Lion Fishery and Dokdo around 1905

Yoo, Mirim
Director,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Japan argues they reconfirmed their possession of Takeshima (Dokdo) by incorporating the island into their territory in the early 1900s, particularly to meet the public demand in Shimane prefecture to stabilize their operation of sea lion hunting. Nonetheless, at the same time, residents of the Korean island Ulleungdo had been catching sea lions at Dokdo and paying taxes to the county of Uldo in Korea. Therefore, Japan could further insist that they had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if the Japanese of Oki Island had actually paid taxes to Shimane prefec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se matters.

Shimane prefecture imposed miscellaneous taxes to its people's fishing practices. Statistics show that fishermen from Oki Island caught sea lions in the island's coastal waters between 1895 and 1903. Yet, there is no trace of such fishermen having been taxed by Shimane prefecture at that time when it comes to sea lions. Fishermen from Oki Island did in fact come to hunt sea lions at Dokdo since 1903, but no taxes for their catch were paid to Shimane prefecture.

In April 1905, Shimane prefecture added a rule on "sea lion fishery (limited only to Takeshima of Okinokuni)" to their fishery regulations. This added sea lion hunting as an officially allowed type of fishery for the prefecture's fishermen and limited the area of its practice to Takeshima. However, the timing of when this rule appeared indicates that they had not considered Takeshima, or Dokdo, as part of their jurisdiction prior to April of 1905. Also, Shimane prefecture revised its taxation regulations in March 1906 to levy tax on sea lions. This also demonstrates that before then, sea lions had not been taxed in Japan.

What Japan currently presents as evidence of it having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is rentals paid for their state-owned land collected after Japan's alleged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This only confirms that prior to its incorporation of Dokdo, Shimane prefecture did not impose miscellaneous taxes or rentals for state-owned land.

Japan could in turn then argue that because Takeshima was terra nullius prior to 1905,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fishermen like Yojaburo Nakai

to pay taxes. If that was the case, the Japanese who had been residing on Ulleungdo at that time should not have paid taxes to the Korean county of Uldo, and yet, they did.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d called such taxes "export duties," which only applies between nations.

The reason Japanese residents of Ulleungdo at that time paid taxes to Uldo county is because they had regarded Dokdo as an annex of Ulleungdo. Hence, if the Japanese of Ulleungdo paid taxes to Uldo county while those of Oki Island did not to Shimane Prefecture prior to 1905, the governor of Ulleungdo would have to be regarded as the one who had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Keywords

effective control, sea lion hunting, fishery regulations, miscellaneous taxes, export duties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머리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독도 영유권 논리 강화 및 해외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독도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영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본 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남북한 양 체제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면, 향후 우리의 독도 영유권 강화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

이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장근(2006)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양상」, 채규철(2007)의 「북한의 독도 인식과 정치적 의도에 관한 고찰」, 배진수·양주(2009)의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1948~2008년) 현황분석」, 그리고 이상균·유수진(2014)의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등으로 대별된다. 선행연구를 간단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장근(2006)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독도의 활용가치와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없으며 다만, 고문헌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역사인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규철(2007)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대일 비판적 태도와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는 목적은 민족공조론을 확산시켜 한일관계를 악화

시키고,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체제속속력을 강화하여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배진수·양주(2009)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독도 기사를 북일관계 및 한일관계의 상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독도 관련 주장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 원칙¹과 한반도에서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대남통일전선전술로 귀결되며, 결국 독도이슈를 통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는 적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한 지리교과서를 분석한 이상균·유수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양 체제는 냉전으로 인한 상이한 정치체제임에도 남북한 모두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국토의 범위로 설정하는 등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비판과 확고한 영유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각 분

1 과거에 북한에서 내세웠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협력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도 구 소련의 개혁과 동구공산권의 변화로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즉, 1972년에 제정된 헌법 제16조에는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고 하였는데, 1992년에 개정된 헌법 제17조에는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윤해수, 1996, 118~124쪽). 소련에서 경제 원조를 받았던 북한은 소비에트연방의 몰락으로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협력을 도모하는 등 변화된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야에서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북한의 영토교육 및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특히 독도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공동 대응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해마다 거듭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칫 일본의 도발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일본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그들의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도발의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홍보의 비중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북한의 영토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지리교육)과 조직생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될 것이다. 먼저 북한 당국이 어디까지 그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영토 관련 내용을 통하여 그들의 국토관 및 영토의식을 확인하고, 특히 독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영토교육(독도 영유권)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 포함된 독도 내용은 특정 학년의 교과단원에 한정된 반면, 《노동신문》의 독도 관련 사설은 모든 학생들과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동신문》의 독도 관련 사설은 1965~2013년도까지 총 177회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1970~1980년대에 독도 관련 기사를 간헐적으로 게재하다가 1992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는데, 이 무렵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또다시 독도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배진수·양주, 2009, 125). 그러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도 관련 사설을 본격적으로 《노동신문》에 게재하였다. 북한에서는 영토의식의 고취 및 영토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독도 우표를 분석하는 것 또한 북한의 영토교육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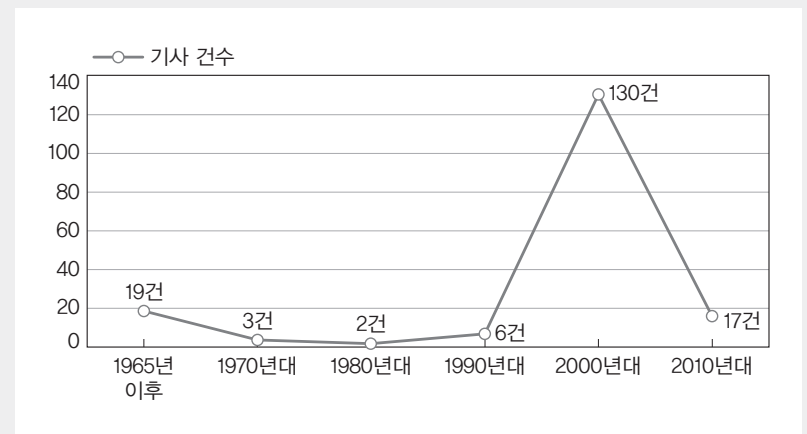
한 작업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남북한 양측의 연대와 공동 대응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 북한의 영토인식과 민족공동체 교육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의 빈도와 수위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1965년부터 독도 관련 기사를 《노동신문》에 게재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독도에 대한 공식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당국은 1965년 2월 23일 《노동신문》에 독도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실었고, 그 배경은 1964년 12월 3일 제7차 한일회담을 계기로 한일수교가 타결되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배진수·양주, 2009, 124).

1960년대에 19건, 1970~1990년대까지 11건, 2000년대는 130건, 2010년



〈그림 1〉 북한 《노동신문》 독도 관련 기사 현황

도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 17건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도 관련 사실은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1). 1965년 2월 23일 당시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독도 관련 기사를 보면, “미국의 직접적인 조종 밑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에서 남조선 당국은 독도 문제를 ‘미결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마저 일본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² 그 이후에도 북한 《노동신문》에는 “우리나라 령토인 독도는 결코 누구의 통략물로 될 수 없다”³ 등 다양한 기사들을 실었다. 또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는 역사문헌들을 분석하여 사실형태로 신기도 하였고, 일본 당국에 경고만 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도 실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비난수위는 더 거세지고 있다. <표 1>은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177건 기사 중에서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2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령토적 야망”, 《노동신문》, 1965. 2. 23, 3면.

3 “우리나라 령토인 독도는 결코 누구의 통략물로 될 수 없다”, 《노동신문》, 1977. 2. 11,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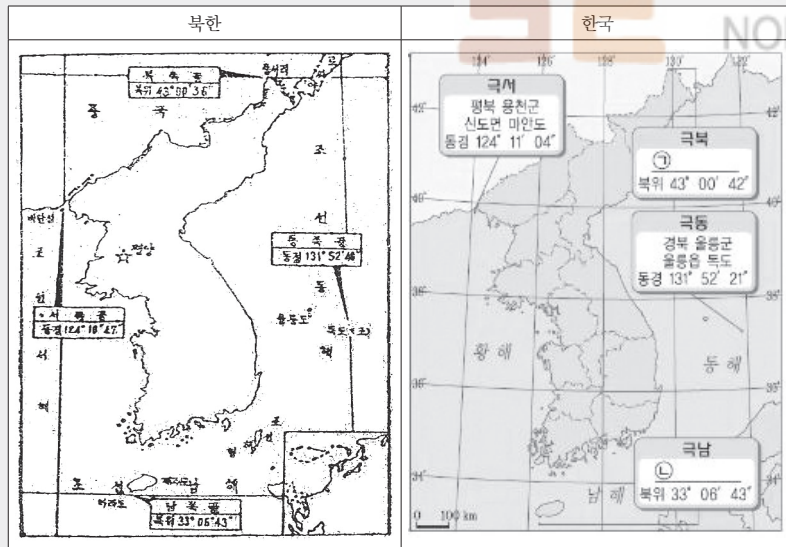
<표 1>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독도 관련 기사(1965~2013년도 기사 중에서)

날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
1965. 2. 23	'독도문제'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령토적 야망
1965. 2. 23	전 민족이 일치 단합하여 범죄적 '한일 회담'을 분쇄하자!
1965. 4. 7	독도를 일본 령토로 보도한 것은 '흑막이 개재하는 것'
1965. 8. 5	독도는 흥정대상으로 될 수 없다.
1965. 12. 17	매국 문서 교환놀음을 짓부시고, 한일 협정을 불사르라
1977. 2. 11	우리나라 령토인 독도는 결코 누구의 통략물로 될 수 없다
1978. 9. 8	독도문제를 놓고 흐지부지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
1983. 2. 28	우리나라 령토인 독도는 그 누구의 통략물로 될 수 없다
1983. 3. 4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령토이다
1996. 8. 17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조선령토
1999. 5. 21	아수성의 극치 독도해상사건
2001. 8. 2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다 (1)
2001. 8. 3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다 (2)
2001. 8. 16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는 독도(생물)
2002. 8. 20	독도는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영토

2004. 1. 29	독도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령유권 주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기학회 백서
2004. 3. 27	무엇을 노린 독도 령유권 주장인가
2004. 4. 18	독도에 대한 우표 발행
2005. 3. 27	일본의 '독도 령유권' 주장은 파렴치한 억지이며 재침야망의 발현이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비망록 (전면)
2005. 3. 28	독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뒤거래
2005. 4. 1	독도문제에 뺨친 미국의 마수
2005. 4. 22	조선 땅에 재침의 칼을 박으려는 파렴치한 독도 강탈책동
2005. 5. 10	독도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우표 발행
2005. 5. 15	자랑찬 력사, 우리 민족 제일, 울릉도와 독도 주권을 지켜낸 애국자
2006. 4. 19	독도는 신성불가침한 조선의 령토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2006. 6. 11	온 겨레가 단결하여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국책동과 독도강탈책동, 반공화국소동을 짓부셔버리자
2006. 6. 21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령토
2006. 6. 2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401군부대를 사찰하시였다
2006. 9. 21	엄중한 단계에 이른 독도 강탈야망
2007. 1. 25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 강탈야망
2008. 7. 31	말뿐인 독도대책 무능한 정부
2008. 8. 6	굴욕외교 빚어낸 독도사태
2008. 10. 23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1)
2008. 10. 26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2)
2008. 11. 1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3)
2009. 3. 23	로골화되는 독도 강탈책동, 누구 때문인가
2009. 7. 25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1) 자연지리적 견지에서 본 독도
2009. 7. 30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2) 력사적 견지에서 본 독도
2009. 8. 9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3) 국제법적 견지에서 본 독도
2009. 8. 19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4) 옛 지리서와 지도들을 통하여 본 독도
2009. 8. 29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5) 일본의 독도 령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
2010. 4. 25	무모한 단계에 이른 일본의 독도 강탈책동
2011. 8. 10	독도 강탈야망을 부추긴 조용한 외교
2012. 8. 9	독도 강탈야망을 부채질한 친일매국노
2012. 8. 17	독도 강탈에 환장이 된 일본반동들의 추태
2013. 3. 5	독도를 조선령토로 명시한 과거 일본 교과서 공개
2013. 5. 24	독도를 조선땅으로 표기한 일본 지도 발견
2013. 11. 16	독도를 팔아먹는 사대매국외교

그렇다면 북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각각의 정치체제로 분단된 국가라는 것이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보편적인 관점이지만, 분단국가라 하더라도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의 국토’로 인식하고 있는 남북한 교육에서도 공통점으로 나타나며(그림 2), 특히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상균·유수진, 2014).

북한에서의 국토 및 영토교육은 지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영토에 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북남방향으로 가장 긴 거리(풍서리-마라도)는 1,145km며, 동서방향으로 가장 긴 거리(장산곶-독도)는 645km다’라고 제시하고 있다.⁴ 즉, 북한에서 인식하는 영토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에서 최남단인 제주 마라도까지며,



〈그림 2〉 남북한의 영토인식

출처: 박홍준, 2005, 『중학교 지리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6쪽; 이영민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15쪽.

5 1992년에 수립된 리조봉건정부는 왜구의 침입이 잦은 것과 관련하여 섬주민들을 보호, 통제하려는 목적 밑에 섬을 비워두고 수토관을 정상적으로 파견하여 조사장악하고 통제하는 일시적인 ‘공도정책’을 실시하였다. 리조봉건정부의 ‘공도정책’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나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맞게 실시한 책략적인 영유권행사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로골화되자 리조봉건정부는 새로운 ‘개혁정책’을 내놓았으며 1900년 10월 25일에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세계에 공포하였다(《노동신문》, 2006. 6. 21).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반도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미국은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최장근, 2006, 109~210).

7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분쟁대상이 될 수 없는 독도 문제에서 걸으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일본의 역성을 드러내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영토 팽창야망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우리민족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행위이다. …… 미국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입김을 불어넣어 일본반동들의 영토 팽창책동을 비호조장하고 군국주의 야망을 부추김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군사력 증강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추구하고 있다. …… 미국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리간시키고 남조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남조선 당국을 더욱 따돌리려 하고 있다. …… 미국의 악랄한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단합과 안정, 통일흐름을 차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냉전시대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다. …… 독도 문제는 우리 민족이 미일 두 침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노동신문》, 2005. 4. 1).

동서로는 황해도 장연군의 장산곶에서 독도까지의 영역이다. 또한 북한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민족사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입장과 유사하며(채규철, 2007, 43), 이러한 내용은 2006년 6월 21일자 《노동신문》에 실린⁵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불가피한 영원한 영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946년 1월 SCAPIN 677호 조치에 따라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모든 영토는 식민통치 이전의 상태로 반환조치됨에 따라, 독도는 한국령으로 되돌려졌으며 오늘날까지 실효 지배하고 있다.⁶ 그 후,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 ‘조선의 섬’ 등으로 부르며, ‘우리민족’이라는 표현과 함께 독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즉,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교육에서도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영토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노동신문》에 실린 독도 관련 기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였던 2005년 4월 1일자 《노동신문》 기사⁷에는 미

국이 일본의 역성을 드는 행위는 “우리민족의 령토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논평하였으며,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과 관계를 리간시키고 남조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남조선 당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은 미일 두 침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기에 제주도만 표기하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한반도기에 독도(동도와 서도)까지 자세히 표현하였고,⁸ 독도 우표 발행이나 독도를 소재로 한 영화 <피묻은 락패>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작한 게임서비스 ‘독도를 지켜라’ 등 독도 수호정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장근, 2006, 224).

한편, 채규철(2007)은 북한이 독도 문제를 통하여 민족공조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 외에, 독도 문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여 위기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체제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독도 이슈와 관련된 정치적인 집단행사를 통하여 조직을 결속시키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일당 독재의 수령체제를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80년 10월, 제 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이라고 규정하였고(통일부, 2014, 15),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은 유일 당인 노동당의 지도 아래 전 인민이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는 수령중심의 체제라고 강조하였다.

III.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보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이

⁸ “北,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동·서도로 표시”, 《연합뉴스》, 2005. 3. 3.

있는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김일성, 1978, 857)”로 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 교육의 중점은 혁명사상교육을 강조한 정치사상교육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갖추는 체육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제도를 추진하여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광복 후 1945년 10월 ‘북조선 학교교육 실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국민학교에서 인민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인민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학제를 개편하였다. 1972년 4월에 다시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으로 개편하였다가, 2012년도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40여 년 만에 대대적인 학제개편이 이루어졌다. 4년제였던 인민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고 명칭도 인민학교에서 소학교로 개칭하였고, 6년제였던 고등중학교를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통일부, 2014, 238).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교육과정의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개편 이전의 교육과정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1. 지리교육과정을 통한 영토교육

북한에서 영토교육은 지리교육과정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토의식 교육이다. 먼저 지리교육과정을 통한 영토교육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지리교육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1학년과 5학년은 계통지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2~4학년은 지역지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 과정의 학습내용은 세계지리이며, 2, 4학년의 학습내용은 조선지리를 다루고 있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조선동해(2학년)와 동남지방(4학년)에 관한 단원에서 다루는데, 학습내용은 크게 독도의 지리적 특징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이상균·유수진, 2014, 88). 또한, 2학년 교과서에서는 국토를 국가정권 및 국가주권과 연계시키면서 독도 영유권 및 독

〈표 2〉 북한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관련 내용

학년	내용
2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입니다.” ……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독도 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허황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2학년 4쪽) 섬의 총 면적은 0.117km ² 이며 제일 높은 곳은 171m이다. 동도의 꼭대기에는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섬의 기슭은 높은 벼랑이고 두세 곳에 크지 않은 자갈밭이 있다. 독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도 풍부하다. 섬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고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 독도는 조상대대로 물러오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이다. (2학년 76쪽)
4학년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산섬으로서 울릉도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었다. 동, 서 두 개의 큰 섬과 주위의 작은 섬들, 암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독도는 그 주변바다에 오징어, 고등어, 꽂치 등이 많아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수산근거지로 리용하여 왔다. 오늘날 이 독도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빼앗아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농들의 강도적 야망은 실현될 수 없으며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이다. (4학년 69쪽)

출처: 박홍준, 2005, 『지리 2』, 4~76쪽; 김도성·차용걸, 2005, 『지리 4』, 69쪽.

도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⁹

〈표 2〉는 북한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독도에 관한 내용이다. 제1장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국토는 국가정권을 세우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입니다”라고 김정일의 어록을 인용하여 자주권이 미치는 국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어록은 자주 등장한다. 특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어록을 인용하여 내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표 2〉를 보면, 김정일의 어록을 인용한 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이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바다를 다루고 있는 제5장에서 “조선동해는 해안선 굴곡이 심하지 않으며 꽃과 만, 섬이 적다”고

9 북한에서의 국가 주권 개념은 ‘주권’과 ‘자주권’으로 분류된다. 주권은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말하는데 정권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주권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에 따라 정치의 계급적 성격이 규정된다. ……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통치 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자기의 완전한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전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주권은 그 국가의 신성한 권리로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 자주권에 대한 침해는 곧 침략으로 된다. 공화국 정부는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대내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1970, 428~429, 550).

설명하면서 주요 섬으로 독도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 지리를 다루고 있는 4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독도의 형성과정, 그리고 오래 전부터 수산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단락에서는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강도적 야망’이라고 표현하면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지리를 다루고 있는 4학년 교과서는 한반도 전체를 지역별로 다루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주변 바다에 사는 고등어, 오징어, 꽂치 등에 관한 정보만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정도로서 수산근거지라고만 소개하는 등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비해 자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북한에서는 독도에 관한 연구 성과나 참고자료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에 관한 내용이 소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고문헌을 근거로 한 한정된 정보가 교과서에 제한적으로 수록되다보니 북한의 청소년들이 독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으며, 다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 돌 섬’과 같은 정도의 인식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지리교과서에는 다양한 독도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한, 독도의 지리적 당위성이나 역사적 사실, 독도 관련 인물 및 사건과 쟁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다. 그러나 일본 당국의 독도 도발과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이 도를 넘는 상황임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지리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전락되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표 3〉은 해방 직후인 교수요목기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및 지리교과서에서 다뤄진 우리의 영토,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한국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

시기	독도 관련 학습내용
교수요목기 (1946~1954)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가면, 독도(獨島)라 하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는데 해식지형을 이룬다. 물개 등이 살아 이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섬의 영유(領有)에 관하여서는 일본과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152~153쪽). 『중등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노도양 저, 탐구당, 1949)
1차 교육과정기 (1954~1961)	우리 한국은 우리 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의 예에 따라서 해양 주권선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모하게도 이 주권선을 넘어서 자주 우리의 어장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 어장은 60만 어민의 생명선인 동시에 우리의 중요한 식료의 생산터인 것이다. 영토와 마찬가지로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45쪽). 『최근 국토지리』(최복현 지음, 민중서관, 1956)
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화산도이며, 경사가 급한 동도와 서도의 두 섬으로 되어 있다. 독도는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탐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병을 파견하고 어민을 보호하고 있다(75쪽). 『중학 사회1』(김경성 외 5인, 법문사, 1966)
3차 교육과정기 (1973~1981)	동해상의 울릉도는 제주도과 달리 물이 풍부하나, 경사가 매우 급하여 경사지에 화전이 개간되었으며, 식량의 자급은 반년분에도 미달한다. 이리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며,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경주·영일 등 동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편 독도는 동·서 두 섬으로 된 암산이고, 음로수가 없으나, 어업상·국방상 중요하다(221~222쪽). 『고등 표준지리1』(이지호 지음, 삼화출판사, 1972)
4차 교육과정기 (1981~1987)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이루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전복·미역 등을 따낸다(55쪽). 『중학 사회1』(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1979)
4차 교육과정기 (1981~1987)	울릉도는 동해 어장의 어업 기지로서, 육지에 비하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작은 편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도동은 울릉도의 생활 중심지로서, 육지와 연결되는 항구이며, 자동은 어업 전진기지이다(67쪽). 『중학교 사회1』(한국교육개발원, 문교부, 1985)
5차 교육과정기 (1987~1992)	그러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의 선을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독도는 영해선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62쪽). 『고등학교 지리1』(오홍석 외 2인, 장왕교재, 1985)
5차 교육과정기 (1987~1992)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나 되는 깊은 바다로 해저 분지가 매우 넓으며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해저 분지는 중생대 말에서 제3기에 걸쳐 현재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점점 갈라져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침하와 해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 형성되었다. 동해에 대륙붕이 좁게 나타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 섬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92쪽). 『한국지리』(주경식 외 3인, 능력개발, 1990)
6차 교육과정기 (1992~1997)	동해 가운데에는 화산섬인 울릉도와 독도가 위치해 있고, 그 북쪽에는 대화퇴(大和堆)라는 수심 300~500m의 넓은 벙크가 형성되어 있다(81쪽). 『공통사회(하) 한국지리』(동아출판사, 1996)
7차 교육과정기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각 회의결정의 이유를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다. [...] 독도에 있는 해조류는 천연 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 독도는 위치상으로 해양 자원의 확보 및 영역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21쪽). 『고등학교 한국지리』(황만익 외, 지학사, 2002)
2007 개정 교육과정	[...]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많다.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점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서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

하여 표시하였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의 색깔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 / 持二)'이라고 써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연합국이 1951년 대일본 강화조약 체결준비로 1950년에 합의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명시적으로 독도를 거명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의 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17쪽).
『고등 사회1』(박병익 외 4인, 천재교육,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항공 교통과 방어의 지리적 중요성을 하는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오징어, 공치 등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미래의 에너지인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와 같은 해양자원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독도는 환경 및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나다. 독도는 경사가 급한 화산섬으로 토양층이 얇으며 빙설을 따라 금방 흘러내려 토양이 건조한 편이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이 무단하게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불법 점령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우리땅이다. 역사적인 근거뿐 만 아니라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독도를 영토 문제화하여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31~32쪽).
『고등학교 한국지리』(서태열 외 7인, 금성출판사, 2013)

출처: 서태열 외, 2011, 「해방 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관련 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79~92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교수요목기~7차교육과정기); 서태열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2009개정교육과정), 금성출판사; 박병익 외, 2011, 「고등학교 사회」(2007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

2. 조직생활을 통한 영토교육

북한에서는 영토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나 직장과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한 영토교육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노동신문》을 통한 영토교육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당과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치신문이다. 이 신문은 당원이 있는 가정마다 배포되며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 농촌에 이르기까지 당·군·정 모든 기관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읽을 수 있도록 배포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각 학급별로 '사상담당 위원장'이 '독보(讀報)'를 하고, 직장에서는 7시 30분에 출근하여 15분 동안 '독보'를 한다. '독보'는 북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며, 말 그대로 신문이나 자료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독보'를 하는 주된 목적은 신문이나 자료의 내용을 읽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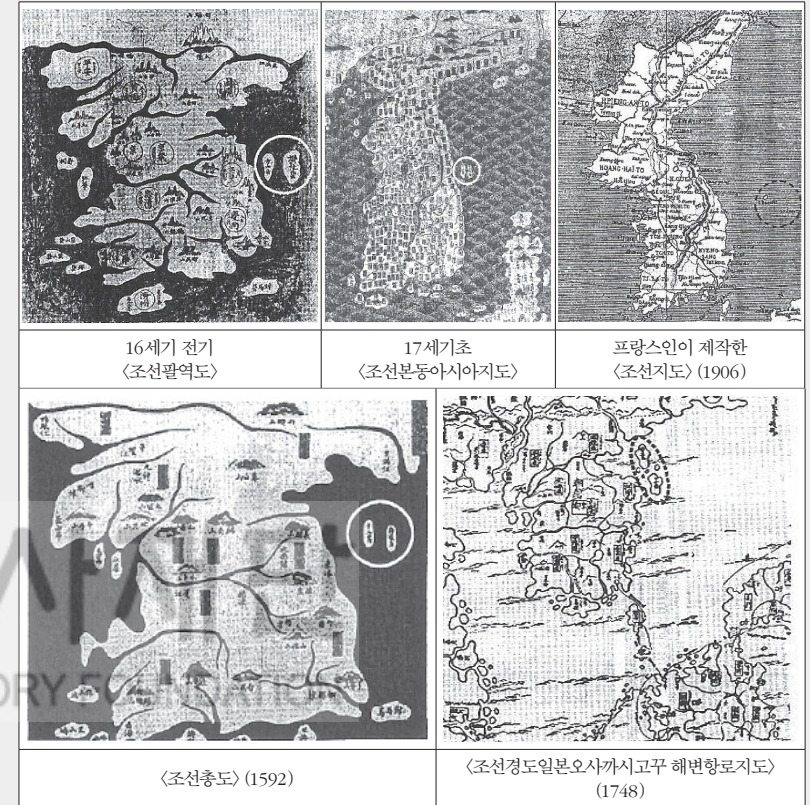
《노동신문》에는 다양한 기사들이 실리지만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논평이나 사설로 싣고, 이것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3〉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독도 관련 기사
출처: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1)”, 《노동신문》, 2008. 10. 23, 6면;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2)”, 《노동신문》, 2008. 10. 26, 6면;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3)”, 《노동신문》, 2008. 11. 01, 6면.

신문에 기사를 실을 때에도 북한은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 어떤 이슈사건이라도 《노동신문》의 제1면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2면에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정치 행사 내용들, 3면은 국내 각종 현황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보통 4면부터 6면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2008년 10월 23일, 10월 26일, 11월 1일에 각각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하여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라는 제목으로 1~3부까지 독도에 관한 기사를 6면에 게재하였다(그림 3).

북한의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는 고문헌을 근거로 독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교과서가 아닌 《노동신문》을 통해 소개된다.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은 독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노동신문》에



〈그림 4〉 《노동신문》에 소개된 조선의 영토
출처: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1)”, 《노동신문》, 2008. 10. 23;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2)”, 《노동신문》, 2008. 10. 26; 《노동신문》,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독도 (3)”, 2008. 11. 1.

10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조직 혹은 김일성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조직을 통틀어서 ‘사로청’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북한에서는 만 17세가 되면 출생증이 공민증으로 바뀐다. 따라서 만 17세가 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14세부터 사회주의 청년동맹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사로청 조직생활을 하지만 만 17세 이상부터는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조직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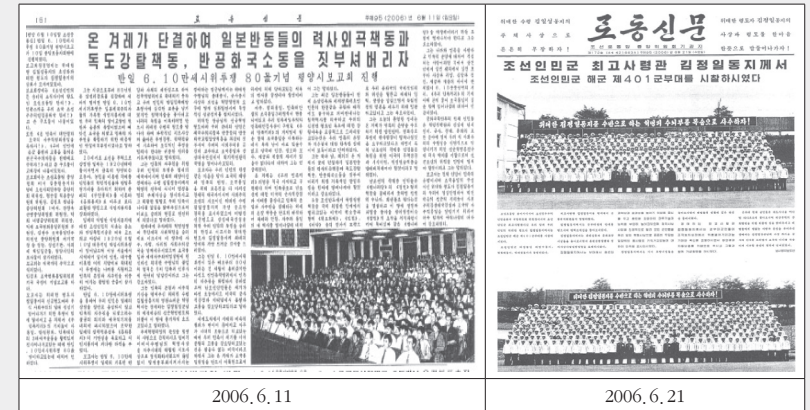
사설 형식으로 게재되어 ‘독보’용으로 활용되고, ‘독보’를 통한 영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북한에는 학교부터 사회의 모든 영역에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직 단위로 사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만 8세부터는 소년단조직(소년단)에 입단하고, 만 14세부터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조직¹⁰(사로

청)에 가맹하여야 하며, 사회에 진출한 후 결혼 전까지는 '사로청'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결혼 후 직장인은 직업총동맹조직(직맹)에, 전업주부는 여성동맹조직(여맹)에, 농촌에서는 농업근로자동맹조직(농맹)에, 그리고 조선로동당 조직(당 조직) 등에 가입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모든 조선인민은 조직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 조직생활의 규칙이다. 이러한 각각의 조직에는 '사상'을 담당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있는데, 이들이 《노동신문》에 실린 신년사나 논평·사설 등을 읽어주며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한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든 활동이 '조직'단위로 돌아가며,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영토교육 또한 한층 더 심화된다.

두 번째는, 집회나 군중대회를 통하여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토교육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각종 집회나 궤기모임, 군중대회가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독도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정치행사를 통하여 민족과 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모든 인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예컨대 집회나 군중대회, 궤기모임행사에서 토론자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하고, 발표 중간 혹은 발표가 끝난 다음에 '구호'를 외치는데, 토론자가 "조국의 영토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선창하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사수하자!"를 세 번 반복하게 함으로써 '영토를 노리는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선동한다. 2006년 6월 21일에는 《노동신문》 기사에 독도 관련 기사와 북한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해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바다를 지키는 용사들을 찾은 기사를 함께 실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바다수역에 있는 '우리 영토'를 지키려는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독도 우표 발행(2004. 4)에 항의하여 같은 해 10월, '竹島(TAKESHIMA)' 명칭이 표기된 항공사진과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이 포함된 독도 평면 이미지를 담은 독도 우표를 발행하였고, 이어서 2005년 3월 16일에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이른바 '죽도의 날' 조례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북한은 더욱 민감하고 거세게 반응하였다. <그림 5>를 통해 확인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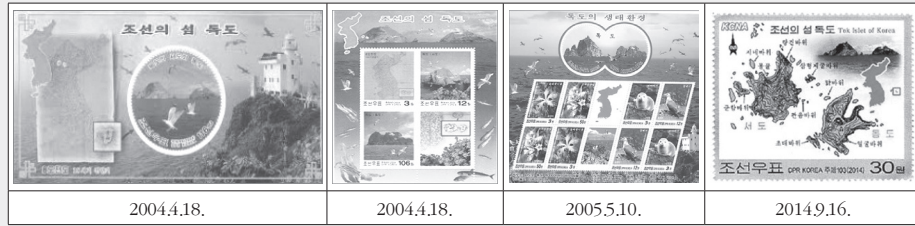
<그림 5> 반일시위 사례 : 평양 시민들의 궤기대회

출처: "은 거레가 단결하여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국책동과 독도강탈책동, 반공화국소통을 짓부셔버리자", 《노동신문》, 2006. 6. 1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401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 《노동신문》, 2006. 6. 21.

할 수 있듯이, 2006년에 북한 당국은 날로 노골화되어가고 있던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궤기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영토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는, 우표 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토교육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북한에서는 우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이때 우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토교육적 의미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표는 시각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해주는 속성이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우편사가 '조선의 섬 독도' 우표 2종(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고 밝히면서 독도 명칭은 옛날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 '조선동해의 고독한 섬'으로 불렸던 연유로 명명되었으며, 이 섬은 서도와 동도, 그리고 130여 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진 '조국의 영토'라고 설명하였다.¹¹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는 독도의 생태환경을 담은 우표를 발행하였고,¹² 최근 2014년 9월 15일에는 독도 지도가 그려진 조선의 섬 독도 새 우표를 발행하였다.¹³ 독도 우

11 "독도에 대한 우표발행", 《노동신문》, 2004. 4. 18, 4면.
12 "독도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우표발행", 《노동신문》, 2005. 5. 10, 5면.



〈그림 6〉 북한에서 발행한 독도 우표(2004~2014)

출처: “北, 독도 우표발행하며 ‘독도는 세계가 공인하는 조선의 영토’”, 《조선일보》, 2014. 9. 16.

표에는 서도와 동도 주변에 지네바위, 탕건바위, 물골, 삼형제굴바위, 군함바위, 관음바위(미역바위), 닭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을 상세히 표시하였다(그림 6). 북한의 청소년들은 전선에 있는 119만¹⁴여 명의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낼 때 독도 우표를 붙이기도 하고,¹⁵ 가정에서는 군대 간 자녀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독도 우표를 사용하는데,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도 우표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우표보다도 독도 우표를 선호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우리의 영토를 잘 지켜달라는 염원이 우표에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IV.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대응 방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이다(이상균·유수진, 20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제강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부결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독도와 관련된 영토교육은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그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13 “北, 독도 우표 발행하며, ‘독도는 세계가 공인하는 조선의 영토’”, 《조선일보》, 2014. 9. 16.

14 2012년도 기준으로 육군 102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통일부, 2014).

15 해마다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는 사로청 청년동맹조직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다. 위문편지는 위문품과 함께 전달되며, 위문품도 청소년들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수집된다. 위문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품목은 치약, 칫솔, 세수수건 등이다. 그 밖에 토끼털, 목도리, 모자, 양말, 내복, 담요 등이 인기 있는 것들이다.

없다. 한편, 북한은 다양한 형태로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4년 4월, 북한 당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시점에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 〈피묻은 락패〉를 제작¹⁶하고 일본의 독도 강탈 야

16 “독도소재 북한 영화 ‘피묻은 락패’ 전 주영화제서 상영”, 《한겨레》, 2005. 4.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753.html.

〈표 4〉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교과목	출판사	중전기술 내용	검정 통과본
지리	도교서적	지도상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국경선 그어 일본 영토로 표기. 기술 없음	‘일본 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서적	‘일본에는 다케시마와 센카쿠 제도 등의 외딴섬이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시마네현)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
	일본문교 출판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기술 없음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토(竹島)로 표기. 사진설명에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죽도는-1952년부터 한국이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교육출판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기술 없음	‘竹島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	교육출판	없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에 …… 북방영토와 함께 다케시마(시마네현)도 일본의 고유의 영토다’
	도교서적	‘다케시마, 센카쿠제도는 어느 것이나 다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공민	일본문교 출판	‘시마네현 앞바다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교육출판	없음	‘다케시마(시마네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으며, 미해결 문제가 되어 있다’
	제국서원	지도상 독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EEZ에 포함	지도상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EEZ에 포함
	시미즈서원	없음	‘竹島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확인된 고유의 영토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거하고 있다’
	이쿠호샤	사진설명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죽도로 소개	‘竹島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다.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죽도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자유사	없음	‘우리나라에는 북방영토, 竹島 등 2개의 중대한 영토문제가 있고 모두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이나, 러시아와 한국이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제8차 독도특위: 현안보고』, 『제8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현안보고』, 3쪽.

육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는 독도(동도와 서도)가 표현된 한반도기를 제작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남·북 간에 공동학술토론회¹⁷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형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최장근, 2006, 224).

〈표 4〉는 2000년대 중반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 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앞서 〈그림 1〉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130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굴욕외교가 빚어낸 독도 사태, 말뿐인 독도 대책 무능한 정부’ 등과 같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였다(표 1).

한편, 일본은 2005년도판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2011년에 검정통과된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불법점거하고 있는 그들의 영토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명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 영토로서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남북한의 공조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한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문화 관광 부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남북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토주권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장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공동대응 전략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청소년들이 울릉도·독도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독도와 관련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청소년들이 강원도 원산항에서 출발하여 동쪽 끝인 독도까지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차원에서 영토교육을 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학교 조직생활에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내의 명산이나, 유적지·전적지·사적지를 답사·견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원산시에는 송도원국제야영소가 있으며 원산 시내 북서쪽 3km 떨어진 곳에는 송도원국제해수욕장도 있다. 이곳은 북한의 각 도·시·군 학교에서 조직생활에 성실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야영캠프를 하는 곳이며, 북한과의 수교관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온 해외청소년¹⁸들에게도 야영캠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1960년에 건설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2014년에 리모델링¹⁹을 시작하여 김정은이 여러 차례 현장을 찾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곳이다.

송도캠프에 온 청소년들이 송도원을 거쳐 독도까지 답사를 진행할 경우, 이들이 돌아간 다음 독도에 대한 홍보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나 책에서만 보았던 독도를 직접 체험한 북한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험을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실감나게 전해줌으로써 지리 수업이나 〈노동신문〉의 사설(독보)을 통해 전해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토애와 영토의식이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을 거쳐 독도를 체험함으로써 외국에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왜곡된 독도에 관한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민족 영토로서의 독도를 보다 사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 이벤트는 일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남북

한 청소년들의 독도 문화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관한 정보는 미디어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외부에 알려진 북한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

17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북한 측에서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황명철(독도는 역대 일본 정부와 국제협약에 의해 영유권이 확인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 『동대』 사 부장 리학수(일본 반동들의 영유권 주장은 령토팽창 야망의 발현), 조선역사학회 회장 허중호(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가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상지대학교 총장 강만길(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 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장희(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 간의 협력방안), 동국대학교 교수 한상범(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국가화의 문제)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였다(〈한겨레〉, 2002. 8. 16).

18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 국가들에서 선발되어 오는 청소년들이다.

19 “北 김정은, 원산 소년단야영소 리모델링 현장 시찰”, 《SBS뉴스》, 2014. 2. 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62348.

오키는 동시에 이색적인 독도 문화교류를 통하여 세계인들의 시선을 독도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독도에 관한 공동학술연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2002년에 이미 남북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의 접근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향후에는 보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독도 연구 학술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남북한의 입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학술교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독도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학술교류는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민족적 교류와 화해, 협력의 차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간의 학술교류는 민간단체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남북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도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교류협력이 성사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도 영유권 관련 영토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향후 실현 가능한 남북 양측의 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남북한은 비록 각각의 정치체제로 대치 상태에 있음에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듯 남북한 모두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독도문제를 통하여 민족공조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 외에도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결속 차원에서 영토교육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영토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리교육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교육 내용은 2학년과 4학년 지리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내용의 양은 많지 않지만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의식과 강한 수호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학습내용은 주로 고문헌을 근거로 한 역사적 기록에 한정됨에 따라 북한의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독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유형의 영토교육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상교육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활용하는 '독보'나, 군중대회, 또는 역사나 문화를 강조하는 우표 발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노동신문》은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 모든 기관에 배포되며, 매일 아침 출근 또는 등교 직후에 약 15분간 사상담당 위원장을 통하여 신문에 실린 특정 기사를 읽게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5~2013년까지 총 177회 분량의 독도 관련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노동신문》을 통한 독보는 영토교육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각종 집회나 궤기대회 등 군중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결성되는데, 독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집회를 통하여 민족과 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모든 인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표를 통하여 영토교육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북한의 청소년들은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군사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봉투에 붙여서 보내는 독도 우표는 군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우표를 선호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우리의 영토를 잘 지켜달라는 염원

이 우표에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남북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북한의 청소년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북한에는 청소년들이 전국을 답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특히 강원도 원산 송도원국제야영소 캠프에 온 북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울릉도나 독도까지 답사를 갈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경우, 독도에 대한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 모이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의 최동단인 독도를 방문한다면 남북대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두 번째, 콘서트를 활용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독도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한류문화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독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문화콘서트는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이며, 그러한 이색적인 문화교류 이벤트는 세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독도를 알리는 또 다른 창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 간 독도에 관한 공동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독도에 관한 남북 공동학술교류는 학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전문가 집단의 학술교류가 성사될 수 있다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하여 남과 북의 통일된 목소리로 민족적 차원에서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더욱 강력한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 어젠다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남북한 양측의 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기획되었다. 북한은 비록 한국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조직생활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교 교육에서 독도 교육은 중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지리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학습내용은 많지 않은 편이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의식과 강한 수호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의 영토교육은 조직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노동신문》에 게재된 독도 관련 기사를 활용하는 ‘독보(신문기사 읽어주기)’ 형식의 사상교육이나 군중대회를 통하여 영토의식 및 국토수호 의지를 갖게 해주고 있으며, 또한 독도 우표 발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세 가지 남북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국제야영소에 캠핑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독도에 대한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에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는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독도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의 울릉도와 독도 방문 일정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색적인 문화교류 이벤트를 통해 세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토 독도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 간 독도에 관한 공동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독도에 관한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남북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로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노동신문, 독도 영유권, 독도 우표, 민족공동체, 영토의식, 일본의 독도 도발, 지리교과서

ABSTRACT

Territorial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Yi, Saangky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hoi, Hee

Ph.D. candidate,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options for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jointly respond to Japan's growing claims over Dokdo and thereby consolidate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Despite functioning under a political system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this study was able to determine that in terms of sovereignty over Dokdo, North Korea takes a standpoint identical to that of South Korea. Territori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carried out largely through the two channels of school curricula and social activities. In secondary education, Dokdo is covered in geography classes for second and fourth graders and although the amount of contents are limited in textbooks, they seem to reflect a definite awareness of sovereignty over Dokdo and a strong will to guard it. Examples of territorial education through social activities include ideological education in the form of 'reading newspapers,' particularly articles related to Dokdo published in Rodong Sinmun (Labor Daily), rallies to instill a sense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will to guard national territory, or stamps featuring Dokdo issued in order to indirectly draw attention to the island. This study suggests three ideas to induce the two Koreas to collaborate in consolidating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First, if a program to visit Ulleungdo and Dokdo were to be made available to North Korean teenagers attending the Songdowon International Camp in Wonsan, Gangwon Province of South Korea, it would not only help further promote awareness of the Dokdo issue, but would also put considerable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econd idea is arrange for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teenagers to

engage in Dokdo-related cultural exchange. This could be implemented in association with the North Korean teenagers' visit to Ulleungdo and Dokdo, turning it into a special cultural exchange that would naturally draw to Dokdo the attention of those outside Korea. The third idea is to allow academic exchange on the Dokdo issu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would be very meaningful not only for academic research on Dokdo, but also for developing channel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discuss and jointly respond to Japan's claims over Dokdo.

Keywords

Rodong Sinmun (Labor Daily), sovereignty of Dokdo, Dokdo stamps, national community, territorial awareness, Japan's claims over Dokdo, geography textbooks

참고문헌

박병익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서태열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이영민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통일부, 『북한이해 2014』,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1985, 『중학 사회1』, 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제8차 독도특위: 현안보고」, 『제8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현안보고』.
 배진수·양주, 2009,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1948~2008년) 현황분석: 북일 관계 및 한일관계 상관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서태열·조경철·최수미, 2011, 「해방 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 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태진, 1996, 「南北韓의 韩国領土問題認識에 관한 考察: 특히 北韓側の 國境·領土問題에 대한 對應側을 中心으로」, 『통일연구』 제1권.
 윤해수, 1996, 「북한외교이념의 변화에 대한 연구: 김정일체제 이전과 이후의 비교」, 『사회과학논총』 제12권.

이상균·유수진, 2014,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영토해양연구』 제7권.
 채규철, 2007, 「북한의 독도 인식과 정치적 의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교육』 제46권 4호.
 최장근, 2006,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양상」, 『일본어 문학』 제32집.

[인터넷 자료]

“北, 독도 우표발행하며 ‘독도는 세계가 공인하는 조선의 영토’”, 《조선일보》, 2014. 9.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6/2014091602134.html
 “北 김정은, 원산 소년단야영소 리모델링 현장 시찰”, 《SBS뉴스》, 2014. 2. 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62348
 “北,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동·서도로 표시”, 《연합뉴스》, 2005. 3. 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303063742126>
 “독도소재 북한 영화 ‘피문은 락패’ 전주영화제서 상영”, 《한겨레》, 2005. 4.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753.html
 “8·15공동행사, 독도 영유권 협력 필요성”, 《한겨레》, 2002. 8. 16.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2/08/003000000200208161052038.html>

[북한 자료]

김도성·차용걸, 2005, 『지리4』, 교육도서출판사.
 김일성, 1978, 『김일성저작선집(7)』, 조선로동당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2』,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1970, 『정치용어사전』, 동경: 구월서방.
 조선우표사, 2007, 『조선우표목록 Korean Stamp Catalogue(1946~2006)』, 조선우표사.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영토”, 《노동신문》, 2006. 6. 21, 6면.
 “독도문제에 뻔친 미국의 마수”, 《노동신문》, 2005. 4. 1, 5면.
 “독도에 대한 우표발행”, 《노동신문》, 2004. 4. 18, 4면.

“독도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우표 발행”, 《노동신문》, 2005. 5. 10, 5면.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 - 독도(1)”, 《노동신문》, 2008. 10. 23, 6면.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 - 독도(2)”, 《노동신문》, 2008. 10. 26, 6면.
 “옛 지도들을 통하여 본 조선의 섬 - 독도(3)”, 《노동신문》, 2008. 11. 1, 6면.
 “온 겨레가 단결하여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국책동과 독도강탈책동, 반공화국소동을 짓부셔버리자”, 《노동신문》, 2006. 6. 11, 5면.
 “우리나라 령토인 독도는 결코 누구의 룡락물로 될 수 없다”, 《노동신문》, 1977. 2. 11, 5면.
 “전 민족이 일치 단합하여 범죄적<한일 회담>을 분쇄하자!” 《노동신문》, 1965. 2. 23, 3면.
 “‘한일회담의 현안문제’ 독도 문제”, 《노동신문》, 1965. 2. 23, 3면.



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김주환 YTN부장 · 정치학 박사

I. 머리말

2000년 이후 동북아에서 국가 간 영토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을 꼽으라면 조어도(釣魚島)¹ 열도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부가 '5가지 상황'²이 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조어도 전쟁결심요청서(請戰決心書)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2010년부터 조어도 등 각종 해양분쟁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해양이익(maritime interest)'이라는 표현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조어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교육받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대 그리스·

1 국제적으로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는 도서의 명칭은 실효적 지배국의 명칭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중립성을 고려해 '조어도'로 칭한다.

2 5가지 상황이란 ① 일본이 군사력을 출동시켜 조어도를 점령하는 경우, ② 조어도에 행정기구를 설립해 섬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경우, ③ 섬에 군사·행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 일본 군함이나 항공기가 조어도 12해리 내 해역과 상공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상감시선과 군함, 항공기를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도발하는 경우, ⑤ 미일 안보조약을 핑계로 미국 군사력을 동원해 조어도를 침략하거나 중국군에 군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부가 시진핑에 요청한 對日전쟁 결심 5가지 조건은", 《조선일보》, 2014. 2. 21.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우리 바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배타적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연안(100해리) → 근해(200해리) → 원해(1,000해리)로 제해권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2012년 9월 일본이 조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그 지역이 자신들의 영토라는 점을 들어 영해기선을 선포했고, 2013년 11월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동·남중국해, 또는 서태평양 해양안보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조어도 분쟁을 미국과의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트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조어도를 놓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 특히 2010년부터 중국의 해양정책이 공세적으로 바뀐 배경,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 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2010년에 발생한 해양분쟁 등을 중심으로 이를 공세적 계기로 활용하는 중국의 정책 전환과 그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으로 제해권을 확충하려는 일련의 노력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해양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5장 맺음말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의 최종 목적이 미국과 대등한 신형대국관계를 설정하려는 과정이라는 점도 설명할 것이다.

II. 중국 해양정책의 전환점이 된 2010년

1. 조어도 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 시각

조어도는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타이완, 중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서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key-stone)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조어도가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5세기 명나라 때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送)』이라는 사료에 조어도가 푸조우(福建)와 류큐(琉球)를 연결하는 해상항로의 지표였다는 기록을 증거 삼아 15세기부터 이곳이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책에서 조어도의 5개 섬 중 왜구를 막는 담당 부서에 ‘조어도’, ‘황미서(黃尾巖)’, ‘적미서(赤尾巖)’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³ 중국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 중국 정부가 처음 조어도 주권 소유를 주장한 1971년 12월 4일자 신화통신의 보도를 통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30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895년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켰다. 이때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이 사실상 조어도 영유권을 유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조어도는 일본 영토로써, 미국의 관할 상태에 있었다. 현재 조어도는 일본과 중국, 타이완의 영토로 각각 등록되어 있다. 당시 강화조약 내용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작용했다.⁴

이후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 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면서부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역사적 관점에서나 일본과의 동맹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아주 중요한 행위자(crucial player)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전 당시 중국은 경제·외교적 입지로 인해 실제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우언라이 및 덩샤오핑은 중일 국교정상화(1972)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1978) 과정에서 중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조어도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자고 제안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이 문제는 장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⁵ 하지만 정치적 타협을 통한 미해결 보류는 영토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다.

3 양희철·김진욱, 2014, 「조어도(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6권 3호, 260~261쪽.

4 김성철, 2014, 「중국·일본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3월호, 세종연구소, 15쪽; Jean-Marc F. Blanchard, 2000, "The U.S. Role in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 (Senkaku) Islands, 1945-1971," *The China Quarterly*, Volume 161, March, pp. 95-123.

5 김기주·황병선, 2013, 「조어도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49쪽.

중국은 특히 일본이 내세우는 ‘무주선점(無主先占)의 원칙’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6 나영주, 2013, 「센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69~73쪽.

7 2010년 9월 7일 당시 일본 순시선 미즈키호(水波號)는 영해에 진입한 중국 어망선 ‘민지위 5179호’를 발견하고 퇴각을 명령했으나 중국 어선은 이를 어기고 조업을 계속했다. 당시 중국 어선 잔치승(詹其雄) 선장은 “중국 영역인 조어도에서 조업한다”며 퇴각 명령을 거부했다. 결국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두 척을 투입해 충돌 끝에 어선을 나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아주 강하게 대응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주재 일본 대사인 니와 우이치로(丹羽幸一郎)를 초청하는 등 어선 나포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일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길로 방침을 굳히고 구류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회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일본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인 선원들을 9월 13일 석방한데 이어 선장 잔치를 9월 24일 석방했다. “중, 다투어도 ‘보복’ 어디까지 갈까”, 《연합뉴스》, 2010. 9. 24.

8 Linus Hagstro, 2012, "Power Shift in East Asia? A Critical Reappraisal of Narratives on the Diaoyu/Senkaku Islands Incident in 2010,"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pp. 272~273.

9 Willy Lam, 2010, "Hawks vs. Doves: Beijing Debates 'Core Interests' and Sino-U.S. Relations," *China Brief*, Volume 10, Issue 17, August 19.

10 마고사키 우케루 저,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미디어미디어, 9쪽.

특히,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⁷ 이후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외교적 갈등은 그때까지 양국 사이에 유지되어오던 ‘판단 보류’라는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정책이 공세적으로 바뀐 변곡점이 되었다.⁸

이 시기를 전후로 한 《인민일보》의 보도를 살펴봐도 중국의 해양정책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인민일보》가 ‘핵심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2008년에 95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개념이 2010년 이후부터는 ‘해양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다. ‘해양이익’이 사용된 횟수는 2010년 30건, 2011년 58건, 2012년 100건으로 늘어났다.⁹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12년 9월 일본이 조어도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이것을 동중국해의 질서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¹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조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분명 중국과 일본의 문제다.

하지만 중일 간의 격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이면에는 미국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조어도 분쟁 역시 중일 간의 문제가 아닌 미중 간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0년 12월 당시 다이빙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가 미국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며 조어도 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시사했다.¹¹ 중국 외교부 산하 국

제전략·안전연구센터가 발간한 『2014 중국 국가안전연구 보고서』에서도 “미국이라는 역외세력이 중국의 해양안보에 전방위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¹²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일본·타이완·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호주·태국·미얀마·인도·파키스탄과 러시아까지 동원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¹³ 그래서 조어도 분쟁도 기본적으로 중일 간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⁴ 이때문에 미일동맹의 응집력과 미국의 전략을 테스트하고자 중국이 조어도 분쟁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¹⁵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국이 조어도 분쟁에서 공세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도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의 배경

2010년 9월 7일 조어도 인근에서의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자위대 순시함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동아시아 전반에서, 더욱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중화민족주의의 부활, 핵심이익의 변화, 경제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1) 중화민족주의의 부활

지난 2008년 9월 15일 국제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전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블랙홀

11 Dai Bingguo, 2010, “Adhere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USC US-China Institute*, Dec. 6. <http://china.usc.edu/ShowArticle.aspx?articleID=2325>. (검색일: 2014. 5. 14)

12 “아시아 재균형-주동작위 대결 동아시아 흐든다”, 《한겨레》, 2014. 5. 28.

13 Zhang Yun, 2014, “The Diaoyu/Senkaku Dispute in the Context of China-US-Japan Trilateral Dynamics,” *RSIS Working Paper*, No. 270,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19 March. www.rsis.edu.sg/publications/Working_Press/WP270.pdf, p. 2. (검색일: 2015. 3. 10)

14 강병환, 2014,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 『중소연구』 제38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114쪽; 신옥희, 2012,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7쪽; 신옥희는 “냉전 이후,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관계는 갈등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Bryce White, 2013, “Washington’s “Asian Pivot” and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US-China Power Play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Research* December 21. www.globalresearch.ca/washingtons-asian-pivot-and-chains-air-defense-identification-zone-us-chain-power-play-in-the-south-china-sea/5362329. (검색일: 2014. 12. 18)

로 빠져들었다. 그즈음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decline)와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 아메리카(Post-American World)체제로 진입함과 동시에, 나머지 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이른바 ‘중국 역할론’의 증대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G2)으로 부상하였다.¹⁶

이 시기를 ‘전략적 호기[戰略機遇期]’라고 판단한 중국이 자국의 부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중화민족주의였다. 중국 당국의 측면에서 보면, 각종 사회불안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한 중국과 중화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하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¹⁷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틀을 준거(準據)로 국가 부강, 민족 부흥, 국민 행복이라는 ‘중귀명[中國夢: 중국의 꿈]’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6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17 이동률, 2012, 「중국 민족주의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45쪽.

18 이문기, 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202쪽.

19 이영학, 2012, 「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68쪽.

20 서정경, 2013, 「미·중 민족주의의 특성과 양국관계: 메시아니즘과 천자관의 조우」, 『국가전략』 제19권 3호, 세종연구소, 11쪽.

즉, 최근의 중국 민족주의는 대외관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목적론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대내적 통치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적·실용적 성격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를 지칭해, 케네스 리버설(Kenneth G. Lieberthal)은 세계가 중국을 글로벌 주요 대국(major global player)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중국이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중국의) 태도가 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중국의 중화민족주의를 주변국들은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외교 자세, 남중국해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관련국 대응 등이 바로 그것이다.²⁰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지도부도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

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결속을 강조했다.²¹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와 ‘경제성장’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이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념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중국 사회의 단결과 영토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민족주의 이념과 개혁·개방을 기반으로 외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장려하는 경제성장 이념이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대립적 정당성 이념은 조어도 분쟁에서도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분쟁이 격화하고 경제성장이 강조되면 협력

적인 태도가 나타난다.²² 일례로 1996년 7월 일본 극우 단체인 일본청년사가 조어도에 상륙해 등대를 설치하자 홍콩 등지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이 펼쳐졌지만, 중국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거리시위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양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앞둔 시점(1997년 9월 개정)이었다. 이후 2001년 EP-3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는 반미시위를 허가하지 않았다. 잦은 출범한 부시 행정부와와의 원만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인데, 중국 당국은 언론에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제시카 첸 바이스(Jessica Chen Weiss)는 “중국 지도부는 경제나 외교계 증진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리시위를 허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2) 핵심이익의 변화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초창기 타이완이나 티베트 문제에 집중되었던 중국의 핵심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데서도 알 수 있다.²⁴ 2009년 7월

21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1일 베이징 연치후[雁栖湖]에서 열린 제22차 APEC 정상회의 축사에서 “일화불시춘(一花不春: 한송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며), 고안난성행(孤雁難成行: 기러기 한 마리는 무리를 이루기 어렵다), 풍번백랑화천편(風翻白浪花千片: 바람이 하얀 물결을 천조각으로 부수고), 안점청천자일행(雁點青天字一行: 푸른 하늘에는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간다)”라는 당나라 때의 시인 백가이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APEC 21개 회원국은 21마리의 기러기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시진핑, 아태국가들, 기러기처럼 무리지어 날자”, 《연합뉴스》, 2014. 11. 11.

22 Erica Strecker Downs and Phillip C. Saunders, 1998/99,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China and the Diaoyu Island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3, p. 117.

23 Jessica Chen Weiss, 2013, “Hearing on China’s Maritime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pril, www.uscc.gov/sites/default/files/Weiss%20Testimony,%20April%204%202013.pdf. (검색일: 2015. 3. 5)

24 김재철, 2012,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

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5쪽.

25 김주환, 2012, 『미국과 중국의 긴장된 협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쪽; Yang Gyu Kim, 2011, “Lost in Translation? The Clash of Core Interests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EAI US-China Relations Briefing*, No.1, July 22, 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1112118474021.pdf. (검색일: 2014. 4. 17)

26 Michael D. Swaine,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34, February 22, 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article/67966. (검색일: 2014. 4. 17)

27 Carlyle Thayer, 2011, “The South China Sea: China’s Indisputable Sovereignty Vs. America’s ‘National Interest,’” *CHINA-US Focus*, June 23, www.chinafocus.com/peace-security/the-south-china-sea-china. (검색일: 2015. 2. 5)

28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베트남·대만·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썬영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필리핀과 갈등 중인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연다오),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등 남중국해의 80%(대부분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의 EEZ을 포함된다)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자원 탐사·개발·어로행위를 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29 중국은 제1 도련에서 제해권 확립과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제2 도련에서는 미국 해군력의 행동을 감시하고 일차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근욱, 2013, 『동북아 전략균형 201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75~76쪽.

제1차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당시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①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basic systems)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수호, ② 주권과 영토 보존(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③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economic and social sustained development)’으로 규정했다.²⁵ 스와인(Swaine)은 “중국 당국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이익 가운데 특히 두 번째, 주권과 영토 보존 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⁶

중국 관영 매체가 ‘해양전략’이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한 2010년을 전후해 핵심이익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당국은 2010년 3월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에게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중국의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명백한 주권(indisputable sovereignty)’²⁷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로 새로운 대륙붕과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²⁸이 표기된 새로운 지도를 2009년 유엔에 제출한데 이어, 2012년에는 중국의 전지역권 지도에도 이 범위를 포함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중국 해군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제1도련선을 통과하는 등 태평양으로의 새 항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²⁹ 도련선 돌파 횟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과 2009년 각각 2번, 2010년 4번, 2011년 5번, 2012년 11번에 달하고 있다.³⁰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해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의 남

중국해 장악은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고유의 권리를 되찾는 의미가 있으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은 남중국해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받았으며, 당국이 남중국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산당은 국내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중국 내 일부 강경파들은 “중국의 이익이란 영토와 바다, 영공을 넘어서는 것으로 중국의 유조선이 지나다니는 공해와 우주공간 등이 중국의 국익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 국익이 확장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중국군의 임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중국군의 역사적인 새 임무라는 것은 중국의 국경을 수호해야 함은 물론 ‘국익의 경계(boundaries of national interests)’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3) 경제적 가치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석유 등의 자원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 이르는 항로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원유 운송의 1/3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이 가운데 15% 가량이 동중국해를 지나 동북아로 운송되고 있다. 전 세계 천연가스(LNG)도 절반가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³³ 이 때문에 중국은 동·남중국해를 자국 경제발전에 가장 필요한 해상 운송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펑광첸(彭光謙)은 “중국이 대양 해군으로 진출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교역에 필요한 해상 운송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⁴

문제는 자원 운송로가 중국에게 단순한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의 지속여부(longev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지속해야만 공산당

의 정통성과 국내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평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제 원유시장에서 급작스러운 시장규칙 개정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부족 및 가격 인상 여부다. 둘째, 페르시아만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불안정한 석유 공급지에서 중국으로 운송할 유조선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양안 사태 등처럼 일본과 미국이 중국의 해상 운송로를 봉쇄할 때다. 중국이 남중국해나 인도양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처럼 현상유지를 해야만 중국 공산당이 존속된다.³⁵ 중국 지도부는 적대적인 세력이 해상 운송로를 봉쇄하거나 말라카해협 같은 전략 지역을 봉쇄해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III.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

1. 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중국의 제해권 확충, 이른바 ‘원해방어전략(distant sea defense)’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는 2000년대 들어 정치·경제적 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데 따른 것이었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해권 확충을 위한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1988년 4월 당시에는 광둥성의 하이난구였던 하이난섬³⁶을 22번째 성으로 승격시켜 남사군도를 담당 범위에 편입시킨 데 이어, 1992년 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중국의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약칭 영해법)’을 제정해 정식으로 조어도를 포함해 서사 및 남사군도에 대한 영해 주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35 Benjamin William Moles, 2012,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 Cause for Concern or Patriot Games?”, *E-INTERNATIONAL RELATION STUDY*, Aug 18. www.e-ir.info/2012/08/18/chinese-nationalism-and-foreignpolicy-a-cause-for-concern-or-patriot-games. (검색일: 2014. 12. 18)

36 하이난섬에는 하이커우(海口), 양푸(洋浦), 바수오(八所), 산야(三亚: 이곳에는 진(晉)급 잠수함기지가 있음) 등 4곳에 중국 해군기지가 있다. 중국이 이곳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남사군도에서 약 2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유사시 중국 군함들이 1,930km 떨어진 말라카해협의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어 인도양에 대한 제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rsh V. Pant, 2011, *China's Naval Expansion in the Indian Ocean and India-China Rivalry*, www.JapanFocus.org. (검색일: 2014. 12. 24)

30 Jun Osawa, 2014, “China’s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 Great Wall in the Sky?” 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12/17-china-air-defense-identification-zone-osawa. (검색일: 2014. 2. 11)

31 “中 해양굴기 최전선 남중국해”, 《서울신문》, 2014. 5. 20.

32 Willy Lam, 2010. (검색일: 2014. 12. 22)

3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February 7, 2013. www.eia.gov/countries/regions-topics.cfm?fips=scs. (검색일: 2015. 2. 6)

34 김주환, 2013,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인도양 진출전략』, 『안보학저널』 제1권 1호, 숙명안보학연구소, 126~127쪽.

1994년 'UN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자 자국 내 해상 영토 관련 법령을 정비한데 이어 1996년 5월 협약을 비준했다.³⁷ 2002년 11월 제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경제건설과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경제대국 발전전략과 해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³⁸했고, 2007년 10월 제17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해양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이난다오에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싼사(三沙)시'³⁹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가해양국 확대·개편하고(2008), 외교부 산하에 육지와 해양 경계문제를 전담하는 국경·해양사무국을 신설

(2009)했다. 특히 2010년 3월에는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발효해 남중국해에 대한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경제 발전, 그리고 해양권익을 확고히 보호하면서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양강국에 대한 의지와 선언은 국방 현대화 계획 부분에서 해·공군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해양자원, 경제, 이를 위한 국가조직,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통한 안보보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그뿐만 아니라, 하이난다오 산야 기지에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한 제4함대 사령부를 신설했다.⁴¹ 특히 하이난다오의 야롱만(亞龍灣, Yalong Bay)은 미 해군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더 밀어낸 뒤 중국 근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충하는 데 꼭 필요한 중국의 전략 지역으로 주목받는 곳이다.⁴²

2013년 12월 8일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것도 분쟁 도서인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야코해협'을 통제하여 제2도련

외곽,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관문을 확보하는 '원해진출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양전략은 합정이 해안선을 정기적으로 순시하는 '연안방어전략(offshore defense strategy)'이 고작이었다. 이 전략에 안주했던 이유는 200해리(EEZ) 내에서의 작전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5~1996년 양안 사태는 중국의 연안방어 전략이 '근해(近海: near seas) 적극방어전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본 중국 지도자들은 통일을 이루는 일이나, 전반적인 안보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가까이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⁴⁴ 양안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된 것이며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⁴⁵

2. 제해권 확충의 의미: 중국식 '마레 노스트룸'

전통적으로 중국의 안보전략은 영토 보존과 정권 안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륙지역이 아닌 해양으로 확장·진출하려는 것을 불필요한 시도로 여겼다. 과거 중국이 내륙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볼 때 중국은 광대한 내륙의 영토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주변부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중심지역을 지키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⁴⁶

이와 같은 전통적 안보전략은 중국 내 육지 환경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 자원문제다. 지난

37 이학영, 2012, 「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소연구』 제36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54~55쪽.

38 “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全面建设小康社会, 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 《中國共產黨新聞》,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9/65444/4429125.html>. (검색일: 2014. 12. 17).

39 싼사시는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에서 340km 떨어진 시사(西沙군도의 용싱다오(永興島)에 들어섰다. 실제 토지 면적은 난사(南沙)·시사·중사(中沙)군도를 모두 합해도 13km²에 불과하지만 담당 범위는 남중국해 일대 200만km²로 중국 내륙 면적의 1/4에 달한다. “중국, 남중국해 공권력 강화 법제화”, 《연합뉴스》, 2012. 11. 29.

40 이지용, 2014,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96쪽.

41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산둥성 칭다오시에 북해함대, 저장성 닝파시에 동해함대, 광둥성 주장시에 남해함대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42 Geoff Dyer, 2014, “US v China: is this the new cold war?”, *FT Magazine*, February 20. www.ft.com/intl/cms/s/2/78920b2e-99ba-11e3-91cd-00144feab7dehtml#axzz36GOD8x35. (검색일: 2014. 12. 18)

43 Bryce White, 2013, “Washington’s ‘Asian Pivot’ and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US-China Power Play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Research*, December 21. <http://www.globalresearch.ca/washingtons-asian-pivot-and-chains-air-defense-identification-zone-us-chain-power-play-in-the-south-china-sea/5362329>. (검색일: 2014. 12. 18)

44 Bernard D. Cole, 2008,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energy security,” *China-U.S. Relations Transformed: Perspective and strategic interactions* (Routledge Contemporary China Series), pp. 168~173.

45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014년 12월 19일 정례브리핑.

46 이지용, 2014, 앞의 글, 91~92쪽.

1999년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중국 육상의 50% 이상이 이용 불가능한 불모의 땅이지만, 해양자원은 부존자원의 가치도 커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해양경제가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대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동력으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셋째, 대외무역 운송로 확보 차원에서 제해권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외무역을 위한 물자 및 기타 자원의 운송은 바다 없이 불가능하다. 넷째, 중국의 군사전략 측면이다. 마오쩌둥이 강조했듯이 중국은 긴 해안선을 지닌 나라며, 역대 중국이 받은 대부분의 침략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침략을 방어하는 문제에서 해군 역량이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⁴⁷

중국은 특히 ‘굴욕의 세기(百年國恥)’를 경험하게 된 것도 바로 해양에 대한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는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났다. 중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근해방어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외부 침략세력이 우수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부 해안을 장악하고 본토에 상륙하기 이전에 근해에서 방어할 수 있는 해군력이 있어야 본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중국이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것도 치욕스러웠던 과거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중국이 근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는 보하이만(渤海灣), 서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해역이 중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보 이익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자국의 해상안보를 직접 책임지고 싶어 한다.⁵⁰ 미국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말이다.⁵¹ 지중해가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의 ‘마레 노스트룸’이었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이 해역들을 자

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⁵²

조어도도 마찬가지다. 조어도는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타이완, 중국 사이에 있어서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해놓고 있다. 조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전략적 공간(strategic space)’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전략적 공간의 확보는 제해권 확보 및 확충을 뜻한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⁵³

IV.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일본 역시 중국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은 중국은 물론 일본의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국방의 중점을 남방으로 이동하고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일

본은 이미 담당하고 있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대응능력을 증대시키고, 오키나와 등 일본 주변 해역에 대한 광역적 감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⁵⁴ 구체적으로 일본은 제일 서쪽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與那國)섬⁵⁵에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자위대원 150명 정도) 배치와 레이더 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那覇)기지에 E2C 조기경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오키나와 조어도 주변에서 중국의 영해 침입이 반복되는 현상을 근거로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조치인 셈이다.⁵⁶ 또한 초계기

47 주현희, 2012, 「중국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변화 양상과 영향요소를 중심으로」, 『해사법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41쪽.

48 이지용, 2014, 앞의 글, 91쪽.

49 Geoff Dyer, 2014, "US v China: is this the new cold war?", *FT Magazine*, February 20. www.ft.com/intl/cms/2/78920b2e-99ba-11e3-91cd-00144feab7de.htmlhttp://#axzz36G0D8x35. (검색일: 2014. 12. 16)

50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Western Pacific,"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www.rand.org. (검색일: 2014. 12. 17)

51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2011,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4, No. 2 (Spring), p. 47; 이대우, 2014,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31쪽.

52 Richard Cronin · Zachary Dubel, 2012,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Boundary Disputes, Resources, and the Future of Regional Stability," *WORKING DRAFT*, August, pp. 3~4. www.stimson.org/images/upload/research-pdfs/Mritimes_SecurityM_in_East_asia.pdf. (검색일: 2014. 12. 17)

53 Jun Osawa, 2014. (검색일: 2014. 12. 11)

54 박영준, 2014,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0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96쪽.

55 이 섬은 타이완에서 불과 100km, 조어도에서는 남쪽으로 150km에 위치해 있다.

P1 20대 구입비(3,504억 엔), 이지스함 건조비(1,680억 엔),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구입비(1,032억 엔),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 5대분 도입비(516억 엔), 상륙 돌격 장갑차 AAV7 30대분(203억 엔)을 2015년 방위예산에 반영했다.⁵⁷ 특히, 12척의 대형 순시선으로 이뤄진 '해상보안청 센카쿠 경비 전담부대'를 2015년 안에 창설하기로 했다.⁵⁸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교토산업대학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2010년 9월 7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헌법 9조라는 이데올로기로 일본을 지켜온 시대가 끝나고, 외교의 끝에 무력 충돌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했다.⁵⁹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어도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조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한 2012년 7월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조어도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오키나와 반환(1972) 이후 조어도는 일본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다.⁶⁰ 미일 양국 정부는 2014년 3월 말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 등과 관련해 무력공격 전 단계인 돌발 사태(그레이션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군·자위대 간 공조를 위한 상설 협의기관을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조어도에서 중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⁶¹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본은 중국이 자국의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발표한 지역에서의 해상활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사실 조어도를 둘러싼 해역은 중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쳐지는 곳이다. 문제는 이 해역 내에서 양국이 어떤 형태로든 충돌할

56 과거 자위대는 E2C 13기를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기지에 배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나하기지로의 전개가 일상화하고 있다. "日, 오키나와에 감시위한 조기경보기부대 운용", 《조선일보》, 2014. 4. 21.

57 "일본 방위예산 증액...센카쿠 충돌 대비한 '선택과 집중'", 《연합뉴스》, 2015. 1. 14.

58 "일본, 센카쿠 전담 경비대 연내 설립", 《연합뉴스》, 2015. 1. 14.

59 이명찬, 2012,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Vol. 3, 동북아역사재단, 66쪽.

60 박병광, 2014, 「국제질서 전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30쪽.

61 "美 국방부 부장관, 중국과 일본, 센카쿠에서 충돌하면 미국 군사대응 나설 것", 《조선일보》, 2014. 10. 2. 그런데, 실제 중일 간 군사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미국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조약국은 일본국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대해 어느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아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경우, 자국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자동적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승인 하에 조건부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조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반드시 미국의 의무적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명찬,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제5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86쪽.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혹은 실무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⁶²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는 "냉전시기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 소련과 독자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조어도 문제를 중국 견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⁶³며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지역 내 중견 국가들로 하여금 쌍무적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역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며 관련 분쟁 역시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⁶⁴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과 경계심을 고조시키게 만들었으며, 조어도 문제가 단

순히 중일 간의 영토분쟁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요인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⁶⁵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서 미국의 미래 대아시아 전략의 방향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조어도 분쟁이 중국의 해양정책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⁶⁶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조어도 분쟁을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V. 맺음말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중양 외사공작회의(외교정책회의)'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⁶⁷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조어도 분쟁을 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제해권 확충 노력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⁶⁸

62 David C. Gompert, Hans Binnendijk, Bonny Lin, 2014, "Blinders, Blunders, and Wars: What America and China Can Learn", www.rand.org, p. 233. (검색일: 2015. 1. 20)

63 냉전 당시 미국은 일소 관계의 장애물로 북방영토를 충분히 활용했는데, 소련이 결코 양보할 리 없는 쿠나시르섬(國候島·일본명 구나시리), 이투롭섬(擇捉島·일본명 에토로후)을 넘겨받도록 주장했다. 마고사키 우케루, 2012, 167~169쪽.

64 Zhang Yun, 2014, "The Diaoyu/Senkaku Dispute in the Context of China-U.S.-Japan Trilateral Dynamics," *RSIS Working Paper*, No. 270,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March 19. http://www.rsis.edu.sg/publications/Working Papers/WP270.pdf, p. 4.

65 박병광, 2014, 앞의 글, 130쪽.

66 Zhang Yun, 2014, p. 4. (검색일: 2014. 7. 28)

67 "시진핑, 영토주권과 해양권의 강력히 수호", 《연합뉴스》, 2014. 11. 30.

이는 이 논문의 머리말에서 제기했던 중국의 해양정책이 2010년부터 매우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해양이익’이라는 표현을 201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양 굴기의 최전선이 바로 조어도와 남중국해다. 이곳이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이 조어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제1방위선이 대륙의 외연에서 500km 이상 동·남쪽으로 내려와 중국의 연안방위가 유리해지며,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진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⁶⁸ 즉,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토 범위를 대양(大洋)으로 확장하고 있다.⁷⁰

중국 자신도 동아시아 해양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조어도 등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도서(島嶼)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일 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미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⁷¹ 중국은 2013년 『국방백서』에서 “어떤 국가는 아태지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군사 수준을 확대하며, 빈번히 지역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⁷²

조어도 분쟁도 마찬가지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불

때도 조어도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바로미터다.⁷³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중국이 내세우는 미국과의 새로운 대국관계는 대등(equality)과 대결회피(avoidance of confrontation)다.⁷⁴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더욱 명확한 자기 목소리(assertiveness)를 내는 동시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생각하는 신형대국관계는 최소한 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더불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⁷⁵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조어도 분쟁을 대하는 중국의 주된 목적은 일본이 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조어도 분쟁과 관련해 시간은 중국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조어도를 자국령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1898년 ‘홍콩 일대[新界地域]’를 영국에 99년간 할양한 후 1997년에 주권을 이양받은 역사를 사례로 보면서 향후 100년에 걸쳐서라도 조어도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⁷⁶

68 Geoff Dyer, 2014, “US v China: is this the new cold war?”, *FT Magazine*, February 20. <http://www.ft.com/intl/cms/s/2/78920b2e-99ba-11e3-91cd-00144fea-b/7de.html#axzz36G0D8x35>. (검색일: 2014. 12. 11)

69 김영식·주운현, 2012, 「동북아 역내 미·중 간의 대립적 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국방정책연구』 제28권 3호, 47~48쪽.

70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3,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ember 20, pp. 270~273.

71 Min Gyo Koo, 2014,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I MPDI Working Paper*, November(www.eai.or.kr), p. 10.

72 송승중, 2015, 「Obama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중간’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4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0쪽.

73 Zhang Yun, 2014, p. 4.

74 냉전시기에도 중국은 이 개념을 앞세워 미국과 상대하려 했다.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경유해 쿠비리에 베이징을 첫 방문했던 시기가 1971년 7월 8~11일이었다. 이때 중국 측 대화 상대였던 저우언라이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등(對等)’임을 강조했다. 즉, 중미 양국이 일련의 국제문제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만 그럼에도 양국은 평등하고 상호공존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동률, 2014. 3, 「1972년 중국의 대미 데탕트 배경과 전략」,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11쪽, www.eai.or.kr.

75 신성호, 2014, 「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68쪽.

76 정철호, 2014. 2, 『정세와 정책』 통권 215호, 세종연구소, 2~5쪽.

국문 초록

중국의 부상(浮上)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중국의 해양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경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회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일본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때맞춰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해양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사용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양 굴기의 최전선이 바로 조어도와 남중국해다. 중국인들은 이곳이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받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조어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우리 바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정책은 연안 → 근해 → 원해의 순으로 제해권을 확충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11월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동·남중국해, 또는 서태평양에서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주제어>

마레 노스트룸, 해양정책, 제해권, 조어도, 신형대국관계

ABSTRACT

Expansion of Chinese Control on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Kim, Joohwan
Political editor, YTN

Maritime transpor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foreign trade as ships bring oil and other key raw materials into China and carry finished goods to overseas markets on a daily basis. As a major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y, China has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global maritime commons, which is why it has been trying to protect and facilitate its maritime interests. Official and unofficial commentators in China have reiterated the vitality of securing China's maritime interests as tensions from maritime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began growing since 2009. Just as ancient Greeks and Romans used the term Mare Nostrum, meaning "our sea" in Latin, to refer to the Mediterranean Sea, China too seems to consider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as the Mare Nostru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a Chinese fishing boat collided with two Japanese coast guard vessels at Diaoyu Islands, or the Senkaku Islands, on September 7, 2010, China detained four Japanese nationals for allegedly filming military targets and blocked its exports of rare earth metals to Japan. The incident was generally perceived at that time as a diplomatic victory in China, while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s "weak-kneed" handling of the matter was criticized. China is involved in territorial water disputes with eight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Although China has ample evidence to show its sovereignty over all the disputed islands from both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never intends to give up an indispensable part of its national interests, the other sovereignty claimants continue to reinforce their occupation and sovereignty claims in one way or another.

Keywords

maritime interests, Mare Nostrum, Diaoyu Islands, South China, sovereignty

참고문헌

김주환, 2012, 『미국과 중국의 긴장된 협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철호, 2013, 『미중 군사전략의 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왕이저우, 2014, 『중국 외교의 창조적 개입』, 차이나하우스.

마고사키 우케루,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메디치미디어.

마크 레너드, 2011,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국 최고지도부를 움직이는 지식엘리트들』, 돌베개.

헨리 키신저·박용민 譯, 2014, 『회복된 세계(A World Restored)』, 북앤피플.

강병환, 2014,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 『중소연구』 제38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기주·황병선, 2013, 「조어도(조어도)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전쟁의 단계 이론 적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성철, 2014, 「중국·일본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3월호, 세종연구소.

김송죽, 2013,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의 정치적 배경 및 효과」,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양규, 2011,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 미중관계 시리즈 2』, 동아시아연구원.

김영식·주운현, 2012, 「동북아 역내 미·중 간의 대립적 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국방정책연구』 제28권 3호, 한국국방연구원.

김우상·정운, 2013, 「비인체제 직후 유럽과 세력전이 이론」, 『동서연구』 제25권 3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재철, 2012,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재철, 2013,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과 미-중관계」, 『중소연구』 제37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주환, 2013,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인도양 진출전략」, 『안보학저널』 제1권 1호, 숙명여대 숙명안보학연구소.

김주환, 2014, 「천안함,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미중간 묵시적 협력: 천안함 사태 이후 관련국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학논단』, 경남대학교 군사연구소.

나영주, 2013, 「센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남궁영·김원규, 2013,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남창희, 2014,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국제정치논총』 제5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박건영, 2013, 「오바마의 주판(珠板)과 긴 파장(波長)?: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국제정치』 제29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박병광, 2014, 「국제질서 변화와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박병철, 201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전망」, 『평화학 연구』 제13권 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박영준, 2014,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0권 1호(봄호), 한국국방연구원.

박홍서, 2008,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1호, 한국정치학회.

서정경, 2013, 「미·중 민족주의의 특성과 양국관계: 메시아니즘과 천자관의 조우」, 『국가전략』 제19권 3호, 세종연구소.

손기섭, 2012, 「중일 해양영토 분쟁의 원인과 특성: 갈등사이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3권, 동아시아일본학회.

손병권, 2014,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아시아 공존의 상호인정과 지속되는 긴장」, 『NSP Report 70』, 동아시아연구원.

송승중, 2015, 「Obama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중간'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4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신성호, 2013,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5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신성호, 2013,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전략연구』 제59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신성호, 2014, 「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행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신옥희, 2012,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양희철·김진욱, 2014, 「조어대(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6권 3호,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우병국, 2009,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9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동원, 2011, 「21세기 중국 대외전략과 핵심이익 외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한중사회과학학회.

유희복, 2013,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와 함의」, 『국제문제연구』 제13권 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대우, 2014,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세종정책연구 2014-11』, 세종연구소.

이동률, 2012,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동률, 2014, 「1972년 중국의 대미 데탕트 배경과 전략」,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www.eai.or.kr.

이명찬, 2012,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Vol. 3,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제5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문기, 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성우, 2014, 「아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아시아로 회귀와 신형대국관계의 충돌」,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영학, 2012, 「중국 소프트파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1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장원·홍우택, 2008,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8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정남, 2013,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이익 상관자」, 「G2」와 「신형 강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5권 1호, 현대중국학회.

이지용, 2014,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1호(봄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전가림, 2009, 「양안관계 개선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정광호, 2013, 「공격과 방어의 관점에서 본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냉전기」 *Strategy21*, 제3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광호, 2013,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한국군사학논집』 제69권 2집, 육군사관학교.

정재호, 2013/2014, 「미중관계의 진화(進化): 전략적 경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제37권 4호(겨울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조운영, 2009,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東西研究』 제2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주현희, 2012, 「중국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변화 양상과 영향요소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최우선, 2013,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관계」, 『2012년 정책연구과제』, 국립외교원.

최종건, 2009, 「안보학과 구성주의: 인식론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하도형, 2011, 「중국 국방정책의 평가와 전망-방어적인가, 공세적인가?」,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동아시아연구원.

한석희, 2012,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 『EAI 프로젝트 리포트』, www.eai.or.kr.

황재호, 2014,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통권 제6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허태희, 2013,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전망과 과제」,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한국국가정보학회.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Blanchard, Jean-Marc F., 2000, "The U.S. Role in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1945 - 1971," *The China Quarterly*, Volume 161, March.

Chansoria, Monika, and Paul Benjamin Richardson, 2012, "Placing China in America's Strategic 'Pivot' to the Asia-Pacific: The Centrality of

- Halford Mackinder's Theory," *CLAWS Journal*, Summer.
- Choi, Jong Chul, 2011, "Asian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Growth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1, March 2011.
- Cole, Bernard D., 2008,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energy security," *China-U.S. Relations Transformed: Perspective and strategic interactions*, Routledge Contemporary China Series.
- Cronin, Richard · Zachary Dubel, 2012,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Boundary Disputes, Resources, and the Future of Regional Stability," *WORKING DRAFT*, August. [www.stimson.org/images/uploads/research/-pdfs/Maritime_Security_in_Esat_Asia, pdf](http://www.stimson.org/images/uploads/research/-pdfs/Maritime_Security_in_Esat_Asia.pdf).
- Gompert, David C., Hans Binnendijk. Bonny Lin, "Blinders, Blunders, and Wars: What America and China Can Learn". www.rand.org.
- Gompert, David C.,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Western Pacific," *NATIONAL DEFENSE RESERACH INSTITUTE*. www.rand.org.
- Hagstro, Linus, 2012, "'Power Shift' in East Asia? A Critical Reappraisal of Narratives on the Diaoyu/Senkaku Islands Incident in 2010,"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 Koo, Min Gyo, 2014,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I MPDI Working Paper*, November, www.eai.or.kr.
- Moles, Benjamin William, 2012,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 Cause for Concern or Patriot Games?", *E-INTERNATIONAL RELATION STUDENT*, Aug 18.
- Jun Osawa, 2013, "China's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 Great Wall in the Sky?", *The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17, <http://www.brookings.org.edu/research/opinions/2013/12/17-china-air-defense-identification-zone-osawa>.
- Swaine, Michael D., 2012, "Chinese Views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1.
- Thayer, Carlyle A., 2011, "The South China Sea: China's 'Indisputable Sovereignty' Versus America's 'National Interest'," *CHINA · US Focus*, June 23.
- Yoshihara, Toshi and James R. Holmes, 2011,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4, No. 2, Spring.
- Zhu, Tianbiao, 2001, "Nationalism and Chinese Foreign Policy," *The China Review*, Vol. 1, No. 1.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황재원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조수

I. 머리말

1965년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며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감정적 대립과 상호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교섭을 거듭했지만 회담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1965년 6월 22일 양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독도 문제가 국교가 정상화된 뒤에도 한일 간 대립의 불씨로 존재해 온 것은 결국 한일회담에서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독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교섭되었으며, 어떠한 합의가 이뤄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 한국에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한일회담의 독도 문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문제를 둘러싼 교섭 과정이 밝혀지게 되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외교문서에 입각하여 정부 간 교섭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것은 한일회담 자체가 정부 주도로 행해졌으며 그만큼 정부 간 교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국민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영토 문제며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외교문서의 분석만으로 당시의 독도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하여 특히 양국 정부가 영유권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작성 과정과 양국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그에 대한 평가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이유는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신문은 회담을 둘러싼 수많은 억측과 편견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신문의 평가가 밝혀질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II.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작성의 배경과 경과

한일회담은 연합국군 총사령부의 알선으로 1951년 10월부터 시작되었지만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다.¹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의 동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최희식, 2008, 「한일회담에서의 독도문제」, 『일본공간』 제4호, 134쪽.

〈표 1〉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 동향²

연도	한일회담	독도 문제
1951	10월 20일 예비회담 시작	
1952	2월 15일 제1차 회담시작, 3월 16일 일본, 재조선 일본인의 재산청구권을 주장	1월 18일 한국, 평화선 선언, 1월 28일 일본, 평화선에 항의, 2월 12일 한국, 일본 항의에 반박
1953	4월 15일 제2차 회담시작, 10월 6일 제3차 회담 시작, 10월 15일 구보타 망언, 10월 20일 한국, 구보타 발언 철회 요구	6월 27일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 영토표주 설치, 7월 12일 한국 경비대,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사격
1954		9월 25일 일본,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제안, 10월 28일 한국, 일본의 제안을 거절
1958	4월 15일 제4차 회담시작	
1960	10월 25일 제5차 예비회담시작, 11월 18일 한국, 청구권요강 8개항을 제시	
1961	10월 20일 제6차 회담시작	10월 20일 고사카, 문제 해결을 주장
1962	3월 12일 최덕신·고사카 회담, 10월 20일 제1차 김종필·오하라 회담, 11월 12일 제2차 김종필·오하라 회담, '김·오하라 메모'로 청구권 문제 원칙적으로 해결	3월 12일 고사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제안, 최덕신 거부, 10월 20일 오하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제안, 김종필 거부, 11월 12일 오하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제안, 김종필 제3국 조정을 제안
1964	12월 3일 제7차 회담시작	
1965	2월 20일 기본관계조약 가조인, 4월 3일 청구권, 어업,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합의요강 가조인, 6월 22일 본조인, 8월 14일 한국 국회 비준서 승인, 11월 12일 일본 중의원 비준서 승인, 12월 11일 일본 참의원 비준서 승인, 12월 18일 국교 수립	2월 20일 기본관계조약에 독도 언급 없음, 3월 24일 사토, 문제 해결 요구, 4월 3일 사토, 시이나 문제 해결을 요구, 6월 15일 이동원 문제 해결을 거부, 6월 17일 조문화 교섭 시작, 6월 22일 교환공문 작성

제6차 한일회담이 시작된 날인 1961년 10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은 1962년 3월 12~17일까지 열린 최덕신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 측이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덕신 장관은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라고 말하고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³ 이 회담 후에도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측에 재차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열린 제1차 김종필·오하라 회담에서 오하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는 한일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

2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獨島/竹島問題」の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84~129쪽을 참고.

3 한국외교문서, 1962a,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V.2 최덕신-고사카 외상 회담』, 121쪽.

으로 맞섰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2년 11월 12일에 열린 제2차 김종필·오하라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자 어업 문제 등 다른 현안을 둘러싼 교섭도 진전이 이뤄졌다. 1964년 12월부터 시작된 제7차 한일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기본관계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중에서도 기본관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관계 조문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⁵ 결국 기본관계조약은 한국 측의 주장대로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1965년 2월 20일에 가조인되었다. 기본관계조약이 가조인되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집요하게 요구했다. 3월 24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는 이동원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이 건을 국교정상화 후의 교섭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⁶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시이나 에쓰시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이동원 장관과의 회담에서 “늦어도 국교정상화를 할 때까지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의 목표를 확실히 세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⁷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와 국교정상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⁸

4 한국외교문서, 1962b, 「김종필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97쪽.

5 기본관계위원회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외교문서, 1965a, 『제7차 한일회담 개최경위, 1964~1965』, 7~27쪽을 참고.

6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a, 「李長官表敬の際の総理御発言要領」.

7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b, 「日韓外相会談第1回会合(3月24日)における椎名大臣の発言要旨」.

8 한국외교문서, 1965b,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88쪽.

9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출판 연도 불명,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竹島問題)」, 244~245쪽.

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와 국교정상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⁸

4월 3일 청구권,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 요강이 가조인되자 사토 총리는 이동원 장관에게 “한일 간에 남은 이야기는 독도 문제뿐이며, 이는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의 목표를 세우고 싶다”⁹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월 2일 시이나 외상은 이동원 장관 앞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일교섭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는 적어도 해결을 위한 목표만이라도

세워줄 필요가 있다”¹⁰라는 내용이 적힌 서간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는 외무부 장관은 고사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도 치명적이며 고도의 정치문제”며 “국민 전체를 자극해서 이 문제가 모처럼 타결을 본 모든 현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을 상대로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영토까지 팔아먹었다고 공격받을 것이다”¹¹라는 이유로 시이나 외상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동원 장관은 6월 1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독도 문제는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¹²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던 독도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조인을 단 5일 앞둔 6월 17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날부터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문화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외무 심의관과 우시로구 도라오(後宮虎郎)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참석하고, 한국 측에서는 김동조 수석대표와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이 참석한 회담에서 일본 측은 그동안 주장해오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서 한발 물러나,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분쟁에 속하며 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재위원회의 재정을 명기한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한국 측에 제시했다.¹³ 이에 대해 김동조 대표는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분쟁으로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중재위원회의 재정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제3국의 조정을 명기한 ‘교환공문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6월 17일에 이어 18일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 측은 전날 제시한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을 수정한 ‘교환공문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교환공문안’에는 독도라는 글자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주장대로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분쟁으로 명기하는 것을 포기

했으며 이것은 일본 측이 양보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측은 이 ‘교환공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⁴ 결국 양측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적인 결정은 6월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외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는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이 어떠한 경위로 조문화 교섭에 응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한국 및 일본 외교문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2월에 기본관계조약이 가조인되고 4월 3일에는 청구권,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의 합의요강이 가조인되자 한일 양국은 6월부터 가조인된 조약과 제 협정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돌입하는데, 6월 5~8일까지 열린 어업회담에서 김동조 대표는 우시바 심의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도 문제의 터부 중 하나는 독도라는 글자를 조문에 넣는 것,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다.”¹⁵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반대하고 그 어떤 조문에도 독도라는 글자를 넣는 것에 반대한 김동조 대표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대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 연하구 국장은 “독도에 대한 김대사의 의견은 본국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안일한 것으로서 두 개의 터부만으로는 부족하며 훨씬 다루기 힘든 것”이라고 말해 김동조 대표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 이동원 장관의 발언과 교섭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은 김동조 대표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두 사람의 발언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또한 본조인 일주일 전인 6월 15일 김동조 대표는 시이나 외상과 회담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회담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일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회담 내용을 전한 양국 신문 기사의 내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 신문의 경우, 《한국일보》는 6월 16일 “한일 본조인 전에 독도

10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c, 「椎名大臣より李長官宛の書簡」.

11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d, 「日韓交渉(壱州局長との会談)」. 이 문서는 당시 참사관 자격으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가 작성한 것으로 1965년 6월 11일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이 본인에게 말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12 《동아일보》, 1965. 6. 15.

13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원덕은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도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지금까지 합의된 여러 가지 타협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방향 선회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고 지적한다. 이원덕, 2012,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 제3호, 226쪽.

14 자세한 교섭 내용에 관해서는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출판 연도 불명, 앞의 글, 220~227쪽을 참조.

15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출판 연도 불명, 위의 글, 216쪽.

해결 회담 갖자 시이나 외상, 김 대사에 정식 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이나 외상은 15일 한일 본조인 전에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정식으로 한국 측에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시이나 외상이 독도 문제의 정치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김동조 대사가 독도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¹⁶

그러나 일본 신문에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 6월 15일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막바지인 일한교섭 22일 조인에 일치 시이나·김회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이나 외상과 김동조 대표의 회담 내용을 전한 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양국 간에 비공식적 의견교환을 시작하여 시이나·이 장관 회담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18일을 목표로 교섭을 서둘러, 일한 각 현안 토의 일제히 열기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대 현안은 다케시마 문제지만 한두 가지 해결안을 미리 준비하여 시이나·이 회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지를 검토하는 정도로 교섭에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6월 16일 “다케시마 문제 일한절충 무대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겨진 최대 현안인 다케시마 문제가 일한절충의 무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즉 세 신문 모두 김동조 대표와 시이나 외상의 회담을 계기로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교섭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던 것이다. 또한 독도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측 외교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6월 22일 모든 현안을 일괄 조인한다는 것이 일한 양국 간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본조인 일주일 전인 6월 15일 시이나 외무대신·김동조 회담에서였다.”¹⁷

앞에서 말한 바대로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네 가지 사실들을 미루어보아 6월 15일에 열린 김동조 대표와

16 《조선일보》, 1965. 6. 16; 《경향신문》, 1965. 6. 16.

17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e,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13」, 21쪽.

시이나 외상의 회담에서 양측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교섭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연하구 국장이 지적한 바대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던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김동조 대표는 비교적 유연한 자세로 독도에 대한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시이나 외상이 김동조 대표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정식으로 제안한 6월 15일 이후 일본 신문에 교섭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김동조·시이나 회담 이틀 뒤인 6월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전처럼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같은 날 일본 정부가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제시하자마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온 ‘교환공문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6월 15일 김동조·시이나 회담에서 김동조 대표는 본조인 전까지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이나 외상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틀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17일부터 교섭에 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6월 22일에 열린 외상회담 결과,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외상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한 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이 분쟁 해결에 관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사토 총리는 조인식이 열린 6월 22일의 일기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케시마 문제는 마지막까지 난관, 실익 없음.”¹⁸ 특

히 ‘실익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볼 때,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의 목표를 세우고 싶다”고 말해 왔던 사

18 佐藤栄作, 1998, 「佐藤栄作日記 第二卷」, 朝日新聞社, 288쪽.

〈표 2〉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작성

일자	세부 사항	일본 정부 안	한국 정부 안
6월 17일	문서명 독도 표기 해결방법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 있음 중재위원회의 재정	교환공문안 없음 합의하는 제3국의 조정
6월 18일	문서명 독도 표기 해결방법	교환공문안 없음 중재위원회의 재정	
6월 21일	문서명 독도 표기 해결방법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부속교환공문 없음 합의하는 중재 혹은 조정	교환공문안 없음 합의하는 조정
6월 22일	문서명 독도 표기 해결방법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없음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	

토 총리로서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양국의 합의 사항이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III.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견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내용을 보면, 양국 간의 분쟁 해결 방법은 명기되어 있지만 독도라는 글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 양국 정부는 양측이 합의한 교환공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합의 사항에는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교섭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양국 간의 분쟁에는 독도 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65년 8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하라 가쿠(野原覚) 사회당 의원이 "조약, 협정 그 어디에도 다케시마라는 글자가 없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시이나 외상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직접 언급하면서 "교환공문은 다케시마 문제를 포함해서 그 처리 방법을 타결한 것이"며 "일한 간 미해결의 현안이라고 하면 다케시마 문제뿐이며 공문에서도 다케시마 문제를 제외한다고 쓰여 있지 않는 이상, 분쟁이 다케시마 문제라는 것

은 명확하다"19고 대답했다. 8월 5일에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시이나 외상은 "다케시마 문제는 일한 간의 중대한 분쟁이다"라고 말하고 "공문에서 말하는 분쟁이 다케시마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20라고 주장했다. 시이나 외상은 8월 6일에는 "다케시마 문제는 일한 간에 존재하는 미해결 분쟁 문제"며 "이 문제는 우선 양국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21고 했으며 8월 9일에는 "다케시마 이외에 해결해야만 하는 분쟁은 없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련한 일본 측의 교환공문 해석은 정확하다"22라고 말하고 8월 10일에는 "다케시마는 양국 간의 분쟁이다.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23고 못 박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며 더욱이 교환공문에도 독도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양국 간의 분쟁과 독도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동원 장관은 본조인 이틀 뒤인 6월 24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시종일관한 것이다. 명백히 외상회의의 의제로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계도 없다"24고 밝혔다. 그리고 8월 3일에 열린 한일 간 조약과 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며 영유권 시비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관철시켰다"25고 주장했다. 8월 5일에는 민주공화당의 변종봉 위원이 "앞으로 독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에 대해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영유권을 소유한 까닭에 앞으로 한일회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질이 없을 것이

19 『제49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회의록』 2호, 1965. 8. 4.

20 『제49회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회의록』 2호, 1965. 8. 5.

21 『제49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회의록』 4호, 1965. 8. 6.

22 『제49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회의록』 2호, 1965. 8. 9.

23 『제49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회의록』 3호, 1965. 8. 10.

24 《동아일보》, 1965. 6. 25.

25 『제52회 국회 한일간 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3호, 1965. 8. 3.

다”²⁶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이 “시이나 외상은 일본 국회에서 한국하고 독도 문제를 앞으로 타협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국 외무부 장관은 독도 문제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말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으면서 “독도 문제는 이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있다”라고 추궁하자 이에 대해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하고는 관계없다”²⁷고 단언했다. 이동원 장관은 8월 13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한일기본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것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관철시켰다”²⁸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국의 주장이 다른 점에 대해 사토 총리는 9월 26일에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이번 조약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²⁹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동원 장관은 9월 27일, “일본 국내 정치 문제이므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³⁰고 일축했다. 다음 날인 9월 28일에는 문덕주 외무부 차관이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교섭에 응할 생각이 없다”, “독도는 한국 영토며 한국인이 보호하고 있다. 사토 수상은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내용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³¹는 논평을 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견해차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8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의 공동 제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

26 『제52회 국회 한일간 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5호, 1965. 8. 5.

27 『제52회 국회 한일간 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9호, 1965. 8. 10.

28 『제52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11호, 1965. 8. 13.

29 《마이니치신문》, 1965. 9. 27.

30 《조선일보》, 1965. 9. 28.

31 《요미우리신문》, 1965. 9. 29.

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³²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8월 30일 외교통상부 공식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³³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후 독도 문제의 해결에 일관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다.

IV.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한 평가

1. 신문 기사 수

이 장에서는 당시 한국과 일본 신문이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담 막바지에 일본 측이 독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6월 17일부터 ‘분쟁 해결에

32 《아사히신문》, 2012. 8. 22.

33 《조선일보》, 2012. 8. 31.

〈표 3〉 독도 문제 관련 신문 기사 수 (1965년 6월 17~23일)

신문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합계
아사히신문	3	4	3	2	2	6	10	30
마이니치신문	3	3	3	1	4	4	7	25
요미우리신문	3	1	5	3	3	5	6	26
산케이신문	2	0	3	1	3	4	11	24
합계	11	8	14	7	12	19	34	105
조선일보	3	1	2	3	0	4	1	14
동아일보	0	0	5	1	1	4	1	12
경향신문	0	1	1	0	2	1	2	7
한국일보	2	3	1	2	0	1	1	10
합계	5	5	9	6	3	10	5	43

관한 교환공문'이 작성된 다음 날인 6월 23일까지 양국 신문의 독도 문제 관련 기사 수를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신문은 당시의 발행 부수를 고려해서 전국지로 한정했다.

<표 3>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양국 신문의 독도 문제 관련 기사는 합계 148건이며, 일본 신문이 105건으로 한국 신문 43건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많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작성된 다음 날인 6월 23일의 기사 수를 보면 일본 신문이 34건으로 한국 신문의 5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당시 양국 신문의 발행 부수와 지면 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의 수만으로 어떠한 결론을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표 3>의 결과는 한일회담 막바지에 일본 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독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 신문은 독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2. 신문 논조

1)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조

6월 17~22일까지 일본 신문의 논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을 비판적으로 논한 신문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독도 문제를 양국의 분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를 문제 삼았다. 6월 16일 "일본과 한국이 대립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최종적인 귀속을 조급하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³⁴라고 한 《아사히신문》은 6월 22일에는 "다케시마라는 글자를 빼고 양국 간의 미해결 현안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양보하고, 다케시마 문제만을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측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이상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

34 《아사히신문》, 1965. 6. 16.

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³⁵고 비판했다. 6월 20일 "양국 간의 통상적인 외교 절충을 통한 해결로 합의한 것, 더욱이 그 절충에 특정 기관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³⁶라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마이니치신문》은 6월 22일 "제3국 조정 방법은 일본 측이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맞서 한국 측이 주장한 것이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기하는 대신에 중재재판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양보했다"³⁷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과는 대조적으로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산케이신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국교가 정상화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6월 17일 "한국 측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예측하기 힘들다"³⁸고 말한 《요미우리신문》은 6월 22일이 되자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준서를 교환하고 국교가 정상화된 뒤, 국내 정세를 보면서 논의하게 될 것"³⁹이라고 논평했다. 6월 19일 "다케시마 문제는 국교정상화 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는 것으로 점차 굳어지고 있다"⁴⁰라고 한 《산케이신문》은 6월 22일 "양국의 외상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했다"며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생각해온 바대로 일반적인 분쟁은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제3국 조정, 알선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식으로 될 것 같다"⁴¹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6월 23일

35 《아사히신문》, 1965. 6. 22.

36 《마이니치신문》, 1965. 6. 20.

37 《마이니치신문》, 1965. 6. 22.

38 《요미우리신문》, 1965. 6. 17.

39 《요미우리신문》, 1965. 6. 22.

40 《산케이신문》, 1965. 6. 19.

41 《산케이신문》, 1965. 6. 22.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내용이 공개되자 두 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신문의 기사 수는 일본 신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한국 신문도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6월 18일 "독도 문제에 대해 계속 토의한다는 취지를 양국 외상의 공동성명에 밝히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다"⁴²고 한 《조선일보》는 6월 20일 "일본이 정식 조인 전에 독도 문제를 꺼내어 조인 후에라도 교섭 과제로 양해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모처럼 맺어진 양국의 앞날에 새로운 분규로 나타날 불씨가 될 지도 모른다"⁴³고 말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향신문》은 6월 22일 "독도 문제는 이번에 정식 조인될 조약 및 협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양 외상은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국제관례에 따라 분쟁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적용시켜 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재론될 근거를 만들어놓았다"⁴⁴라며 석연치 않은 감정을 나타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두 외상은 협정문 안에서 독도 문제의 직접 언급을 피하고 일반적인 분규 해결 문제로 포함시켰다"⁴⁵라고 했으며 《한국일보》는 "양국 간의 미해결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투로 독도 문제라고 박지 않고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 완곡하게 표현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⁴⁶라고 예측했다. 일본 정부가 회담 막바지에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시점에서 한국 신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조 내지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⁴² 《조선일보》, 1965. 6. 18.

2)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한 논조

6월 23일 일본 신문의 보도를 통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이날 모든 일본 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

⁴³ 《조선일보》, 1965. 6. 20.

⁴⁴ 《경향신문》, 1965. 6. 22.

⁴⁵ 《동아일보》, 1965. 6. 22.

⁴⁶ 《한국일보》, 1965. 6. 22.

〈표 4〉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관한 기사 제목

신문	기사 제목
아사히신문	다케시마 등 분쟁처리 일한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
요미우리신문	조인된 문서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다케시마 등)
산케이신문	일한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다케시마 문제

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6월 22일 외사회담 뒤, 양국 정부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그리고 《산케이신문》 모두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이며 이 문제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개 신문사 모두가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독도 문제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직접적으로 관련짓지는 않았지만 6월 19일 시점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한 교환공문이 작성된다"⁴⁷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보면 《마이니치신문》 역시 다른 신문 3사와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이며 그 해결 방법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명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일본 신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 즉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린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한 일본 신문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각 신문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중대한 양보라고 비판했으며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은 논평에서 "다케시마 문제도 해결된 뒤에 일한 정식 조인이라면 말이 되지

⁴⁷ 《마이니치신문》, 1965. 6. 19.

만 조인이 먼저고 다케시마의 해결은 보류됐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대로 은근슬쩍 한국군의 상주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다케시마는 일한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듯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가면서 타협을 서둘렀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⁴⁸고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금까지 국회 심의에서 다케시마는 다른 현안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에 대해 “양보 정도가 아니라 굴복이다”⁴⁹라고 비꼬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케시마 문제는 실제로 반영구적으로 보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다케시마의 영토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면서 일한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는가”⁵⁰라며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자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조정까지 갈 일도 없다. 따라서 다케시마 문제는 사실상 한국이 실력 점거를 계속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의 교섭 태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다 일방적으로 일본이 양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일본 국민의 국민감정도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⁵¹라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신문은 독도 문제가 양국 간의 분쟁이라는 인식하에 이 문제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과 관련지으면서도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과연 일본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

48 《아사히신문》, 1965. 6. 23.
49 《요미우리신문》, 1965. 6. 23.
50 《마이니치신문》, 1965. 6. 23.
51 《산케이신문》, 1965. 6. 23.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65년 6월 23일자 일본의 《주گو쿠신문(中國新聞)》 기사를 보기로 한다. 이 기사는 《주گو쿠신문》이 시이나 외상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²

질문: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답: 양보라고들 말하지만 쌍방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질문: 다케시마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은 점이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대답: 확실하게 해놓지 않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두었으니 좀 더 진전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내버려둔 건 아니니까 말이다.

이와 같이 시이나 외상은 일본 측만이 양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음으로는 한국 신문의 논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동아일보》의 논조부터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6월 23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모든 협정의 내용과 조인식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에 극히 흐리멍덩한 합

52 《주گو쿠신문》, 1965. 6. 23.

〈표 5〉 독도 문제에 대한 신문의 입장(1965년 6월 23일)

신문	교환공문 언급	구체적 합의내용	합의 사항 평가	재교섭 가능성
아사히신문	○	일단 보류	일본의 양보	회의적
요미우리신문	○	일단 보류	일본의 굴욕	회의적
마이니치신문	○	일단 보류	영토권의 포기	회의적
산케이신문	○	일단 보류	일본의 양보	회의적
조선일보	○	일단 보류	언급 없음	묵인
동아일보	×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경향신문	×	조약, 협정에서 제외	언급 없음	묵인
한국일보	×	조약, 협정에서 제외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의⁵³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외상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만 했을 뿐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한국일보》는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외상 사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독도 문제는 이번에 조인된 조약 협정에서 제외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⁵⁴고 말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이번에 조인된 조약과 협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더욱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한국일보》와 마찬가지로 “독도 귀속 문제는 이번에 조인되는 조약과 협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한일 양국은 앞으로 국제관계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다시 말썽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놓았다”⁵⁵라며 앞으로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한국 신문 중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신문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교환공문으로 결착 한일외상, 독도 문제 처리에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직접 언급하면서 “독도란 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 분쟁 해결 방법에 의한 교환공문으로 할 것에 합의, 사실상 독도 문제 해결에 일단 끝장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독도 문제의 처리는 교환공문이란 타이틀로 일단 끝장을 맺었다”⁵⁶라며 독도 문제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6월 23일 한국 신문의 독도 문제 관련 기사의 논조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신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결국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

53 《동아일보》, 1965. 6. 23.
 54 《한국일보》, 1965. 6. 23.
 55 《경향신문》, 1965. 6. 23.
 56 《조선일보》, 1965. 6. 23.

질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신문이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V. 맺음말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독도 문제, 더 나아가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해보면 독도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독도 문제에 주목하여 그중에서도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 과정과 그에 대한 양국의 입장 그리고 신문의 논조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독도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양국의 의견은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며 이 문제는 국교정상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양측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타협과 양보의 산물인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결과적으로 일본 내 일부 신문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신문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각 신문사들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 전략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을 상기시켜보면, 일본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의 실질적인 영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작성 배경과 경위, 그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로써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일회담도 마무리되었다.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회담 막바지까지 대립했다. 결국 양국 정부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다. 하지만 국교가 정상화되자 이 교환공문을 놓고 양국 간에 커다란 견해의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며, 양국 간에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한 양국 신문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본의 신문들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한 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신문들은 독도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측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독도 문제와 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 문제, 한일회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신문 논조

ABSTRACT

Dokdo and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wang, Jaewon

Research associate, Faculty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Waseda University

On June 22, 1965,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normalized by way of concluding the Basic Relations Treaty. Although efforts were made to resolve the issue of Dokdo along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was not completely resolved. In the end, Korea and Japan agreed to resume discussions on the Dokdo issue after normalization and signed off on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ce normalization was achieved, however, it became known that there had been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ir respective views of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that Dokdo was a territorial issue yet to be resolved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at Dokdo has traditionally been Korean territory and hence took the position that it did not qualify as a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Editorial opinions in newspapers from the two nations also stood in sharp contrast to each other in viewing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wspapers in Japan raised their voice to criticiz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shelving the Dokdo issue while trying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ittle mentioned on the matter in Korean newspapers and no clear position was expressed either.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in August 2012, Japan's request has been to resolve the territorial problem by revising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u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make it necessary to look into the whole story behind the negotiations for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well as how it was assessed at the time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wo nations' positions in regard to the Dokdo issue.

Keywords

Dokdo issu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wspapers

참고문헌

- 한국외교문서, 1962a,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V.2 최덕신-고사카 외상회담』.
- 한국외교문서, 1962b, 『김종필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 한국외교문서, 1965a, 『제7차 한일회담 개최경위, 1964~1965』.
- 한국외교문서, 1965b,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 이원덕, 2012,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 Vol. 3.
- 최희식, 2008, 「한일회담에서의 독도문제」, 『일본공간』 제4호.
- 현대송, 2008, 「독도 문제의 쟁점, 그 기원과 현황」,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独島/竹島問題」の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a, 「李長官表敬の際の総理御発言要領」.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b, 「日韓外相会談第1回会合(3月24日)における椎名大臣の発言要旨」.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c, 「椎名大臣より李長官宛の書簡」.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d, 「日韓交渉(壱州局長との会談)」.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1965e,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13」.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출판연도불명,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竹島問題)」.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베트남·중국 관계와 조선·중국 관계의 변화, 그리고 두 관계의 상호작용¹

신승복 하노이 사범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²
최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수료

대부분 중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그 후 한동안 독립을 유지하다 명의 침략으로 다시 국권을 상실하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1406~1418). 그 외에도 몽골-원과 청 등 중국과 북방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평화 시기에는 조공과 책봉 관계를 지속해 왔다. 조선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 혹은 북방 민족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고, 조공과 책봉이라는 중화질서 속에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만큼이나, 양국이 중국의 조공·책봉 질서에서 지니는 비중은 컸다(노대환, 2010). 『청회전(靑會典)』에는 조선, 유구, 베트남의 순으로 조공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은 연간 4번, 유구는 연간 2번, 베트남은 2년에 한 번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노대환, 2010 재인용).

그러나 19세기 후반기에 중국과 베트남, 조선이 서방 국가들과 접촉하면서 기존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프랑스는 좀 더 손쉽게 중국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였다.⁴ 프랑스는 1858년 다낭을 공격했고 남부를 점령한 후에는 홍강을 통해 운남으로 도달할 목적으로 북부를 공략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은 일본과의 불평등한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조선에 어떠한 실력행사도 하지 못하였고 조공과 책봉 관계를 통한 중화질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번국의 지주와 독립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종주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⁵ 그러나 중국은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결국 상실하고 말았다.

본 연구에서 다룰 시기는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의

1. 머리말

이 연구는 베트남과 조선, 이 두 나라와 중국의 관계, 특히 186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베트남과 조선은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대륙 세력으로 대표되는 중국과 인접한 탓에 오랜 역사 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호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 경쟁하는 시기도 있었고 나아가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 고대 동양의 유일한 거대 제국이었던 중국은 책봉과 조공 관계를 통해 주변국가와 상하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런 시스템은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잘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주변국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침략 야욕을 품을 때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건국 후 약 1,000년(BC 179~AD 938)³ 동안

1 이 논문은 제1저자가 하노이 사범대학교에서 베트남어로 쓴 베트남 근대사 석사학위논문(2014. 10)의 일부분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2 하노이 사범대학교 역사학과(베트남 근대사 전공) 석사과정생 마치고, 대학 부속 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다. 한국 역사를 베트남 교육계에 알리기 위해 사범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진들과 한국 측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공동 역사교재 편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 베트남의 복속 시기에 대해 베트남의 옛 문헌과 현재 역사계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참고).

4 프랑스는 베트남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응징을 명목으로 침략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남부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베트남을 공략하였다(Trần Trọng Kim, 2011, 『Việt Nam sử lược』, Nxb Khoa Học Xã Hội, Tp.Hồ Chí Minh 참고).

5 조공을 바치는 경우 내속(來屬)의 의미를 가지며, 조공의 반대급부로 책봉을 받았다. 이때 책봉을 주는 나라의 속(屬)이나 번(藩)으로 불리게 된다. 조선은 스스로 명이나 청의 번국이나 속국으로 불렸지만, 조선의 정치적·영토적 주권이 없다는 뜻의 속국은 아니었다(계승현, 2012, 『16-17세기 명(明)·조선(朝鮮)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정치와 평론』 제10권). 청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였으며, '예속국'이란 의미의 근대적 개념으로서 속국과는 다른 맥락이다(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이론(藩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역사학보』 206호).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속국은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속국으로 사용하였다.

베트남 침략부터 청불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이 프랑스의 속국이 될 때까지, 조선의 경우 흥선대원군의 섭정부부터 갑신정변 직후까지다. 본 연구는 이 시기 베트남과 조선의 대중국 관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대질서가 서방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붕괴되고,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강제적 전환이 있어왔던 급변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중국과 중국의 주요 조공국인 조선, 베트남의 관계를 비교해보고 그 당시의 역학관계를 재구성 및 분석한다면 급변의 시기에 대한 더욱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 시기와 관련하여 중국, 베트남, 조선의 역사적 배경을 각각 정리해보았다. 이어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시기를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과정에 따라 베트남은 중국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중국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해옴에 따라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동시에 프랑스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베트남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였는지까지 알아보았다. 베트남에 이어 개방과 개화 시기에 따른 조선과 중국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중국의 태도와 대처, 중화 질서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조선의 대응 등을 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 시기 조선, 베트남, 중국의 관계를 한꺼번에 다룬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예: 노대환, 2010; 최희재, 2010).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두 나라의 대중국 관계를 각기 살펴면서, 각 관계가 다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해당 시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맥락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이전 연구들이 조선 혹은 청에 무게를 두고 서술된 것과 비교해 본 연구는 베트남어 자료를 다수 참고하여 이 시기에 대한 베트남의 시각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다.

II. 중국, 베트남, 조선의 역사적 배경⁶

19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각국은 오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며 이러한 평화 상태는 서양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동요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체계는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 주도의 국제질서 체계에 급속하게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1. 중국의 역사적 배경

청조는 4대(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에 걸쳐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건륭제 통치 말기, 백련교도와 천지회들의 활동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력이 점점 약해졌고, 19세기에 이르러 서방국가들의 침략까지 시작되었다.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국내의 은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편을 청에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은 국내 아편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과 영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영국과 난징[南京]조약(1842)을 체결하여 홍콩을 할양하고, 영국에 통상 개방 및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1856년에는 애로(Arrow)호 사건을 빌미로 영국, 프랑스 등의 서양 국가들이 연합하여 다시 중국을 침략하였고, 결국 1858년에 톈진[天津], 1860년에 베이징[北京]을 점령하였다. 이에 중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베이징조약을(1860) 체결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했다. 청은 러시아와도 1858년과 1860년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 러시아는 동아시아로 확장할 기회를 엿보며 연해주

(沿海州)까지 세력을 뻗어왔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조약으로 중화 질서 속에서 존재했던 조공·책봉을 통한 국제관계는 서서히 근대 국제법에 따른 국가 사이의 대등한 조약을 통한 관계로 대체되기 시작했다.⁷ 이와 함께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패주로서의 지

6 이 시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재연, 2010, 『100년 전 한국사』, 살림; 이윤섭, 2009, 『다시 쓰는 한국 근대사』, 평단 참고.

7 이윤섭, 2009, 위의 책, 53쪽.

위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서양 상품이 대량으로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농촌의 자급자족 자연경제는 파괴되었다. 청이 열강들에게 치러야 할 손해배상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이 때문에 사회모순이 더욱 표면화되고, 중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1851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인 태평천국의 난이었다. 태평천국의 난은 14년 동안이나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청에 대항하였지만, 청은 서양 열강과 연합하여 태평천국을 대대적으로 진압하였다. 위기에 빠진 청은 관료 주도로 양무운동을 일으킨다. 1861년 청은 6부 외에 양무만을 전담하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설치하여 조약관계를 맺은 서양 각국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아시아 각국과의 업무는 종래대로 예부가 담당케 했다. 하지만 양무운동(洋務運動)의 한계는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내외외환으로 충격을 받은 청은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운동을 벌여 해군을 창설하였고, 군수공장, 방직공장 등 현대적 기업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중국의 전통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⁸ 즉 양무운동은 서양 국가들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운동이었지, 근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난징조약을 비롯한 중국과 서방 국가의 일련의 조약은 청의 무력 열세와 함께 국제외교 관행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이나마 청은 서구의 조약체계에 기초한 대외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⁹

이 와중에도 청은 동아시아 각국들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화이사상에 기초한 조공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청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조공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은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1871년에 중일통상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872년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유

8 안병우 외, 2011,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178쪽.

9 1864년 청은 미국인 마틴(William A. P. Martin)이 한자로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출간하여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46쪽).

구(현 오키나와[沖繩])왕국을 일본에 복속시키고, 이어 1874년에는 대만을 침공하였다. 일본은 1876년, 청이 신장(新疆)을 두고 러시아와 긴장관계에 있는 틈을 이용해 조선과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어 1879년에 일본은 유구를 정식으로 일본에 병합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개편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중화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통한 국제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¹⁰

2.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

이 시기 베트남은 마지막 왕조인 응우웬 왕조(1802~1945)가 통치하고 있었다. 응우웬 왕조를 열었던 응우웬 아이잉(Nguyễn Ánh, 자롱 황제)은 건국과정에서 자신이 빚을 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¹¹ 자롱(Gia Long) 황제는 문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의 통치체도를 도입하였고 남부 베트남을 기반으로 한 중국 화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에 대해서는 1855년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주권을 상실할 때까지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응우웬 왕조의 서방 국가에 대한 인식은 국사유편(國史遺編)을 통해 알 수 있다. “밍망 황제의 덕과 위세 앞에서……. 청조나 타이가 두려워하는 서양의 오랑개[蠻夷]인 영국과 프랑스 등도 모두 와서 신복(臣服)했다.”¹² 이 같은 화이사상에 기초한 서방 국가에 대한 배외사상은 영국과 미국 등이 요구한 통상에 대한 거절과 천주교에 대한 금령과 박해로 나타났다.

한편 응우웬 왕조는 오랜 남북 분열을 종식시키고 현재의 영토에 해당하는 국토를 이룩하였지만, 곳곳에 반란과 소요가 많았다. 자롱 황제가 제거하였던 레반쥬엣(Lê Văn Duyệt)의 양아들인 레반코이(Lê Văn Khôi)는 1833년 자롱 황제를 이은 밍망(Minh Mạng) 황제 때에 베트남 남부에서 천주교도들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봉기는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 곳곳에서

10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위의 책, 59쪽 참조.

11 프랑스 신부와 중국계 상인들의 지원으로 응우웬 아이잉은 남부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아간 떠이선 농민 정권에 복수한 후, 북진하여 전국을 통일하며 응우웬 왕조를 건설했다(Yoshiharu Tsuboi, 2011: 58-59 참조).

12 유인선, 2012, 앞의 책, 279쪽에서 재인용.

일어난 반란들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응우웬 왕조에 대항하여 레 왕조의 복위를 꾀하는 반란도 뒤따랐다. 이때부터 후에(Huế, 응우웬 왕조의 도성) 조정과 왕실은 한층 유생과 문신들에 의존하면서 조정 내에 천주교도들을 축출하고 서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1848년에 뜨득(Tự Đức) 황제는 즉위 후 천주교에 대한 금령을 내렸다. 당시의 천주교에 대한 금령은 홍바오(Hồng Báo)의 반란과도 연관이 있다. 뜨득 황제와의 보위 승계 경쟁에서 밀려난 홍바오는 반란의 음모를 꾸미고 비밀리에 천주교도들로 하여금 프랑스 신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였다. 이 반란은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황실은 천주교도들이 홍바오와 함께 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여 천주교에 대한 금령을 내리고 프랑스 신부들을 잡아들였다. 1851년에는 더 엄한 금령을 내려 외국인들과의 상거래를 금지하고 포교활동 또한 금함은 물론, 외국 선교사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이렇게 응우웬 왕조가 쇠국정책을 유지하게 된 것은 내부 반란에 프랑스 신부들과 천주교도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¹³

프랑스는 아편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에 영국이 중국 전 지역을 차지할 것을 염려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이룰 수 있는 전진기지가 없던 프랑스는 베트남에 와 있는 신부들을 통해 후에 조정에 접근하여 중국에 이르는 전진기지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수많은 신부들이 살해당하기만 한 것이다. 한편 파리 수도회는 천주교 박해를 이유로 무력을 이용하여 베트남 문제에 간섭하도록 프랑스 정부를 설득하였고, 나폴레옹 3세는 동아시아에 프랑스를 건설할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1858년 9월 1일, 다낭(Đà Nẵng) 공격을 시작으로 베트남을 침략하였다.¹⁴

일본의 베트남 역사 연구가인 요시하루 쓰보이(Yoshiharu Tsuboi)는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해 뜨득 황제와 홍바오 사이의 보위를 둘러싼 다툼, 천주교도들의 정치적 사건과 황족 내부 문제와의 연루, 프랑스 신부들과 천주교도들에 대한 탄압 등 뜨득 황제의 통치 초

¹³ Yoshiharu Tsuboi, 2011, *Nước Đại Nam đối diện với Pháp và Trung Hoa 1847~1885*, Nxb Tri Thức, Hà Nội 참고.

¹⁴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동기와 과정에 대한 것은 Yoshiharu Tsuboi, 2011, 위의 책과 송정남, 2010, 『베트남 역사 읽기』, 320~325, 330~341쪽 참고.

기 10년간의 베트남 내부 문제가 외부의 간섭을 초래했다고 분석하였다.¹⁵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 개척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58년에 다낭 공격 후 프랑스는 남부 메콩 델타(Mekong Delta) 유역의 자딩(Gia Định, 현 호치민)을 공격하였다. 프랑스는 1861년에는 남동부 3성을, 1867년에는 남서부 3성을 차지하였다. 1873년 제1차 하노이(Hà Nội) 공격을 감행한 프랑스는 1874년에는 남부 지역을 속국으로 삼고 외교권을 차지하는 조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1882년에 하노이를 2차로 공격하여 북부를 점령하였고, 1883년에는 황도(皇都)인 후에를 공격하여 베트남 전 국토를 차지하게 되었다(하르망 조약). 프랑스는 남끼[南圻] 혹은 코친차이나(Cochinchine)를 프랑스의 속지로 삼고, 중끼[中圻] 혹은 안남을 후에 조정의 자치권에 두며, 박끼[北圻] 혹은 톤킨(Tonkin) 각 성에 공사를 두기로 하였다. 1883년 12월부터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는 중국과의 전쟁을 벌여 승리한 후, 1885년 6월 9일 텐진 조약으로 베트남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3. 조선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반에 천주교의 확산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고 서양의 배들이 이달아 해안에 나타나자 조선 사회의 불안감도 점차 높아졌다. 영국은 1832년에 서방 국가들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845년에도 영국은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조선은 영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 교역하기 힘들고 청 황제의 동의 없이는 개별적으로 통상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846년에는 프랑스가 1839년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기 위해 전함 3대를 이끌고 왔다. 조선은 이듬해에 조공과 책봉을 근거로 청을 통해 프랑스에게 답신을 보냈다. 연해주까지 내려온 러시아 역시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이

통상을 요구할 때마다 조선은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구실로 서방과의 관계를 거절해왔다.¹⁶

¹⁵ Yoshiharu Tsuboi, 2011, 앞의 책, p. 320 참고.

흥선대원군 시절 서방 국가들의 통상 요구는 조선을 더욱 압박하였다. 1866년에는 미국의 제너럴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였고, 1868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흥선대원군 부친 묘 도굴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은 병인 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이후로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서방 국가들과의 통상거부 정책의 기치를 내걸었다. 한편 메이지(明治)유신 이후의 일본 역시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통상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에 일본이 조선을 무시하는 표현을 한 점과 외교적 관례와 부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요구를 거절하였다(1868. 12). 이에 일본은 1869년 12월, 조선에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과의 교류 문제에 답판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만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조선을 정벌하지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실시되는 동안에도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873년 고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조선만 고립될 것을 염려하였다. 고종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를 감지한 일본은 1875년, 운요호(雲揚號) 사건을 일으켰고, 1876년 정식으로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개화의 길로 들어섰고 1880년대에 들어 일본과 청의 근대화를 배우기 위해 수신사와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개화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자, 이에 대한 화이론적 세계관을 신봉하는 세력들의 반대도 극렬해졌다. 그리고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적 수탈이 심해지면서 민중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원한과 함께 개화에 대한 반대 또한 뜨거워졌다. 게다가 개화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도 일어났다. 결국 1882년에는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던 구식 군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개화운동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조선 문제에 간섭할 기회를 엿보던 청은 군대를 동원하여 개화 반대세력들을 진압하고 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

다. 이에 청에서 정치적 자주권 확보 및 근본적인 사회 제도 개혁을 부르짖던 급진개화파들은 1884년 12월

16 서방국가들의 조선에 대한 개항 요구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앞의 책, 42~43쪽 참고.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의 배신과 청의 간섭으로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조선은 청과 일본의 각축장이 되었고, 조선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한 청의 노력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상으로 이 시기의 중국과 베트남, 조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 동아시아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무기력하게 패퇴하여 영토와 이권을 서방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조공과 책봉관계를 통한 동아시아의 중화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베트남은 베트남 내부의 문제, 천주교 박해 문제, 그리고 베트남을 중국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프랑스의 야욕 등을 이유로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조선은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쇄국정책을 고수하다가 개화를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개화운동으로 인한 갈등으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III. 1860~1880년대 베트남과 중국 관계¹⁷

이 시기 베트남·중국 관계에서 주요한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베트남·중국의 관계와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후 나타난 베트남·중국의 관계다. 위의 내용을 두 시기, 곧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시기와 중국의 베트남 간섭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같은 시기 조선·중국 관계에서 주요한 내용은 조선이 서방과 일본에 개항하면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변화와 조선의 개화운동의 모순과 갈등(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속에 나타난 중국의 간섭과 관련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시기 베트남·중국, 조선·중국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 상관관계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 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Trần Trọng Kim(2011), Trịnh Nhu(2007), Yoshiharu(2011)를 참고.

1.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 과정에 나타난 베트남·중국 관계

1) 프랑스의 베트남 남기 점령 과정에 나타난 베트남·중국 관계¹⁸

1858~1885년까지 응우웬 조정은 중국에 다섯 차례에 걸쳐 축하 및 감사의 사절단을 보냈고, 그 외에 전례를 따라 조공 사절단을 다섯 차례 별도로 보냈다.¹⁹ 비록 사신의 왕래와 통상적인 조공 의식이 행해졌지만 1870년까지 베이징 조정은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해 완전히 몰랐다. 그 이유는 당시의 국내외 문제와 베트남과 청의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베트남은 청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과 자주적 의식 때문에 프랑스의 자국 침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응우웬 왕조는 청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중화라고 여겼고, 문화를 숭상하며 유교의 전통과 도리를 수호하는 나라임을 자부했다. 이런 인식은 조선의 숭명만칭 의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또한 응우웬 왕조는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천자 혹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²¹ 베트남의 청에 대한 이런 인식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제후와 상국' 관계는 정해진 의식과 외교적 통례의 형식적인 관계에만 머물렀다. 오랜 역사 동안 이어진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독립의식과 청에 대한 우월한 문화의식 때문에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문제를 청에게 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청도 다른 속국에 비해 베트남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다. "청은 명과 달리 베트남을 유구보다도 덜 중시하였다. 『명사(明史)』 외국전에는 조선·안남·일본·유구 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비해, 『청회전』의 예부(禮部) 항목과 『청사고(淸史稿)』의 속국 항목을 보면 조선·유구·월남 등의 순으로 기술하여, 청에서는 월남을 유구 다음에 놓고 있다."²²

당시 양국의 국내외 환경 역시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초기에 베트남 왕실은 까오바팻(Cao Bá Quát)의 반란 등을 진압하느라 군

18 베트남의 북부와 중부, 남부를 각각 박끼, 중끼, 남끼라 부른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배하면서 박끼를 퉁킹, 중끼를 안남, 남끼를 코친차이나라고 하였다.

19 Dương Kinh Quốc, 1999, *Việt Nam -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1858~1918)*, Nxb Giáo Dục, Hà Nội 참고.

20 베트남 역사학계는 청을 그냥 청(Thanh, 淸)이라 하지 않고 만청(Mãn Thanh, 滿淸)이라 부른다.

21 Yoshiharu Tsuboi, 2011, 앞의 책, pp. 160~161 참고.

22 유인선, 2012, 앞의 책, 268쪽.

사를 동원할 겨를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중국에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태평천국의 난(1853~1857)으로 인해 베트남의 사절단이 중국에 이르는 길이 막히자, 1856년 후에 조정에게 중국 남부가 조용해질 때까지 조공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알려왔다. 또한 프랑스의 동양 함대가 베트남 연안을 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길을 통해 사신을 보낸다 해도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²³ 따라서 국내외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도 프랑스의 베트남 남부 침략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알려지기 어려웠고, 설령 중국에 알려졌다고 해도 간섭할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간섭에 따른 실익도 없었다.

결국 청이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을 알게 된 것은 1869년 북베트남에 출몰했던 태평천국군의 잔당 토벌을 위해 군을 파견해준 것에 대해 응우웬 조정이 1870년 사절단을 보내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였다. 이때에도 베트남은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와 긴장관계에 있던 청이 직접 사절을 베트남으로 보내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²⁴

2) 프랑스의 제1차 박끼 점령 과정에서의 베트남·중국 관계

프랑스가 남끼를 완전히 점령하자, 베트남은 중국과 프랑스 두 나라 모두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베트남 역사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기회를 노리며 베트남을 공격하거나 점령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은 프랑스를 가까이하면서 청을 견제하든지, 아니면 청을 가까이 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베트남 왕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을 견제하면 박끼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²⁵

1873년 프랑스는 하노이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23 Yoshiharu Tsuboi, 2011, 앞의 책, p. 162 참고.

24 Yoshiharu Tsuboi, 2011, 앞의 책 참고.

25 Trịnh Nhu, 2007, *Mấy vấn đề lịch sử Việt Nam tái hiện và suy ngẫm*, Nxb Chính Trị Quốc Gia, Hà Nội, p. 100 참고. 이 책은 청불전쟁 전후 과정에 나타난 베트남과 프랑스·중국 사이에 일어난 비화들을 다루고 있다.

곧이어 다시 빼앗기고, 본국의 문제 등으로 박기 점령을 포기한 후 응우웬 조정과 협상하여 1874년에 갑술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2조에는 “프랑스는 안남은 모든 외부세력에 대해 완전한 독립국가며 안남 국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외부의 공격으로 안남 국왕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프랑스의 속셈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당시 청이 태평천국의 잔당 토벌을 위해 박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베트남 문제에 대해 간섭할 것을 염려하였다. 때문에 프랑스는 베트남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임을 명확하게 하여 중국이 베트남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속셈이었다. 아울러 베트남의 외교권을 프랑스에 종속시켜 혹시 생길지 모를 베트남과 중국의 협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가 청에 대한 베트남의 자주권을 인정하면 만일에 생길 수도 있는 청의 위협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1874년의 갑술조약은 청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1875년 중반에야 베트남이 아니라 프랑스를 통해 청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청은 프랑스에 보낸 서신에 “안남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제후국이였다”라고 하여 갑술조약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이 문구는 프랑스어로 “안남은 오래전에 중국의 제후국이였다”로 번역되었고, 이 서신 이후 중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프랑스는 중국이 베트남 문제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오해하였다. 당시 중국은 유구와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해 베트남 문제에 깊이 간여할 수가 없어 갑술조약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청과 프랑스는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²⁶

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베트남은 청에게 갑술조약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바라는 프랑스의 의도를 따르지도 않았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반대에도 1876년과 1880년, 청에 조공 사절단을 보냈다. 베트남이 이렇게 한 것은 프랑스와 화친하여 독립을 보장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

26 Trịnh Nhu, 2007, 앞의 책, p. 105 참고.

국에 계속 조공을 보내며 유사시에 구원을 청할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응우웬 왕조의 태도에 대하여 쩌쑹깸(Trần Trọng Kim, 2011: 473)은 “갑술조약 이후로 후에 조정은 안남은 독립국이며 어떤 나라에게도 신복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프랑스와 체결하였지만,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약을 체결하였을 뿐 뜨득 황제는 전례를 따라서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은 유사시에 중국이 도와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때 후에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프랑스가 하노이를 공격하는 틈을 타 청이 양광과 운남 등지의 군대를 보내 베트남 북부지방을 점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²⁷ 베트남에게 프랑스와 중국은 모두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는 조공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베트남의 이런 정책은 프랑스와 베트남 모두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의 베트남 남부 침략 단계에서는 응우웬 왕조에게 프랑스의 침략이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베트남 북부 침략 단계에서는 프랑스의 침략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지되었던 조공관계를 계속하여 청에 기대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의 베트남 문제 간섭시기에 나타난 베트남·중국 관계

1)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간섭

1874년에 체결된 갑술조약의 문제는 1880년대에 와서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외교전으로 확대되었다. 1880년 말에서 1882년 3월, 프랑스가 박기에 2차 침략할 때까지 청은 프랑스에게 베트남은 청의 제후국임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갑술조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²⁸ 중국이 베트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희재(崔熙在, 2010)는 1879년 일본

의 유구 병합 후 청국 내에서 조공국 특별히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프랑스에게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27 『大南實錄』 正編 第4紀 卷68: 10a-b 쪽(유인선, 2012, 앞의 책, 274쪽에서 재인용)

28 Trịnh Nhu, 2007, 앞의 책, pp. 108~109 참고.

군함들을 베트남 박끼의 여러 강에 배치하고 무력시위를 하였다.”²⁹ 갑술조약으로 인한 베트남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간섭할 기회를 엿보며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았던 중국의 태도가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1882년 4월 25일, 하노이 성이 재차 함락되자, 청의 외교관 증기택(曾紀澤)은 1882년 5월 6일에 프랑스의 외무상에게 서신을 보내 프랑스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면서 박끼에서 프랑스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군부에서는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의 요구를 프랑스가 수용하도록 무력을 사용하여 압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⁰ 1882년 11월 중국은 프랑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트남을 프랑스와 함께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였다. “이 시기에 또한 베이징의 청 황제는 리홍장(李鴻章)으로 하여금 베이징의 프랑스 공사인 부레와 베트남을 분할하여 프랑스와 공동 통치하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했다.”³¹ 즉 청은 프랑스와 외교협상에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하여 베트남 문제에 개입할 것을 고려하였고, 심지어 프랑스에게는 공동 지배 문제도 제안한 것이다.

하노이 성이 다시 함락되자 후에 조정이 택한 것은 청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전종김(2011)은 후에 조정의 청에 대한 구원요청에 대한 청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노이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양광 총독인 장수창은 청 황제에게 밀서를 보내어 “중국과 남국(베트남)은 서로 접하여 있는데 남국이 국력이 쇠하여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적을 치러 간다는 명목으로 산지(중국 남부)에 군사를 주둔하게 하여 변고가 날 때를 기다렸다가 홍강 북쪽의 여러 성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³²

그렇다면 베트남에 들어온 청군의 활동은 어떠했을

29 Trịnh Nhu, 2007, 위의 책, p. 112.

30 Trịnh Nhu, 2007, 위의 책, p. 116 참고.

31 Dương Kinh Quốc, 1999, 앞의 책, p. 118.

32 Trần Trọng Kim, 2011, 앞의 책, p. 479.

까? 프랑스가 홍강 델타 전역으로 전장을 확대해가면서 베트남의 전세가 불리하여 청군의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리홍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공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청군은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였다.³³ 박끼 대부분 지역을 손에 넣은 프랑스는 곧바로 후에 황성으로 진격하였고 뜨득 황제의 장례로 정신이 없었던 후에 조정은 결국 프랑스에 항복하며 아르망(Harmand)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1883. 8. 25).

아르망조약 이후 상황에 대해 전종김(201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의 무장해제 명령이 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기대어 프랑스군에 저항하려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리하여 박끼에서의 전투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³⁴ 이런 상황 속에서 뜨득제를 이은 히엡화제(vua Hiệp Hòa, 뜨득제의 동생)는 청에게 사절을 보내 책봉 요청과 함께 군사 원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히엡화제가 대신에게 독살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키엔복제(vua Kiến Phúc)가 히엡화제를 이어 보위에 오르자 청은 히엡화제를 독살한 신하를 벌하고, 정통성 있는 왕을 세우고자 군사를 파병한다.³⁵ 아르망조약 이후에 보인 응우웬 왕조와 청조의 태도와 행동은 전근대적 조공·책봉 관계의 관념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우웬 왕조는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청에 계속 의지하려고 하였으며, 청도 이미 프랑스의 속국이 돼버린 베트남에게 옛 방식을 고수하였다. 응우웬 왕조의 청에 대한 태도에서 나라는 비록 프랑스에게 뺏겼어도 청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보여 왕실은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은 베트남이 이미 프랑스의 속국이 되었는데도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라도 베트남을 지배하려는 탐욕을 보였던 것이다.

2) 청불전쟁으로 드러난 청의 베트남에 대한 야욕

아르망조약 이후의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베트남과 사이에 둔 청불전쟁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당경송(唐景崧)은 1884년 1월 베트남 문제를 연구한 그의 글에서 “지금의 군사 상황은 대내외 국면과 관련되어 있다. 밖

33 Trần Độ, 1995, “Quân Thanh đối với hoạt động xâm lược của Pháp ở Bắc Kỳ trong những năm 1882~1883,” *Tạ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3, p. 73 참고.

34 Trần Trọng Kim, 2011, 앞의 책, p. 485.

35 『淸光緒朝中法交涉史料』卷3, 27a쪽 (유인선, 2012, 앞의 책, 275쪽에서 재인용).

으로는 고려(조선)와 버마, 안으로는 대만과 해남도 모두 베트남을 지켜 평안을 찾느냐, 아니면 잃어 위기에 봉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전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³⁶ 고 했다. 청은 무력으로 베트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1870년대 말 유구가 일본에 병합되고 베트남마저 프랑스의 속국이 된 여파가 청의 다른 조공국에 대한 정책에까지 미칠 것을 염려하였다. 특히 조선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는 조선을 두고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청불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청 내부에서는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타이화(Thanh Hóa) 이북의 박끼 지역을 중국의 보호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1883년 10월 15일에 프랑스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청은 팡빙(Quảng Bình)을 경계로 하여 북쪽을 중국에 귀속시키자고 하기도 했으며, 청 황제에게 군사를 동원하여 박끼와 사이공을 점령하자고 상소하는 중국의 소수 고관도 있었다.”³⁷ 위와 같은 협상 외에도 청은 박끼에 흩어져 있던 흑기군을 이용하여 베트남을 차지할 계획을 꾸미었지만, 흑기군의 지도자인 유영복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베트남에 대한 중주권을 지키려는 것에서 나아가, 박끼 지역을 중국 본토로 편입시키려 했던 중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협상을 통해서도 베트남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력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으며 결국 청불전쟁이 발발하였다. 청불전쟁은 1883년 12월 14일 프랑스의 썬띠이(Sơn Tây)³⁸ 공격을 시작으로 발생하였다. 1884년 1월에 청군은 박끼에 5만에 달하는 군대를 주둔하였고, 흑기군과 베트남 관군이 이에 합세하였다. 1884년 초 몇 달 동안 프랑스 정부는 서둘러 베트남에 군사를 증가시켜 박닝(Bắc Ninh)³⁹을 공격할 때까지 프랑스 병력은 병사 1만 6천 명, 장교 470명에 달했다.⁴⁰ 썬띠이와 박닝 전투에서 패하자 서희태후는 베트남에서의 중국과 프랑스의 권리를 규

정하기 위한 담판을 명하였다. 리홍장이 텐진에서 해군 대좌 푸르니에(Fournier)와 회담을 맡게 되었으나, 청 조정 안의 많은 대신들은 프랑스와의 회담을 반대하고 전쟁을 주장하였다. 청의 내부 상황을 알게 된 푸르니에는 리홍장에게 프랑스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이 얻게 될 이득은 물론 조선에서의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⁴¹ 결국 1884년 5월 11일 리홍장과 푸르니에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다(제1차 텐진조약).

제1차 텐진조약에 따라 청은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을 인정하며 청군을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체결한 후 프랑스는 청과 베트남 사이의 중주국과 제후국 관계의 상징으로 청 황제가 응우웬 왕조에 하사한 국새(國璽)를 불태웠다(1884. 6. 6).⁴² 그러나 1차 텐진조약은 청 내부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박레(Bắc Lệ)에서 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났다. 이때부터 양국 사이의 전투가 극렬하게 발생하여 북 베트남의 내륙 깊숙한 지역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전투가 진행되었다. 1884년 7월 3일에 해군 중장 코벳(Courbet)은 복주(福州)를 공격한 후에 전함을 이끌고 대만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1885년 3월 베트남 랑선(Lạng Sơn)⁴³에서 프랑스군이 대패하게 되어 양국은 정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5년 6월 9일 양국은 ‘평화우호통상조약’을 텐진에서 체결하였다.

전쟁이 조기 종결된 것은 중국이 군사적인 면에서 양무운동의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이 베트남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아 프랑스에게 베트남을 양보하고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프랑스와의 국경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경계의 땅을 중국 쪽으로 최대한 편입시키려고 노력했다. “청은 박끼에서 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할 상황을 아쉬워하며 프랑스에게 크게 양보한 대신에 그들은 프랑스에게 베트남의 영토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⁴⁴ 실제로 중국은 국경 획정을 위

36 Trịnh Nhu, 2007, 앞의 책, p. 131에서 재인용.

37 Trịnh Nhu, 2007, 위의 책, p. 131. 타 잉화는 현 하노이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성이며, 팡빙은 현 하노이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하롱베이가 속한 성이다.

38 하노이의 북서부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중국의 운남 지역에서 하노이로 들어가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

39 하노이의 동쪽에 인접한 성.

40 Trịnh Nhu, 2007, 앞의 책, p. 135.

41 Trịnh Như, 2007, 위의 책, p. 137.

42 Trần Trọng Kim, 2011, 앞의 책 참고.

43 베트남 동북지역의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성.

44 Trịnh Như, 2007, 앞의 책, p. 148.

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에 인정되어왔던 국경에 대해 프랑스가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였다.⁴⁵ 청은 베트남에 대한 무형의 종주권 상실을 프랑스와의 국경 확정 과정에서 가시적인 영토로 보상받은 것이다.

IV. 1860~1880년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⁴⁶

1. 문호 개방 과정에 나타난 조선·중국 관계

1860년대 서양 열강들은 연달아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은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청조에 상황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양 열강들도 조선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청에게 조선의 개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도록 거듭 요청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청조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서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 “청조는 가능한 한 조선과 열강 사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1865~1866년에 프랑스, 영국, 미국 측에서 거듭하여 조선의 개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청조 측은 개입을 거부하였고, 조선은 모든 면에서 독자성을 발휘해왔으며 따라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 및 외교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⁴⁷

일본은 왕정복고를 선언한 후(1868)에 조선과의 통상요구가 거절되자(1868, 1869), 청이 대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틈을 이용해 중일우호통상조약을 맺었다(1871). 청은 일본과 서구 열강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고, 일본은 청을 이용해 조선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들이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어 유구와 대만 문제를 일으켜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후 조선에서 충돌할지

⁴⁵ Trinh Nhu, 2007, 위의 책 p. 150 참고.

⁴⁶ 이 장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엽(2010) 및 이윤섭(2009) 참고.

⁴⁷ 최희재, 2010, 「월남, 조선과 1860~80년대 청조 조공국정책의 재조명」, 『역사학보』 206호, 183쪽.

모른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청조는 조선에 그 사실을 알리고 서구 열강의 통상요구를 거론하며 대비를 촉구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렇게 하여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팽창정책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1875년 9월 일본은 강화도에서 운요호사건을 일으킨 후, 1876년 1월 군함을 이끌고 나타나 통상조약을 맺지 않으려면 전쟁을 택하라고 조선을 위협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사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중국에 보내 조선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였고 청의 개입과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때 청의 총서(總署, 총리기무아문)는 조선에 대한 무력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조선의 지위에 대해서는 ‘조공국인 동시에 자주국가(自主之邦)’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모리 아리노리는 속국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근거로 조선은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서(總署)는 이에 반박하며 조선이 전통적 관행에 따른 자주권을 지닌 속국이라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조선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⁴⁹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는 데 청이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덜게 되었다. 청은 또한 조선이 구한 자문에는 ‘만일 조선이 일본과의 통상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다.”⁵⁰ 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없는 대외 상황과 함께, 당시 동아시아에서 조공체제가 조약체제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정책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결국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선과 청의 관계를 끊고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갑술조약(1874)’에 나타난 프랑스의 의도와 맥을 같이한다. 강화도조약으로 청의 조선에 대한 우월

적 지위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조선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침략이 거세지면서 청은 실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⁴⁸ 최희재, 2010, 위의 글, 183쪽.

⁴⁹ 최희재, 2010, 위의 글, 186~187쪽 참고.

⁵⁰ 김재엽, 2010, 앞의 책, 78쪽.

일본과 조선의 조약 체결로 청은 일본과 함께 러시아와 서방 세력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유구를 오키나와 현으로 개칭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도리어 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머지않아 조선마저 무력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자, 청은 조선과 열강의 수교를 주선하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리홍장은 미국 대표로 조선과의 수교를 원하는 해군 장교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⁵¹ 청은 조선에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므로써 중국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 양측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⁵² 때마침 조선에서도 1880년 당시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와 고종에게 서방국가들과의 수교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1881년 3월에 리홍장에게 이런 개방의지를 전하였다. 청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조약 체결에는 방관하였지만 미국과 조선 사이의 조약 체결에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청은 미국과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조약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교에서는 자주권이 있다'라는 속국 조항을 명문화하려 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인 조약체제 안에서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였지만, 미국이 반대한 탓에 결국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회문(照會文)을 보내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조회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대조선국 군주가 조회(照會)하건대, 조선은 평소에 중국의 속방(屬邦)이었으나, 내치와 외교는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자주(自主)했다."⁵³ 조선은 일본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공국으로서 청에 대한 자문과 함께 주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는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1870년대 말에 나타난 동아시아 조공체제의 위기와 관련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유구와 대만의 문제로 인한 조공체제의 위기는 물

51 이윤섭, 2009, 앞의 책, 79쪽 참고.

52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앞의 책, 65쪽 참고.

53 이윤섭, 2009, 앞의 책, 85쪽.

론,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갑술조약과 함께 박기의 위협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개화 과정에 나타난 청의 간섭

1) 임오군란 이후 본격화된 청의 간섭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을 맺고 개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 변화는 1880년부터 본격화되어 1880년 12월에는 청을 모방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1881년 5월에는 별기군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서는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폐지하고 양국 관계를 대등하게 조정한 새로운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였으며,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⁵⁴ 조선은 전통적으로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 중국과의 사대적 관계만 중시하였지만, 조약을 통한 국제관계에 새롭게 눈뜨면서 청과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과의 수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왜양일체를 주장하며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났고, 강화도조약 이후에 거세진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민중들 사이에도 반일 감정이 거세졌다. 또한 『조선책략』의 유포로 유생들은 궁궐 앞에서 공공연히 개화를 반대하는 등 위정척사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대원군 퇴진 이후 조선의 권력을 독차지한 민씨 일가들의 매관매직, 사치, 국고 낭비는 많은 민중들의 원성을 샀다. 통리기무아문, 별기군을 비롯한 조정의 개화정책의 주역들은 대부분 민씨 일가와 그 지지 세력들이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화란 말인가'라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화 과정의 모순들로 인해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였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받던 구식군대는 궁궐을 점령한 후 본격적인 개화반대 및 민씨일가 타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고종은 변란에 대한 수습을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맡겼다. 궁궐을 빠져 피신한 민비(閔妃)는 영선사로 청에 머물고 있던 김윤

54 김육훈, 2011,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권)』, 휴머니스트, 39쪽.

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광둥(廣東)의 수사제독(水師提督) 오장경(吳長慶)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였다. “청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일본이 유구의 경우처럼 조선을 합병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⁵⁵ 오장경은 특별히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베이징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았다. “청은 대원군의 납치에 대해서 ‘청 황제가 인정한 국왕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것은 국왕을 기만하고 황제를 능멸하는 처사이므로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⁵⁶ 이렇게 청은 과거의 책봉·조공 관계를 빌려 조선 내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민씨 세력을 재집권시켰다.

청은 조선이 개항한 이후 조선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는데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에게 전통적 사대관계 대신에 근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보호국의 위치를 강요했고 조선의 청에 대한 예속은 점점 심화되었다.”⁵⁷ 청은 일본에 빼앗겼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켜 조선을 속국화시킬 속셈이었던 것이다. 청은 도성의 치안 담당 및 왕 호위를 맡은 친위부대도 새롭게 편성하여 젊은 무관인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맡겼다. 1883년 11월 청은 위안스카이를 군사 담당으로, 독일인 뮐렌도르프(Möllendorff)를 외교고문으로, 마건상(馬建常)을 재정고문으로 임명하여 보냈다.

조선은 청과의 사대관계를 폐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인해 1882년 10월 4일 불평등조약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청과 체결하였다. “무역장정 전문(前文)에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이 장정을 체결하므로 다른 외국은 일체 이 장정의 예를 따를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종속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했다.”⁵⁸ 청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군사권을 장악했는데, “심지어 일부 청의 관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선을 만주에 편입시켜 직할 영토로 삼자는 병합론까지 주장했다.”⁵⁹ 청의 이런 태도는 같은 시기 청이 베트남 문제에 간섭하면서 프랑스와 협상을 통해 베트남의 박기 지역을 속지로 삼고자 했던 제국주의적인 자세와 상통한다고

55 이운섭, 2009, 앞의 책, 98쪽.

56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앞의 책, 66쪽.

57 이운섭, 2009, 앞의 책, 100쪽.

58 이운섭, 2009, 위의 책, 100쪽.

59 이운섭, 2009, 위의 책, 101쪽.

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등 서방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과도 근대 개념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청은 임오군란의 기회를 틈타 오히려 조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 베트남에서의 종주권 상실과 이에 따른 조선에 대한 청의 집착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재정을 틀어쥔 청은 조선의 자주적인 선택을 사사건건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청일에 대한 입장, 개혁 방향과 속도, 부족한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아래와 같이 양분되었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이른바 온건파(사대당)들은 서구 기술 문명의 수용은 중국과 조선이 공유해온 동양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東道西器). 이들은 치열한 국제전쟁 속에서 청이라는 강국의 우산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반면에 급진 개화파(혹은 개화당)들은 서구의 기술 문명과 법·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 수용을 통해 국가 체제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화당들은 독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청이라 여기고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였다.⁶⁰

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염원하였고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된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해야 조선이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근본적인 개혁과 청에서 자주권 확립을 지향하는 개화당의 입장은 사대당과의 갈등을 예고하였다. 당시 개화당의 김옥균(金玉均)은 고종의 승인으로 외국에서 개혁을 위한 차관도 입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를 빌미로 사대당은 개화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다. 한편 당시 청은 프랑스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로 전쟁이 예견되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청의 광둥의 수사제

독 오장경(吳長慶)은 조선에 “청·불이 교전하면 조선은 마땅히 청국을 도와 프랑스와 싸워야 하고, 무릇 프랑

60 전국 역사교사모임,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210쪽.

스 군함이 조선 항구에 정박할 때는 마땅히 공격하여 쫓아내야 할 것이다”⁶¹라고 하였다. 1883년 12월 청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무력충돌을 일으켰다. “청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1884년 8월에 조선에 주둔하던 병력 중 절반인 1,500명을 철수하였다.”⁶²

청불전쟁으로 인해 도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반이 베트남 전장으로 철수하고, 일본이 이 기회를 틈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만회하고자 개화당에게 접근하였다. 이어 청의 전세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개화당은 사대당을 제거하면서 청의 오랜 종주권을 끊고 자주적인 혁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김옥균 등은 사대당과 민씨 일파들을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하였지만, 믿었던 일본의 지원이 없었고 당시 25세였던 청의 젊은 장교 위안스카이의 공격으로 개화당의 혁명은 단 3일 만에 끝이 났다. 개화당이 발표한 정강 14조의 첫 번째는 “청에 대해 조공하는 허례(虛禮)를 폐지한다”로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을 통한 조선의 자주권 확립 의지를 담고 있다.⁶³ 개화당은 반청 자주 독립과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반대로 일본의 후원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였고 일본의 메이지유신 성공 사례의 좋은 모습만 보았지 일본이 품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침탈 의도는 간과하였다.

급진적인 방식의 개화당의 정변 실패는 민중들과 고종에게 개화사상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젊은 개화파 인물들을 잃게 되어 그 후로 10년 동안 개화의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보내고 만다. 게다가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막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지는 개화당의 목표는 반대로 청의 조선에 대한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간섭을 가져와 조선에 대한 지배욕을 키워주었다.

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자 조선에 집착하며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청은 1894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조선에 간섭하였다. 1885년 8월 26일 위안스카이는 ‘주차조선통상교섭사의(駐劄朝鮮通商交涉事宜)’라는 종주국이 조공국에 파견하는 감국대신

61 유영렬, 2004, 『윤치호의 문명개화의식과 반청주의의식』,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제23호, 40쪽.

62 이윤섭, 2009, 앞의 책, 110쪽.

63 김재엽, 2010, 앞의 책, 133쪽.

(監國大臣)의 자격으로 조선에 부임한다. “조선은 군사·재정·외교에서 청의 통제를 받게 되어 독립국이라 할 수 없었다.”⁶⁴ 고종이 러시아와 밀약을 했다는 설이 전해지자 위안스카이는 심지어 청 정부에 고종의 폐위를 건의하기도 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외교에 적극 간섭하여 1887년에 박정양(朴定陽)을 미국에 전권공사(全權公使)로 파견하는 것마저 방해했으며 서양 국가들에게 ‘조선은 청의 속방(屬邦)’임을 거듭 강조하는 등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조공국(tributary state)의 위치를 서방 국가들로부터 종속국(vassal state)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다.⁶⁵ 위안스카이의 이런 행동은 프랑스와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지위를 청의 조공국이 아닌 속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V. 맺음말

1. 본론의 내용에 기초하여 1860~1880년대의 베트남과 중국 관계, 조선과 베트남 관계의 특징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60년대 베트남과 중국, 조선과 중국 관계는 비교적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여러 문제로 인해 중국은 베트남에서의 프랑스 침략과 서방 국가의 조선에 대한 통상 요구를 전혀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형식적인 조공과 책봉 관계와 함께 중국에 대한 독립 자주의식이 강했던 반면, 조선은 화이론적 성리학 사상에 몰입되어 청에 대한 의존이 강하여 서방의 통상 요구에도 청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1870년대 이 시기에도 관계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가, 베트남의 경우 1874년 갑술조약 이후, 조선의 경우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

64 이윤섭, 2009, 앞의 책, 120쪽.

65 청에 의해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있었던 Owen N. Denny는 그의 저서 『청한론(China and Korea)』에서 원세개를 비판하며 조선은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번역해야지 종속국(vassal state)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이 조공국으로 독립국가이지 청의 종속국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앞의 책, 71쪽 참고).

기 시작했다. 중국은 프랑스에게 중국의 허락 없는 베트남과의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주권을 주장하였고, 조선에 대하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서방 국가와의 조약 체결을 통해 간섭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 중국은 베트남과 조선에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간섭하였고, 이 둘을 속국으로 삼으려는 제국주의적 모습까지 보였다. 중국은 프랑스와의 외교 협상을 통해 베트남의 분할지배를 제안하였고, 급기야 청불전쟁까지 일으켰다. 또한 조선에 군사를 동원하여 임오군란을 평정한 후에는 조선에 고문을 파견하는 등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이 시기 베트남과 조선은 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고 조선에서는 1884년 반청 자주를 기치로 내세운 정변이 일어났으나 결국 청의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2. 이 시기 중국의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정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베트남·중국, 조선·중국 관계는 서방 국가들의 동방으로의 진출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당시 베트남과 조선은 정세의 변화를 잘 몰랐으며, 개혁의 기회를 놓치면서 서방 국가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베트남과 조선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베트남과 조선이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간섭은 노골화되었다. 중국은 전통적 조공·책봉관계를, 근대적 조약을 통한 제국주의적 질서로 재편하여 베트남과 조선을 속국화하거나 보호국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중국의 이런 야욕은 청불전쟁의 실패와 청일전쟁의 실패로 꺾이게 되었으며, 중국은 결국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말았다.

3. 당시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조선과 중국 관계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주었다.

1880년대 청은 베트남과 조선에서의 종주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으며 그 시험 무대는 베트남이었다. 1883년 청불전쟁의 발발로 조선에 주둔

했던 청군은 베트남으로 이동했고 당시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과 개혁을 외쳤던 급진개화당에게 정변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의 정세는 이미 기울어졌으며 이에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할 필요를 느꼈던 청은 재빨리 갑신정변에 간섭하였다. 청불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상에서도 조선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청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청은 청불전쟁의 패배로 인한 베트남에서의 권리 상실을 조선에서 만회하려고 했고, 이는 조선을 제후국이 아닌 제국주의 조약체제 아래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및 인접국들과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일본과는 센카쿠(尖閣)열도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해양으로의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으로 과거의 역사를 날조하고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미래에 발생할 영토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슈퍼 차이나가 현실화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옛 중화세계를 재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시기에서 어느새 10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르며 중국과 한국, 베트남의 관계는 당시와는 여러 가지로 달라진 부분이 많다. 하지만 세 나라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에서 다루었던 시기가 무척이나 큰 변혁의 시기였던 만큼 시시각각 정세가 변하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시야와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중·후반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공통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베트남과 조선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조공체제가 무너지며 베트남·중국의 관계와 조선·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아가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1860년대까지 베트남과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지만 자주성을 지녔으며, 1870년대 후반까지 중국 역시 국내외의 문제로 인해 조공국인 베트남과 조선의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조공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국은 베트남과 조선에 외교적·군사적으로 노골적인 간섭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전통적 조공체제를 근대적 조약을 통한 제국주의적 질서로 재편하여 베트남과 조선을 속국화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와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즉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이 베트남에서의 종주권을 위해 일으킨 청불전쟁으로 조선에 있던 청군이 베트남으로 이동하였고, 이 기회를 틈타 조선에서는 중국과의 사대관계의 청산을 주장하며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하지만 베트남의 정세가 프랑스로 기울자 중국은 갑신정변을 진압하며 조선의 군사·재정·외교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서방 국가들에게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19세기 동아시아에 밀어닥친 제국주의의 큰 파고는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수호 의지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이 제국주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베트남을 프랑스에 빼앗긴 것에 대한 상실감을 조선에서 보상받으려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중국 관계, 조선·중국 관계, 조공체제, 제국주의,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청불전쟁, 갑신정변, 속국

ABSTRACT

The Change in China's Relations with Vietnam and Korea and their Interaction under the Influence of Imperialism

Shin, Seungbok

Research fellow of CAS in Hanoi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Choi, Jaeyu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common historial background of imperialism's invasion of East Asia in the mid to late 19th century, this study examines how China's relations with Vietnam and Korea changed, and how these relations interacted with each other amid the collapse of a traditional tribute system in which Vietnam and Korea occupied significant positions. Until the 1860s, Vietnam and Korea retained autonomy despite being tributary states of China, and until the late 1870s, domestic and foreign issues prevented China from deeply interfering with the affairs of Vietnam and Korea. As the tribute system began to falter, however, China began to more explicitly interfere diplomatically and militarily in the affairs of the two countries. China tried to turn them into its vassal states by reorganizing the traditional tribute system into an imperialistic order based on the modern treaties. In the process, China's respective relations with Vietnam and Korea became interconnected and interactive with one another. That is, as the French invasion of Vietnam began making its stride, the Chinese army stationed in Korea moved to Vietnam to go to war with France to maintain China's suzerainty over Vietnam. Taking advantage of this situation, the Gapsin Coup of 1884 was stag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 attempt to end the relationship based on toadyism between China and Korea. However, as the situation in Vietnam became favorable for France, China turned its attention back to Korea, managing to repress the coup and beginning to take control over Korea's military, finances, and diplomacy. Furthermore, China desired for western countries to acknowledge Korea as its own vassal state. The big wave of imperialism that crashed upon 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caused China to engage in imperialism and to intensify the will to defend its suzerainty over Vietnam and Korea, which resulted in its attempt to seek compensation through Korea for its loss of Vietnam to France.

Keywords

Vietnam-China relations, Korea-China relations, tribute system, imperialism, French invasion of Vietnam, Sino-French War, Gapsin Coup, vassal state

참고문헌

김육훈, 2011,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판)』, 휴머니스트.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살림.

송정남, 2010,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안병우·김형중·이근우·신성곤·함동주·김정인·박중현·정연·황지숙, 2011,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이윤섭, 2009, 『다시 쓰는 한국 근대사』, 평단.

전국 역사교사모임,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I』, 휴머니스트.

계승범, 2012, 「16-17세기 명(明)·조선(朝鮮)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정치와 평론』 제10권.

노대환, 2010, 「19세기 조선 외교 정책의 변화-베트남 응우옌 왕조와의 비교」, 『조선시대사학보』 제53권.

유영렬, 2004, 「윤치호의 문명개화의식과 반청주자의식」,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제23권.

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속이론(蕃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발해연구』 제29권.

최희재, 2010, 「월남, 조선과 1860~80년대 청조 조공국정책의 재조정」, 『역사학보』 206호.

Dương Kinh Quốc, 1999, *Việt Nam-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1858-1918)*, Nxb Giáo Dục, Hà Nội.

Trịnh Nhu, 2007, *Mấy vấn đề lịch sử Việt Nam tái hiện và suy ngẫm*, Nxb Chính Trị Quốc Gia, Hà Nội.

Trần Trọng Kim, 2011, *Việt Nam sử lược*, Nxb Khoa Học Xã Hội, Tp.Hồ Chí Minh.

Trần Độ, 1995, “Quân Thanh đối với hoạt động xâm lược của Pháp ở Bắc Kỳ trong những năm 1882~1883,” *Tạ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3.

Yoshiharu Tsuboi, Nguyễn Đình Đầu 역, 2011, *Nước Đại Nam đối diện với Pháp và Trung Hoa 1847~1885*, Nxb Tri Thức, Hà Nội.



가제냐, 강치냐

호칭의 유래와 변천에 관한 소고

유미림 한어문화연구소 소장

I. 머리말

2015년 새해 초¹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일본의 ‘다케시마 메치’(독도 강치) 동영상 보도하며 일본의 영유권 도발을 비판했다.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스키하라 유미코(杉原由美子)가 『메치가 살았던 섬』이라는 그림책을²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동영상 홈페이지³ 및 유튜브에 올렸다. 동영상의 내용은 스키하라가 오키(隠岐) 구미(久見) 지구의 선조들이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메치’, 즉 일본 강치와 친근하게 생활해왔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호소하며 ‘다케시마’가 여전히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변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일본이 바다사자를 ‘메치’로 표현한 점이다. 일본 문헌에 가장 많이 나온 호칭은 ‘아시카(海驢)’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화자는 왜 ‘아시카(アシカ, 海驢)’ 또는 ‘니혼 아시카(日本海驢)’라는 명칭을 놔두고 굳이 ‘메치(メチ)’⁴라는 방언을

사용했을까? 우리는 ‘강치’ 또는 ‘바다사자’라고 부르지만 그 명칭이 가지어, 가제(가제)에서 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그런데 최근에 ‘가지’나 ‘가제’라는 단어는 어원을 설명할 때 동반되는 정도일 뿐 주로 ‘강치’나 ‘바다사자’로 호칭된다. 한편 ‘강치’는 조선시대의 ‘가지’ 또는 ‘가제’에서 유래한 것이며 동해안에서 사용하던 호칭이므로 ‘강치’ 대신 ‘가지’나 ‘가제’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⁶ 그렇다면 ‘가지(가제)’와 ‘강치’는 어떻게 다른가? ‘가지(가제)’가 정통적인 호칭임에도 대부분의 독도 관련 연구서에 ‘강치’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해려(海驢)’를 ‘강치’로 번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강치’라는 명칭이 조선 시대에

등장했음에도 그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이들 명칭의 유래를 추적하고 호칭 사용에 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가지어와 강치의 어원

문헌에서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가지어’다. 이 말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서다. 성종 시대에 삼봉도를 찾아 떠난 일행이 바다에서 인형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한 기록이 있지만 ‘가지어’로 명명된 것은 아니었다.

1693년 이른바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1694년 가을 숙종은 삼척 영장 장한상에 게 울릉도를 조사시킨 바가 있다. 그때 장한상은 입도에 앞서 군관 최세철을 보내 사전 답사하게 했다. 최세철은 답사 후 “바위틈에서 가지어(可支魚)가 즐고 있기도 하고 — 원문 빠짐 —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두마리를 몽둥이로 때려 죽여 가지고 왔다”⁸고 보고했다.

면 표준어는 ‘미치’가 된다. 그렇다면 방언 사전에 보아야 하는데, 필자는 ‘ト’(토)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바다사자’에 관한 해양생물학적 견해는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박사가 제공한 자료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다. 각각류 바다사자과(FAMILY OTARIIDAE)에는 물개(Callorhinus ursinus), 큰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바다사자(Zalophus californianus) 3종이 있는데, 바다사자는 현재 절멸종 혹은 절멸위기종으로 분류된다. ‘토도’는 큰바다사자를 이른다.

5 이 글에서 역사적 명칭은 원어대로 쓰고, 학술적 명칭은 ‘바다사자’로 칭하기로 한다.

6 한철호, 2012, 『독도·울릉도 가지(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한국사학보』 제49호, 2012. 11)에서 이규경의 변증설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필자는 중요한 사료만을 기술하고 어원에 초점을 두었다.

7 조선시대 태종대에는 강치를 가리키는 듯한 언급이 보인다(『태종실록』 17년 2월 5일).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水牛皮’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때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수우피는 강치가죽으로 보인다.

8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375쪽.

1 2015년 1월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자, 다른 언론매체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2 이 그림책은 스키하라의 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3,000부 발행되었다.

3 <http://www.cas.go.jp/jp/ryodo/index.html>

4 ‘메치’는 오키 지역에서 부르던 미치(みち)의 방언이라고 한다. 주로 ‘해려(아시카)’로 나온다. ‘메치’가 미치(美智)의 방언이라

이때 '가지어'가 처음 나온다. 최세철이 거명했음은 그런 호칭이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장한상은 “해구(海狗)나 점박이 물범(斑獭)과 같은 종류로 이름만 다른 것이다. 평해와 통천 등지에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니, 원래 희귀한 동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지어'를 동해안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수(海獸)로 본 것이다.⁹

장한상의 조사 이후 조선 정부는 3년마다 수도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과견되었던 수도관들은 수도 보고서에서 대부분 '가지어'를 언급했다. 1794년 월송 만호 한창국, 1807년 월송 만호 이태근, 1827년 삼척 영장 하시명¹⁰ 1831년 삼척 영장 이경정 등은 '가지어' 내지 '가지어피'를 언급했다.¹¹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장한상의 보고서에 나온 '가지어'를 거론했다. 이익은 장한상의 기록에 근거했지만, 장한상보다 자세히 가지어의 특성을 묘사했다.¹² 이후 대부분의 '가지어' 기술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신경준(1712~1781)은 “눈동자는 붉고 뺨이 없으며, 무리지어 해안가에 누워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달이나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가지(可之)라고 한다”¹³고 했다. 그는 '가지어'에서 '魚'자를 삭제했다. 해중(海中)의 '대수(大獸)'로 여겨서인 듯하다. 『동국문헌비고』(1770)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안정복(1712~1791)도 이익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했다.¹⁴ 이후 이궁익(1736~1806)의 『연려실기술』¹⁵과 『만기요람』(1808)¹⁶에도 '가지'가 언급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문헌에 '가지어' 혹은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듯 '가지어' 호칭은 오래전부터 보였지만 조선 시대에 '가제'라는 말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강치'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보이는가? 이규경(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가지강치해마옹용변증설(嘉支強治海馬鯢鱠辨證

9 한상훈 박사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물개가 아니라 바다사자라고 한다. 바다사자의 번식지는 40개 이하로 번식기에 독도를 찾아오고 그 외에는 동해와 남해 등 연안에서 생활했으며, 물개는 북위 42도 이북에서 번식하고 그중 어린 개체와 일부 성체 수컷이 가을에서 봄까지 회유하여 생활했다고 한다.

10 한철호, 2012, 앞의 글, 237쪽.

11 다만 이들이 목격했다는 가지도, 가지도구미, 가지어굴 등은 울릉도 주변일 가능성이 더 크다.

12 『성호사설』 제3권, 「천지문」 '울릉도', “水族則只有嘉支魚 穴居巖磧 無鱗有尾 魚身四足 而後足甚短 陸不能善走 水行如疲 聲如嬰兒 脂可以燃燈云.”

13 『여암전서』 권7 「강계고」 4, '昭代/울릉도'.

14 『동사강목』, 1778, 부록 하권/예고(濺考).

15 『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변어전고(邊圍典故) 제도(諸島).

16 『만기요람』, 「군정편」, 4 해방/동해.

說)에서 '가지(嘉支)'와 '강치(強治)' 등의 해수에 대해 변증했다. 또한 「울릉도 사적에 대한 변증설(鬱陵島事實辨證說)」에서는 “바다 속에 소처럼 생긴 큰 짐승이 있는데, 눈동자는 붉고 꼬리는 없으며,¹⁷ 떼를 지어 해안가에 나와 누워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치고 …… 이름을 가지(可之)라고 한다”고 하여 『문헌비고』를 인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규경은 '해구(海狗)'에 대한 변증설도 남겼다.¹⁸ 그는 왜 가지와 강치, 해구 등을 변증하려 했을까? 가지와 해구, 해려 등은 이규경 이전부터 보이던 호칭이지만, '강치'는 이규경이 처음 사용했다. 그렇다면 '가지'와 '강치'의 어원을 살펴보자.

1. 가지어(가제)

장한상과 박세당은 '可支魚'라고 했지만, 이익은 '嘉支魚'라고 표기했다. 정조 연간에는 다시 장한상의 표기 '可支魚'로 나온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嘉支魚'로 되어 있고, 신경준은 '可之', 『연려실기술』과 『만기요람』에는 '可之'로 되어 있다. 이규경은 '可之', 이우원도 '可之'로 표기했다.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은 '可支魚'¹⁹로, 1887년 울릉도 첨사 박태원도 '可支魚'로 표기했으나, 『증보문헌비고』(1908)에는 '可之'로 되어 있다. 이렇듯 '가지어'에 관한 표기를 보면, 可支魚-嘉支魚-可之-可之魚-可支魚-可之로 변전하고 있다. 모두 '가지어'를 가리키는데 그 표기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가지어(가제)'에 대한 한자가 뜻을 빌려(濶取) 표기한 것이 아니라 '가제' 혹은 그와 유사한 우리말에 가까운 음을 빌려(濶取) 표기한 것임을 의미한다. '가지'라는 호칭이 고유어라면 이렇듯 표기가 다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경에 따르면, '嘉支'는 '可之'를 전사(傳寫)하다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규경 이전에는 '可之'뿐만이 아니라 '可支'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可支'가 먼저다. 그러므로 '可支'에서 '嘉支'로 와전되었다고 한다면 개

17 『성호사설』에는 비늘은 없고 꼬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규경은 꼬리가 없다고 했다. 바다사자는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18 『海狗辨證說』.

19 이규원은 해우와 해구 외에 '可支魚'를 언급했다.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9, 195쪽.

연성이 있지만, ‘可之’가 없던 상태에서 ‘嘉支’로 와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전사하다가 잘못된 표기가 여러 개라는 사실은 당초 하나의 호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이규경은 이전에 보인 세 가지 명칭(可支魚, 嘉支魚, 可之魚)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준이 호칭한 ‘可之’를 택했다. 이규경은 왜 신경준의 ‘可之’ 표기를 따랐을까? 이는 이규경의 학문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그는 「울릉도 사적에 대한 변증설」에서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인용했지만 대부분은 신경준의 『강계고』 내용을 수용했다. 이는 그가 신경준의 고증적 태도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규경은 ‘가지’와 ‘강치’를 언급하고 이들 명칭에 대해 변증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먼저 보인 명칭이 ‘가지어’라면, ‘강치’가 ‘가지어’에서 파생했을 가능성은 있는가? 이는 강치의 어원을 고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강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치’라는 명칭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규경이다. 이규경은 ‘強治’라고 표기했는데 한자는 그의 언급에서만 보인다. 1957년에 ‘강치’ 명칭이 다시 보이지만 한자 표기는 없다. 이규경은 왜 ‘強治’라고 했을까? 한자에서 ‘바다사자’ 혹은 해수를 연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強治’의 뜻과 ‘가지어’가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強治’ 표기의 단서를 어류의 명명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어명에는 ‘○어’ 아니면 ‘○치’가 붙는데, 대구어, 명태어, 청어, 목어, 고등어 등은 전자의 예고, 갈치, 넙치, 준치, 삼치, 날치, 멸치, 가물치 등은 후자의 예다. ‘강치’도 후자와 같이 다뤄질 수 있다. 어류(藻類 포함)는 속명(俗名)과 문헌명(훈차표기)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명이나 물명(物名)이 그렇듯 우리는 그 이름을 문헌에 표기된 한자로 접한다. 어류에 대한 속명도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우리말을 음차표기하였다. 대구어, 청어, 고등어, 연어, 장어, 도미, 빙어 등의 문헌명은 鱈, 鰵, 鯖, 鮭, 鰻鯉, 鯛, 鯉魚 등이다. 이에 대

한 속명은 大口魚, 靑魚, 古刀魚(高道魚), 鱧魚, 長魚, 道美魚, 氷魚²⁰ 등이다.²¹ 어류의 속명 표기는 『해행총재』, 『자산어보』에 보이는데, 근대기에 일본도 한국 수산물의 속명을 병기했다.²² ‘치’자가 들어간 이름 즉 갈치, 준치, 삼치, 날치, 멸치, 가물치, 넙치 등의 문헌명은 刀魚(鱈), 鱧(眞魚), 麻魚, 鱈, 鰵魚(鰵兒), 鱧魚(加火魚), 廣魚(此目魚) 등이고, 속명은 葛治, 俊治, 訥治, 蔑治, 甘乙治 등이다. 이들에게서 ‘치’자의 한자가 모두 ‘治’²³이므로 ‘강치’와 ‘強治’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정약용은 어류에 ‘치’자를 붙이는 방식을 방언이라고 보았다.²⁴ 그렇다면 ‘강치’도 방언식 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선 시대에 해마, 해구 등 ‘海’자를 붙인 어족을 제외하면 포유류 강치도 ‘치’자가 붙어 어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규경(1788~1856)은 정약용(1762~1836)보다 후대의 사람이다. ‘강치’라는 명칭이 정확히 언제 성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규경은 ‘가지어’와는 별개의 명칭 ‘강치’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규경은 ‘가지’는 동해 사람의 호칭, ‘강치(強治)’는 북해 사람의 호칭이라고 했다. 북해인은 왜 ‘강치’로 명명했을까?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해인들이 이 해수를 발견한 뒤 형상에 따라 이름을 강치로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수를 발견한 사람은 장한상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동해인이 아니라 북해 즉 함경도인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종실록』에 관련 기록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종 연간 김한경 등은

이 동물에 명명하던 단계는 아니었다. 그러다 점차 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됨에 따라 ‘가지’와는 다른 ‘강치’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이규경 단계에 오면 ‘強治’로 표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강치’로 명명하게 된 데는 몸집이 크고 강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멸치와 넙치, 갈치, 날치 등이 어떤 형태를 연상시키듯 ‘강치’도 강하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어명이 성립하는 선후관계로 보면, ‘강치’라는 속명이 있는 후에 음차표기한 것이 ‘強治’이지, ‘強治’가 먼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치의 ‘치’자를

20 『연경재전집』, 『해행총재』.

21 다시마, 우뚝가사리, 고래, 조기, 오징어 등도 속명이므로 문헌명은 昆布, 石花菜, 鯨魚, 石首魚, 鯨(烏賊魚) 등이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多士麻, 牛毛加士里, 高來魚, 曹機, 烏賊魚 등으로 음차 표기한다.

22 『한국수산지』.

23 ‘치’자가 붙은 어명이 학공치(紅鱈, 象鼻魚)를 방언으로 ‘昆雉’로 부르듯(『牛海異魚譜』, 1803) 모두 ‘治’자 표기가 붙지는 않는다.

24 “方言魚名必加治字”(『여유당전서』 제1집, 雜纂集 제24권 雅言辨非, 鯨魚).

‘治’로 한 것도 다른 어류와 같은 방식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강치’가 ‘가제’라는 방언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다. ‘가지’는 울릉도 방언 ‘가제’ 혹은 ‘가재’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가지’가 ‘가제’에서 왔다면 ‘가지’ 표기의 역사는 장한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가제’라는 방언이 있던 동시대에 북해 지역에서도 ‘가제’가 있었고 그것이 ‘강치’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제에서 온 강치가 먼저 있었고 한자는 이규경 단계에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편 ‘가제’의 방언은 가아자·기·까자·까재·까지²⁶·가제²⁷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石蟹’²⁸에 대한 속명도 ‘가제’며 이는 ‘可才’로 음차 표기된다. 이때의 ‘가제’는 갑각류 ‘가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호칭된 ‘가제’는 갑각류 ‘가제’와는 다르다. 갑각류 ‘가제’는 표준어고, 포유류 ‘가제’의 동의어로서의 ‘가제’는 방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방언(가제, 가재)에서 다시 방언(강치)이 파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강치가 반드시 ‘가제’라는 방언과 관계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북해 지역의 고유 방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이규경의 지적대로 ‘강치’가 동해의 방언 ‘가제’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성립한 북해 지역의 고유 호칭으로 볼 수 있다. ‘가지=강치’로 보고 이규경의 변증설에 근거하여 ‘해구’와의 차이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가지·강치·물개의 명칭 비교

명칭	가지	강치	물개
한자	可之	强治	海狗
어원	嘉支魚(장한상)	가제	
별칭		或稱海馬	膾腩, 膾腩臍, 海豹
日稱*	海驢	海驢, 海鹿, 葦鹿, 아시카, 토도, 미치	膾腩臍(오토세이)
명칭	東海之嘉支	北溟之强治(古之所謂鯢鱣也)	膾腩臍(『本草』)
	鬱島所產嘉支	北海人則呼之以强治	
	嘉支者傳寫有異也		

25 ‘가지’가 방언 ‘가제’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50년대며, 국어사전에 보이는 것은 1970년대에 와서다.

26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27 『국어대사전』, 1954, 영창서관.

28 “石蟹(속명 可才)” 『茲山魚譜』, 1814.

형상		其狀如牛似馬 有尾鬣 毛短黑褐色	渾身圓如魚鮮 雄黑雌黃
		頭大如牛	大者二三尺 全體類魚有毛頭似貓 兩脅有鱗無足(『화한삼재도회』)
		無鱗有尾(장한상)	無鱗而生毛
		魚身四足 而後足甚短(장한상)	前後足 非足乃鱗也 甚短
			前鱗狹 後鱗廣
산지	東海 鬱島	北關六鎮慶源慶興海中	我東則產於東北海上(嶺南則產於寧海關東則產於平海蔚珍三陟 北關則產於六鎮沿海慶源廣興稷城鏡城
			日本則產於奧州松前 蝦夷則產於本土海中

* 日稱 즉 일본 호칭은 변증설에는 없는 내용인데, 필자가 보충했다.

<표 1>로 보더라도, 이규경이 묘사한 가지어(강치)와 물개의 특성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규경은 물개의 특성으로 “앞뒤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 지느러미인데 매우 짧다”고 했다. 이는 강치의 특성이기도 하다. 비늘이 없고 꼬리가 있는 형상도 비슷하다. 위 특성만으로 두 동물의 구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런 혼동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III. 바다사자의 사전적 정의와 가지·강치·해구

『독도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에 따르면, 바다사자(학명 *Zalophus californianus*)²⁹는 바다사자과(Otariidae)에 속한다. 다섯 발가락에 발톱 흔적은 있으나 네 발은 지느러미 모양으로 변화했다. 물개(海狗, 학명 *Callorhinus ursinus*, 영명 northern fur seal)는 역시 바다사자과에 속하지만 앞발과 뒷다리의 길이가 같으며 이들이 몸체의 1/4에 이른다. 앞다리보다는 뒷다리가 더욱 발달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규경은 「가지강치해마용융변증설」에서 ‘가지(강

29 일본 학술서에서 바다사자과를 다룬 최초는 1936년 무라타 시게마로[村田戀磨]의 『鮮滿動物通鑑』이다. 이 책에는 바다사자를 ‘아지카(あじか)’로 표기했고, 영명은 ‘Steller’s Sea-Lion’(현재 큰바다사자의 영명 임-필자주)으로 되어 있다. 『鮮滿動物通鑑』에는 ‘아시카’의 조선 명칭을 ‘해려, 해룡’이라고 했다. 한상훈 박사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학명을 ‘*Zalophus lobatus*’로 붙인 것은 1938년 구로다 나가미치[黒田長禮]다.

치)를 ‘해마’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다른 부류라고 보았다. 물소[水牛]도 마찬가지로. 그는 “東海之嘉支 卽北溟之強治 而古之所謂鯧也”라고 하여 ‘가지’와 ‘강치’ 두 부류를 옛 ‘옹옹(鯧)’³⁰의 범주에 넣어 다뤘다. ‘가지’와 ‘강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부류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지(강치)’와 ‘해구’를 분리시켜 인식했다.³¹ ‘해구’에 대해서는 이덕무(1741~1793)가 먼저 언급한 바 있다.³² 이덕무가 언급한 ‘해구’ 산지는 이규경이 언급한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이규경이 해수(海獸)의 범주에 넣은 것은 牛魚, 海馬, 海驢, 海獺, 海狗, 海豚, 海猫, 海獺이다. 이규경이 언급한 것 외에 海獅, 海鹿, 海龍, 海豹도 해수 범주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가지(강치)’로 여겨지는 것으로, 한·중·일 3국에 공통적인 것은 ‘海驢’다. 조선은 ‘해려’보다 ‘가지어’와 ‘강치’로 호칭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海驢’와 ‘海鹿’³³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海獅’는 어의대로 ‘바다사자’로 해석되지만, 조선 시대에 ‘海獅’라는 표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조선 시대에 가지어와 강치는 동일한 것으로, 해구는 다른 것으로 다루졌지만, ‘강치’라는 호칭은 이규경을 제외하면 근대기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가지’라는 호칭은 근대기에도 계속 사용되었다.³⁴

IV. ‘강치’ 호칭의 실종과 명칭 혼동

근대 이전에도 ‘바다사자’ 관련 표기가 다양했지만, 근대 이후에는 일본 명칭이 유입되고 ‘海狗’와 혼동되면서 표기의 일관성이 더 없어졌다. 1900년대의 신문을 보면, ‘可之’³⁵와 ‘臘腦臍’³⁶ 관련 기사가 같이 나오고, 특히 ‘海驢’³⁷라는 명칭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30 ‘鯧’에 대해서는 설이 일정하지 않다. 어명은 중국에서 온 것이 많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어왔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식으로 변화하였다.

31 『海狗辨證說』.

32 “을늘제(臘腦臍)는 해구(海狗)다. 우리나라의 영해·평해 등지에서 나는데 모두 수컷이다. 해마다 떼를 지어 바다를 따라 남으로 가다 남해현에 이르러 암컷을 만나 교미하다 가는데, 암컷을 낳으면 그 지방에 두고 수컷을 낳으면 동해(東海)로 옮겨간다.” (『청정관전서』 제49권, 『이목구심서』)

33 일본은 海驢를 ‘아시카’로 혼동하지만, ‘아시카’의 ‘시카’가 ‘鹿’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葦鹿’으로도 쓴다.

34 이규원의 기록과 《황성신문》 기사가 그것이다.

35 “鬱島沿革始末”, 《황성신문》, 1903. 12. 10.

36 “韓海臘腦臍”, 《황성신문》, 1902. 6. 24 (양력).

37 “海驢多産”, 《대한매일신보》, 1909. 10. 2. 기사 본문은 “북한각지에는 연안도서에 海驢가 다수 산출한다더라”고 했다.

규경도 ‘海驢’를 언급한 바 있지만 ‘가지’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海驢’는 일본 에도 시대 문헌에 등장한 이래 1900년대까지도 줄곧 등장하는데 ‘아시카(アシカ)’로 혼동한다. ‘미치’³⁸, ‘海驢’³⁹, ‘ト’⁴⁰라는 호칭도 함께 보인다.⁴¹ ‘海驢’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시 큰바다사자와 강치를 혼동했다. 1903년 『한해통어지침』에는 ‘해마(海馬)’로 되어 있고, 1904년에 나가이 요자부호가 『대하원』에서 칭한 호칭은 ‘海驢’였다. ‘驢’자가 ‘驢’자로 오기되기도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海驢’, ‘海驢(アシカ)’, ‘海驢(アシカ)’, ‘アシカ’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907년 『朝鮮水路誌』에는 ‘ト’로 나온다.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의 계기를 부여한 ‘해려어업 독점’ 신청 이후 명칭 혼동은 지속되었다. 강치와 해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도 명칭 혼동을 온존시켰다. 190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강치어업을 허가제로 하여 울릉도인의 강치 어로가 막히게 되자 한국인의 인식도 희미해져갔다.

이로 인해 1940년대의 표기를 보면, ‘海驢’, ‘海狗’, ‘물개(臘腦臍)’, ‘웃도세이(臘腦臍)’, ‘해구(海狗)’ 등으로 다양하다. 현대에 오면 한국 언론에 ‘웃도세이’, ‘아시카’라는 일본 명칭이 추가되고 있다. 1940년 《매일신보》⁴²에는 “이

‘아시카’는 ‘물개’보다 머리와 발이 크고 이번에 창경원 동물원 안에 온 ‘아시카’만 하더라도 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 다섯 자나 되며 빗갈은 적갈색을 하고 있다. …… 실은 물개가 아니고 ‘아시카’라고 한다”고 했다. 이 기사는 창경원의 동물이 물개가 아니라 ‘아시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해려(아시카)’와 ‘물개’는 언급되어 있지만 ‘가지’나 ‘강치’는 보이지 않는다.

해방 이후 ‘독섬(독도)’에 관한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되었지만 ‘강치’라는 호칭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주로 ‘海狗(웃도세이)’,⁴³ “조선에서 보기 드문 해구(海狗)”⁴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38 ‘미치’로 읽는다. 『竹嶋之御尋書の御返答書』, 『竹嶋之書附』, 1695. 12. 24.

39 『竹島圖說』(1763).

40 『통상회찬』 제50호(1905. 9. 3. 관보 9월 18일), 『鬱陵島現況』(1905. 7. 31. 보고).

41 『竹島考』(1828)에는 ‘蘆犀(アシカ)’, ‘海鹿(アシカ)’, 일명 ‘미치’ 등의 호칭이 보이며, ‘海獺’과 구분하고 있다.

42 “動物園에 珍客 海驢夫婦入養—人氣를 온몸에 愛嬌”, 《每日申報》, 1940. 6. 3.

43 “독도의 국적은 조선. 입증할 엄연한 증거자료 보관”, 《공업신문》, 1947. 10. 15.

44 “鬱陵島學術踏査隊, 獨島踏査, 意外의 海狗發見”, 《조선일보》, 1947. 8. 23.

의 울릉도·독도 답사 결과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海獸로는 海狗(오토세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해구는 울릉도민이 ‘可之’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했다. 울릉도의 ‘可之’를 써주고 ‘海狗(오토세이)’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가제’와 ‘바다사자’가 함께 보이고 있으며, 물개와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조선선악회의 울릉도 학술조사⁴⁵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석주명은 독도에서 잡아온 물개 종류는 물개보다 크므로 “日名으로는 도쑤, 英名으로는 바다사자”⁴⁶라고 했다. 석주명은 함께 간 윤익병에게 ‘가제’라는 말이 조선 기록에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홍종인은 《한성일보》에 보고기를 4회에 걸쳐 연재했지만 ‘가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신문》(1947. 11. 15) ‘학예(學藝)’란에 ‘가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⁴⁷ 가제 그림을 그려놓고 괄호를 치고 ‘(獨島産)’이라고 썼다. 신문에 기고한 윤병익은 가제와 물개, 바다사자를 구분했다. 그는 가제에 대하여 “물개속(Otaxida□□⁴⁸)의 일종이며, 學名이 Zilophus jabatus Gray, 英名 Southern Sea-lion, 日名 아시카며, 한자로는 海驢라고 쓴다”고 했다. 그러나 ‘가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가제와 같은 동물로서 “물개 Callotaria Ursina I.(英名 Sea-Bear, 日名 오토세이), 바다사자 Umetopias Jubata Schreber(英名 Northern Sea-Lion, 日名 토도), 먹바다사자(Eumetopias Gillspii Machin, 캘리포니아 가제 Zalophus Californianus)”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금

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동시대에도 가지와 가제, 바다사자가 동시에 언급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 ‘강치’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울릉도 주민 홍재현은 1947년의 진술에서 ‘엽호(獵虎)’라고 칭했다.⁴⁹ 최남선은 《鬱陵島와 獨島》(1953)⁵⁰에서 “독섬에 서식하는 해수는 국어로 가지 또는 물개, 가지는 보통으로 海驢라고 쓰는 것이니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열 마리를 거느리고 5, 6월경 새끼를 1~2마리를 낳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가지’를 ‘해려’와 동일 대상으로 보았지만 ‘물개’와 혼동하고 있음

45 조사 기간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였다.

46 『서울신문』, 1947. 9. 9.

47 이 기사는 2회 연재되었다(11.15/11.18). 필자는 윤병익(尹炳益)이다. ‘세의대 조교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브란스의대 조교수인 듯하다. 학술조사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48 미상(未詳).

49 외무부, 1955, 『독도문제 개론』, 외교문 제총서 제11호.

50 《서울신문》(1953년 8월 발표). 『신석호 전집』(1996), 679~704쪽에 수록됨.

을 알 수 있다. 이승녕도 「내가 본 독도」(1953)에서 ‘가제(海驢, 오토세이의 일종)’를 언급하고 있다. 1955년에 외무부는 ‘가지, 물개’, ‘가지어’, “일본인의 海驢 포획지”⁵¹라는 표현을 했다. 이 시기에는 ‘가지(해려)’를 물개의 일종으로 보거나 물개와 동일시하는 등 혼동하고 있었다. 다만 이때도 가지(가제), 물개, 해려는 보이지만 ‘강치’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강치’가 국어사전에 보이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조선총독부가 펴낸 『朝鮮語辭典』(1920, 일본어)을 보면, ‘가제’에 대하여 “- (石蟹·가제)”라고 했고, ‘가제’를 ‘가제’와 같다고 했다. ‘海驢’에 대해서는 “葦鹿(あしか)”이라고 했다. 『조선어사전』(1928) 역시 ‘가제’에 대하여 “蜆蛄(石蟹·가제)”라고 했지만, ‘가제’에 대해서는 “가제와 같다”고 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가제’가 보이며 ‘가제’와 동의어로 되어 있지만 강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1954년의 『국어대사전』⁵²에도 ‘강치’는 보이지 않고, ‘가제’는 ‘石蟹’를 가리킨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치’가 국어사전에 처음 보이는 것은 1957년 한글학회가 펴낸 『큰사전』이다. ‘강치’에 대해 “강치과(海驢科)에 딸린 짐승”으로 오늘날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 동물로 묘사했다. ‘해려=海驢, 해룡=海龍, Zalophus lobatus, Gray. アシカ’를 동의어로 언급했다. 이 사전에 ‘바다표범’은 보이지만 ‘바다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바닷개’에 대해서는 “해려과에 딸린 짐승”이라고 했으며 ‘海狗, 臘腸, 오토세이’를 동의어로 보고 있다. 이어 1958년에 국어국문학회가 펴낸 『국어대사전』에도 ‘강치’가 보인다.⁵³

51 외무부, 1955, 앞의 책.

52 강남형 편, 1954, 『국어대사전』, 영정서판.

53 1950년대의 사전에 모두 ‘강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세영의 『우리말 사전』(1957), 신기철·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1958)에는 ‘강치’가 보이지 않는다.

54 《동아일보》, 1957. 2. 28. 3. 2.

55 신석호, 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 8월호에 게재. 『독도』(1965)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전에서와는 달리 연구자들의 논저에서 ‘강치’가 보이는 것은 훨씬 뒤이다. 1957년에 역사학자 황상기가 연재한 독도 관련 기사에는⁵⁴ “…… (당시)는 獨島産 海驢를 可支魚라 稱함……”이라고 하여 ‘海驢’와 ‘可支魚’를 언급했다. 1960년의 『독도의 내력』⁵⁵에서는 ‘가제(可支)’를 언급했고, ‘가제(海驢)’도 언급했다. 그리고 “가제는 울릉도 사람이 오토세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기록에는 可支魚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 시기에 오면 ‘가지’와 ‘가제’를 주로 언급하되 ‘물개’와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병도는 일본이 『인슈시청합기』에서 칭한 ‘해록(海鹿)’은 ‘海驢(물개)’를 가리킨다고 했다.⁵⁶ 최남선도 1961년 12월,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보내려 써둔 원고의 일부 안에서 ‘해려’⁵⁷를 언급했다.

이렇듯 1960년대 초까지도 ‘海驢’, ‘海狗獵(웃도세이)’, ‘海狗’, ‘해구(오토세이)’, ‘可之’, ‘可支’, ‘가제(海驢, 웃도세이의 일종)’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海驢’, ‘가제(海驢)’, ‘海驢(물개)’ 등의 표기는 점차 ‘海驢’로 옮겨갔다. 이로써 한국의 학자와 언론이 대부분 가지(가제)와 해려, 물개, 웃도세이⁵⁸를 혼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에 오면서 근대기에 자취를 감추었던 ‘가제’, ‘가지어’ 호칭이 되살아나고 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사가 빈번해진 탓에 ‘가지(가제)’를 독도 산물로 보던 전통적인 인식이 되살아난 것이다.

1962년 《경향신문》은 독도를 “면적이 23정보, 동도와 서도, 암초까지 합치면 섬의 수효는 모두 36개⁵⁹ 둘레는 延 2.2킬로가 된다. 海驢(오토세이)⁶⁰의 섬이라고 소개했다. 이즈음 ‘해려’는 ‘오토세이’를 아우르는 호칭이 되었지만, ‘강치’라는 호칭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V. 1960년대 ‘강치’ 명칭의 보급

1963년 《동아일보》는 ‘창경원에서 보관중인 강치’라는 사진을 실었다.⁶¹ 기사명은 “‘물개, 鐘路서 「밤의散策」-漁夫가 잡아 맡겨논 汲 下水口로 탈출’이었고, 내용은 “서울밤거리에서 강치(물개의 일종)가⁶² 나타나 한때 소동을 일으킨 후 창경원 동물원에 임시수용되었다. ○문제의 강치는 길이 1미터…… ○이 강치는 경남 龜浦의 한 어부가 사료잡아 서울로 이송, 창경원에 팔려고 종로구 □□동 41 이성우(51)씨에게 위탁

56 이병도, 1963,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불교사 논총』에 게재, 『독도』(1965)에서 재인용.

57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 『독도』(1965)에서 재인용.

58 웃도세이는 울눌제의 새끼를 이른다. 사료상의 ‘海狗’가 모두 ‘물개’인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한상훈 박사 의견).

59 독도의 부속도서를 36개로 보던 것이 84개로 바뀌게 된 배경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60 “독도의 근황”, 《경향신문》, 1962. 9. 18.

61 《동아일보》, 1963. 5. 6.

62 원문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보관한 것인데 하수구로 빠져 「밤의 산책」을 나온 것”이라는 것이었다. 강치를 물개의 일종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강치’ 호칭이 부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3년판 『국어대사전』⁶³에는 강치를 “물개과에 딸린 바다에서 떼를 지어 사는 짐승”으로 설명했지만 한자 표기는 없다. ‘가제’를 “가제과에 딸린 민물개”로 설명했지만, ‘가제’는 보이지 않는다. ‘바다사자’라는 표제어도 보이지 않는다.⁶⁴ ‘바닷개’에 대해서는 “물개과에 딸린 짐승, 사지가 짧고 오리발처럼 되어 헤엄치기에 편리함, …… 수컷의 생식기를 해구신이라 하여 강정제로 유명하다”고 했고, 해구(海狗)와 물개를 바닷개의 유의어로 보았다. 이외에 국어사전에서 강치와 유의어로 나온 것은 海驢·海龍이다. 1963년경 강치는 해려·해룡과 유의어로, 물개는 해구·바닷개와 유의어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사전에는 강치가 해려⁶⁵·해룡과 동의어로 나온다. 학술적으로는 가제와 해려가 동의어로 다뤄지고 있었으나, 사전에서는 가제와 해려를 동의어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제’가 ‘강치’, ‘해려’와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에 와서다. 1975년 한갑수가 펴낸 『국어대사전』에도 ‘강치’가 나오는데, “물개과의 바다짐승”이라 했고, 해려(海驢), 해룡(海龍), sea-lion[あしか]을 함께 써주었다. 영어명과 일본명을 함께 써준 것이 특징이다. 1976년판 『한국어대사전』(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현문사 발행)에는 “강치=가제=해려=해룡”으로 나와 비로소 강치가 가제와 동의어가 되었다. ‘바다사자’는 따로 나온다. 1981년의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도 ‘바다사자’는 따로 보이며, ‘가제’에 대해서는 “① 강치, ② (방) 가제(전남, 제주)”로 되어 있다.

이렇듯 1960년대에 ‘강치’ 호칭이 부활했지만 해려, 해룡, 가제 등과 동의어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물개 또는 물개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지금도 일본 문헌상의 ‘海驢(あしか)’를 ‘강치’로 번역하지 않고 ‘물개’로 번역하는 연구자도 있다. 광복 후 ‘가지(가제)’라는 호칭이 부활했는데도 국어사전에서는 ‘강치’ 호칭이 1950년대에야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

65 이희승이 펴낸 것으로 초판은 1961년(민중서관)에 나왔고 1963년은 재판이다. 국회도서관에는 1963년판만 소장되어 있다.

66 바다표범이 ‘海豹’로 나온다.

67 1971년 국어국문학회가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강치에 대해 “강치과(海驢科)에 딸린 바다짐승”으로 기술하고 있어 강치과와 해려과를 동일시하고 있다.

까? 이규경이 강치와 물개를 구분했음에도 현대까지 혼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海驢, 海龍, 海狗, 膾膾膾 외에 아시카, 옷토세이 등 외래 명칭이 유입되어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전후해서 ‘아시카(해려)’라는 호칭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가제’나 ‘강치’ 호칭의 부활을 지연시켰을 것이다.

VI. 언론에도 ‘바다사자’ 등장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언론에서도 ‘바다사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사상으로는 1975년에 ‘sea lion’이 보였지만 ‘바다사자’로 명명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1967년 《경향신문》(10월 31일)은 미국 수족관의 동물을 소개하면서 ‘바다의 사자’라는 이름을 거론했다. 1968년에도(10월 16일) ‘바다사자’ 한 쌍이 창경원에 입주했음을 보고했다. 동해의 바다사자는 아니지만 바다사자가 한국에 소개된 효시다. 독도의 바다사자가 보도된 것은 1970년대다. 1976년 《동아일보》(7월 24일)는 ‘이대 조사반’이 독도에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울릉군 공보실장이 1960년 이후 서도 가제바위 부근에서 새끼 한 마리를 그물로 잡았다고 증언한 사실도 보도했다. 독도의 서도에 가제바위⁶⁶가 있다고 함으로써 울릉도만이 바다사자를 ‘가제’로 불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1979년(7월 31일), 《동아일보》는 강원도 희귀동물 139종을 소개하면서 ‘동해의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 ‘강치(바다사자)’⁶⁷로 병기되기에 이른다. 예전에는 ‘가제(海驢)’로 병기했다면, ‘강치(바다사자)’로 병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강치’와 ‘바다사자’가 자연스럽게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제’나 ‘해려’가 아니라 ‘강치’나 ‘바다사자’를 주로 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굳이 찾는다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아닐까?

⁶⁶ 울릉도에도 가제바위, 가제굴이 있다.

⁶⁷ 《경향신문》, 1998. 8. 19.

이런 변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도 관련 저서에서는 ‘강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독도 총서가 1985년⁶⁸과 1998년⁶⁹에 나왔지만, ‘강치’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1998년 신용하는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1권에서 이규경의 ‘울릉도 사실 변증설’을 실었고, “가지어는 동해안 어민들이 속칭 ‘강치’

라고 부르던 海驢(zalophus gillespii)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⁷⁰고 했다. 이것이 독도 관련 저서에서 ‘강치’를 언급한 최초가 아닌가 한다. 이후 ‘강치’는 독도 관련 저술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1992년에 나온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에는 ‘바다사자’를 “물개과의 한 종으로 물개과 중 가장 크며, 북태평양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한국 동해안 및 홋카이도까지 나타난다”고 기술했다. ‘강치’에 대해서는 “강치과의 바다짐승으로 몸은 물개와 비슷하나 앞뒷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이라고 했다. 강치의 동의어로서 ‘가제’와 ‘해룡’을 언급했고 ‘가제’를 방언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강치와 물개를 혼동하고⁷¹ 있음이 엿보인다.

이렇듯 ‘강치’와 ‘바다사자’는 국어사전에 늦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의가 해양생물학적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강치와 가제, 강치와 해구, 강치와 바다사자를 혼동하는 경향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가제’는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증언했지만, 강치나 바다사자와도 다른 종류로 다뤄지기도 했다. 최학근의 『한국방언사전』(1978)을 보면, ‘가제’가 강치를 가리키지 않는다. 다만 이 사전은 ‘가제’는 경북(영덕)과 강원(호산, 전남(강진, 고흥)의 방언으로, ‘가제’는 전남(진도, 완도), 제주(노형), 경북(울진) 전남(해남, 장흥)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⁷² ‘가제’와 ‘가제’가 둘 다 방언이라는 점도 ‘가지’가 이에 대한 가차 표기임을 방증해준다.⁷³

⁶⁸ 1985년 한국 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는 독도 전문가의 글을 모아 『독도 연구』를 펴냈다. 이 책에도 ‘강치’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정문기는 ‘물개(海豹)’로 표현했고, 같은 책에서 송병기는 ‘可支魚(可支·可之·海驢, Zalophus lobatus)’라고 표현했다. 일본 측 문헌을 인용하여 설명할 경우에는 ‘海驢(可支魚)’라고 표기했다. 강만길은 ‘海馬’로 표기했으며, 신용하는 ‘물개’라는 표현을 썼다.

⁶⁹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독도 연구』를 펴냈는데, 강치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김병철의 『독도: 독도자료총람』(1998)에도 보이지 않는다.

⁷⁰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1권, 1998년 초판, 331쪽.

⁷¹ 현재 여수 해양엑스포공원 안의 수족관에는 ‘South American sea lion’이라고 칭한 동물이 있다. 이를 ‘오타리아(한국명), 南美海獅(중국명), オタリア(일본명)’라고 써놓았고, 설명문에는 ‘바다사자’와 ‘오타리아물개’를 병칭하고 있다. 바다사자와 물개를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⁷² “가지도는 울릉도에서 가지가 가장(원문대로-인용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셈이다. 또한 가지어가 울릉도 사투리였음은 ……”(한철호, 앞의 글, 250쪽)이라고 하여 가지어를 울릉도 방언으로 보았지만, 가제(가제)가 방언이며 이를 음차표기한 것을 ‘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⁷³ 울릉도 출신 홍순철은 『이 땅이 뉘 땅인데』(1997)에서 ‘바다사자’로 칭하고 있다. 1950년대 일을 회상한 수기에서 ‘가제’라 호칭하지 않는 대신 당시에는 흔히 사용하지 않던 호칭인 ‘바다사자’를 언급한 것은

VII. 맺음말

이렇듯 바다사자에 관한 명칭과 인식에서 혼란을 겪은 이유는 해양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바다사자과에 3종이 있는데, 바다사자과는 다시 '바다사자아과'와 '물개아과'로 나뉘어 복잡하게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단순히 형상만 보더라도 생김새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언양 반구대 암각화에 바다사자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어, 선사 이전부터 우리나라 해안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된"⁷⁴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칭이란 대체로 그 형상을 따서 붙이지만 발견지의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규경이 말한 강치의 산지 '북해'는 북관 6진(六鎭)⁷⁵ 지역의 해안을 말한다. 그런데 장한상의 조사보다 앞선, 성종 연간 '삼봉도' 조사 당시의 출선지는 두 곳이었다. 하나는 강원도 울진이고, 다른 하나는 함경도 지방이었다. 강원도에서 출발한 박종원은 섬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경성(鏡城)의 김한경 일행은 부령, 회령, 경원을 거쳐 삼봉도에 가서 섬의 형상을 그려왔다. 강원도에서 출발할 경우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가지만, 함경도에서 출발할 경우 울릉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독도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반드시 독도에 도착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함경도 사람의 삼봉도, 즉 독도 발견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당시 '바다사자'가 울릉도와 독도에 모두 서식했다고 한다면, 동해인 외에 북해인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북해인의 호칭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독도 강치는 울릉도 사투리였던 '가지' 혹은 그것이 변한 '가제'나 '가재'로 불러야 한다"⁷⁶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해와 북해, 두 지역에서 모두 '바다사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두 호칭이 모두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제'와 '강치'라는 호칭은 생성된 지역은 다르지만, 둘 다 한반도 연안에서 서식한 해수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이해하기 어렵다.

74 『독도 사전』의 '바다사자' 항목.

75 함경도 중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진을 말한다.

76 한철호, 2012, 앞의 글, 254쪽.

로 호칭을 '가지'로 제한하면 산지에서 북해를 배제하고 동해에 국한시키는 것이 된다.

'가제'로 부를 것인가, '강치'로 부를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자면, 일본이 동영상에서 '아시카'가 아닌 방언 '메치'로 칭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우리도 '가제'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제는 가제와 동의어이므로 하나로 정하기 어렵는데다 갑각류와 혼동할 우려도 있다. 또한 '메치'가 '아시카'나 '미치'를 대체할 만큼 역사적인 명칭인지도 의문이다. 일본은 '메치'라고 표현하여 지방색을 드러내려 했지만 도리어 그 자체가 비역사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문헌에 '메치'로 기술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헌에는 주로 '미치'나 '토도'로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미치'는 에도 시대 돛토리번 요나고 어민의 기록에서 보인 호칭이지 동영상에서처럼 오키 어민의 기록(구술 포함)에서 보인 호칭이 아니다.⁷⁷

'바다사자'가 독도 영유권과 관계된 해수라는 측면에서는 '가지어'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통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가지어'는 『조선왕조실록』에 일관되게 나온 명칭이기 때문이다. 신경준과 이규경은 '가지'로 호칭했지만 어류(혹은 해수)임을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는 '가지어'로 호칭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한편 전통적인 호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제'가 더 고유 호칭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언론 및 독도 관련 연구서에서는 '바다사자'보다 '강치'라는 호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가제'는 '강치'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인 명칭으로 쓰이는 정도다. 해양 관련 기관은 주로 '바다사자'로 칭한다. 국어사전은 시대를 반영하여만 들어지는데, 최근 발간된 국어사전은 대부분 '강치' 항목을 두고 있으며 설명도 자세하고 '바다사자' 항목도 따로 나온다. 한편 '가제'는 '동의어 강치, 방언 가제'라는 짧은 설명으로 끝난다. '해려'도 마찬가지로 '동의어 강치'라고 기술하고 있는 정도다.

언어란 시대에 따라 변하며 사전은 시대의 언어를

77 동영상은 구미 지역의 일본인들이 '메치'에게 먹이를 주거나 바다에서 함께 해업한 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들려준 오키 어민의 경험담은 80년 전, 즉 1930년대의 일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강치가 오키 지역에서 거의 서식하지 않았다. 또한 강치는 속성상 인간의 냄새만 맡아도 멀리 도망가는 동물이다. 동영상은 구미 지구와 독도를 구분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엮어내 영유권의 논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이 '가지어'를 쓰도록 계도한다고 해서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가제'와 '해려'라는 호칭이 '강치'와 '바다사자'라는 호칭에 포섭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호칭은 '강치'와 '바다사자'다. 둘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정해야 할까? '강치'가 엄연한 역사적 명칭이라면, '바다사자'는 엄연한 학술상 명칭이다. 호칭을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해 표기 문제와 위키피디아

오송 주몽골 대사

I. 머리말

필자가 해외 근무 중 흥미를 갖고 지켜본 상황이 있었다. 즉 2014년에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의 한국 진출을 계기로 불거졌던 동해 표기 문제다.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이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케아의 홈페이지에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가 실려 있고, 또 이케아가 그간 '일본해'로 표기된 세계지도를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진 것이다.

필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계적인 업체인 이케아가 한일 간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도 생겼고, 그동안 우리의 동해 표기 홍보활동에 대해 자성을 하게 되는 한편, 우리는 스웨덴과 주변국의 표기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반문도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였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를 인정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과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¹⁾를 잘 활용하는 데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은 2013년 필자가 해외 근무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키피디아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출처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실제로 접하고, 우리 국민들도 위키피디아를 잘 활용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직접 우리의 입장을 알려줄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필자의 경험은 위키피디아에 연관된 것이었으나, 여타 온라인 매체들에도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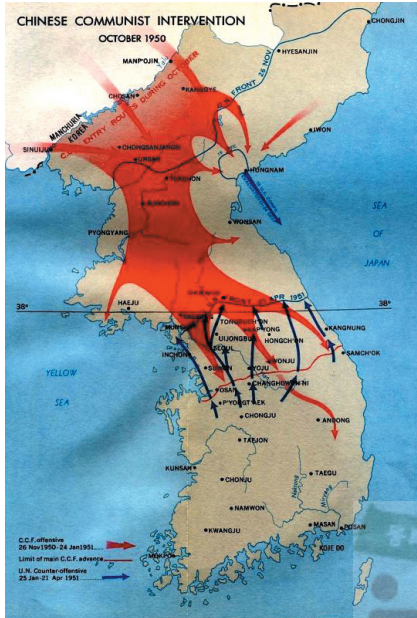
1 인터넷상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 때문에 약의적인 편집과 부정확한 내용, 내용의 질, 책임성과 권위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백과사전으로서의 지위에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방면의 지식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로 애용되고 있다. 영어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어판을 비롯하여 200여 개 언어의 '위키백과'가 있다(『두산 백과, 참조).

2 필자는 ① 동해 명칭이 2,000년 이상 사용되어온 역사적 사실, ②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1판과 2판이 각각 발간된 1929년과 193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또한 3판이 발간된 1953년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IHO 총회에 우리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어 동해 표기 주장을 할 수 없었던 역사적 경위, ③ 당사국 간 단일 지명 표기에 관해 합의될 때까지 각국에서 사용되는 지명이 병기되는 것이 국제 관행이라는 IHO 결의안 및 UN 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였다(상세는 외교부 및 동북아 역사재단 발간 동해 표기 홍보 자료 참조).

II. 동해 지명 표기 사례

필자가 해외에 근무하던 2013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따라 필자가 근무했던 국가에서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실시되었고, 그중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한국전에 관해 설명을 듣는 강연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강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전용사가 '일본해'로만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참전용사에게 '일본해' 단독 표기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²⁾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많은 참전용사들이 각급 학교와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학생들 또는



The Sea of Japan as noted in the above map is also known as the East Sea
Map courtesy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Government of Canada

〈그림 1〉 동해 지명 안내가 삽입된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웹사이트의 지도

일반인들에게 한국전에 관한 강연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고, 강연에서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이 협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한국전에 관한 5매의 지도에서 ‘일본해’로만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지도들이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동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동해 지명 표기를 요청하였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처음에 명칭 문제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① 한국전 당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도들을 활용하여 한국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지도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② 2012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지명 표기가 부결되고 ‘일본해’가 유일한 지명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임을 지적하고, 동해 표기 문제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역사의 산물인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결국 그는 필자의 설명에 수긍하고, 자신이 임의로 5매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는 것은 지도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대신에 각각의 지도 하단부에 “위 지도에 명기된 일본해는 동해로도 알려져 있다 (The Sea of Japan as noted in the above map is also known as the East Sea)”라는 문안을 추가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림 1〉 지도 밑에 녹색으로 표시된 문안이 그것이다.

III. 위키피디아의 정보 접근성 및 확산성

필자는 앞서 서술한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웹사이트 운영자와 대화하던 중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가 2012년 IHO 총회에서 동해 지명 표기가 부결되고, ‘일본해’가 유일한 지명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은퇴 군인의 신분인 그가 IHO 총회 결과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데 놀라는 한편, 그가 어딘가에서 그러한 문안을 입수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따라, 필자가 여러 자료를 수소문한 끝에 영어판 위키피디아에 똑같은 문안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위키피디아의 정보 접근성 및 확산성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서, 누구든지 위키피디아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신의 견해를 게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³

3 《연합뉴스》는 “경희대생, 동해 표기 위키피디아 오류 수정” 제하 기사에서 한 대학생이 위키피디아의 동해 표기와 관련된 글에서 오류를 찾아내 수정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상세 내용은 2013. 7. 26 기사 참조).

4 상세 내용은 위키피디아의 ‘Sea of Japan naming dispute’ 항목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필자가 한국전참전용사

필자는 영어판 위키피디아에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들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댓글(view history)을 일일이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견해들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필자의 관심을 끈 댓글들은 날짜별로 아래와 같다.⁴

- ① 국제수로기구(IHO)는 …… ‘동해’ 표기를 부결하고, ‘일본해’를 유일한 명칭으로 인정했다(2013. 3. 21).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rejected the use of “East Sea” and recognized the term “Sea of Japan” as the only title for the sea.

- ② IHO는 …… ‘동해’ 표기를 배제하려는 일본의 제안을 부결하였다. 같은 날에 한국 측은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동 결정은 2017년까지 연기되었다(2013. 7. 26).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rejected Japan’s proposal to rule out the use of “East Sea”. In the same day, South Korea requested IHO to officially use “East Sea” together with “Sea of Japan”, but the decision is delayed until 2017.

- ③ IHO는 …… ‘일본해’와 함께 ‘동해’ 표기를 위한 한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본해’의 단독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13. 7. 26).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decided not to change the current single name “Sea of Japan” despite South Korea’s request to use “East Sea” together with “Sea of Japan”.

- ④ IHO는 …… ‘일본해’와 함께 ‘동해’ 표기를 위한 한국 측의 요청을 부결하고, 현행 ‘일본해’의 단독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13. 7. 28).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협회 웹사이트 운영자의 최신 문안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게재된 댓글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많은 댓글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있다.

Organization …… decided not to change the current single name “Sea of Japan” rejecting the South Korea’s request to use “East Sea” together with “Sea of Japan”.

- ⑤ IHO는 …… ‘일본해’와 함께 ‘동해’ 표기를 위한 한국 측의 요청을 부결하고 현행 ‘일본해’ 단독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편, ‘일본해’를 유일한 명칭으로 유지하려는 일본 측의 제안도 부결했다(2013. 7. 31).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decided not to change the current single name “Sea of Japan” rejecting the South Korea’s request to use “East Sea” together with “Sea of Japan”, while also rejecting Japan’s proposal to keep the current “Sea of Japan” as a sole name for the sea.

- ⑥ IHO는 …… ‘일본해’와 함께 ‘동해’ 표기를 위한 한국 측의 요청을 부결하고, 현행 ‘일본해’ 단독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13. 9. 2).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decided not to change the current single name “Sea of Japan” rejecting the South Korea’s request to use “East Sea” together with “Sea of Japan”.

⁵ IHO는 1953년 국제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을 발간한 이후 개정판 발간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2년 IHO 총회에서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 병기 제안에 대한 결정이 2017년 총회로 연기되었지만, 또한 현재의 ‘일본해’ 명칭을 그대로 둔채 개정판을 발간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도 부결되었다. 다만, 해도집 개정판 발간에 대한 결정이 연기됨으로써 현재 상태의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 것뿐이다(상세 내용은 2012. 4. 26, 《연합뉴스》 기사 참조).

상기 6개의 댓글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기술된 반면, 다른 일부는 특정 부분만 부각되어 사실 관계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다.⁵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댓글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댓글들이 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웹사이트 운영자

의 동해 표기에 관한 인식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V. 맺음말

작년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하고, 심지어는 이케아 불매운동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필자 역시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케아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들은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케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본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가 단순한 명칭 문제에 불과해 보이는 동해 표기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 의아해하기도 했다.⁶

그간 정부뿐 아니라 동해연구회 및 반크 등 학술기관과 민간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동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민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히 대응한다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구글 모바일 지도 등은 매체들의 특성상 정부보다는 민간의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⁷ 동해 지명 표기 확산을 위한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더

6 실제로 필자가 외국인들에게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때마다 느낀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되는 것이냐 하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다가도, 동해 명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동해 표기가 일제 식민 지배 및 한국전의 아픈 역사의 산물임을 설명하면 흥미를 보이고, 이어서 IHO 및 UN의 결의안을 인용하면서 국제관행을 설명하면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실감하였다.

7 필자는 2012년 4월 해외에서 사용되는 구글 모바일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고, 또한 위키피디아에도 '한국과 일본

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학술연구기관들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2012년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는 2017년 총회로 미루어졌기에 앞으로 2년 후에 이 문제는 또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와 학술연구기관들은 계속 사료를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IHO 회원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기 IHO 총회를 슬기롭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영어판 위키피디아에서 동해를 검색하면 '일본해' 항목을 참조하라는 설명이 나오고, '일본해'를 클릭하면 동해의 지리, 기후, 어업, 해양연구, 표기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동해 표기와 관련한 내용도 '일본해' 표기 분쟁 항목에 실려 있다. 즉, 동해에 관한 내용을 '일본해' 항목에서 읽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가까운 장래에 위키피디아에서 동해 지명 표기에 관해 객관적인 내용의 댓글을 만나고, 동해를 검색할 경우에도 '일본해'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동해'라고 쓰인 항목에서 동해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를 고대한다.

간 분쟁 도서(Disputed island between Japan and Korea)'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지도 및 온라인 백과사전의 사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 다케시마=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도설 다케시마(竹島)=독도 문제의 해결 : 다케시마=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일본인이 저술한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 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의 책을 일본인이 일본에서 출판하였다는 용기에 놀랐으며, 연구자로서 필자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곧 서적을 구입하여 읽어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바쁜 업무로 차일피일하던 차에, 국회에서 책의 저자인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를 초청하여 4월 24일 국회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독도연구소에서도 저자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초청발표회 업무를 필자가 담당하면서 이 대담한 책의 저자 구보이 노리오는 어떤 인물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보이 선생(이하 존칭 '선생' 생략)은 가가와현(香川県) 나카타도군(仲多度郡) 고토히라마(琴平町) 출신으로, 가가와대학(香川大學)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동 인권교육연구협의회 보직도 역임했다. 역사학 명예박사로 사립대학에서 강연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민중역사센

터를 주재하고 있으며, 하이난섬(海南島) 근현대사연구소 부회장,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과서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위안부” 제거는 진실의 은폐』, 『지워지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 『그림으로 읽는 대일본제국의 아이들』, 『일본의 침략과 아시아의 아이들』, 『그림으로 읽는 자연(紫煙)·독연(毒煙), 대동아 환영(幻影)』, 『도설 병(病)의 문화사』, 『도설 식육·수어(狩漁)의 문화사』, 『지하군수공장과 조선인 강제연행』, 『도설 조선과 일본의 역사 빛과 그림자 전근대편』, 『도설 조선과 일본의 역사 빛과 그림자 근대편』, 『알기 쉬운 일본민중과 조선의 역사』, 『알기 쉬운 일본민중과 부락의 역사』, 『입문 조선과 일본의 역사』, 『입문 일본민중의 역사』, 『에도시대의 피차별민중』, 『근대의 차별과 일본 민중의 역사』 등이 있다.

독도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이 출판되면 우익들의 공격이 불 보듯이 명확한 상황에서, 구보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책을 출판한 2014년 6월의 시점은 아베 정권 아래 우경화가 가속되고 독도 주권에 대한 도발이 도를 넘어서던 때였다. 공립학교 교사였던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여 이 책을 출판하였다고 책 서문에서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많은 재일 한국인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일본인 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영토 교육 방침은 재일 한국인 학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국은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사에게 무조건 가르칠 것을 강요한다. 이런 교육은 함께 배우고 있는 한일 양국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영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한일 양 국민의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구보이는 현 일본 정부의 견해는 외무성 담당 부서를 포함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처음부터 결론을 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와 같은 어용 연구기관의 일면적인 학설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구보이는 “이들의 ‘다케시마=독도’ 인식은 ‘한국 병합’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선린우호를 전후 일본의 과제로 축적해온 지금까

지의 영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면에서도 가까운 친선 행사부터 개인적인 인간관계까지 왜곡을 발생시켰다. 모처럼 키워온 제일 한국인과의 공생의 기반에 상처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

구보이는 “영토 내셔널리즘의 선동을 저지하고 대립이 아닌 우호와 공생의 기반을 지키고 싶다. 기탄없이 한일 양국의 사료와 문헌을 읽고, 논의를 분석하고 현지 현장 연구도 실시해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주길 바란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관계된 서적·그림·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도설(圖說)이라는 형태로 집필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지향해온 교사 출신 역사연구가의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학교의 강요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실시되는 왜곡된 영토교육을 시정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며 이 책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이어진 다음의 기술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양 정부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재, 우선은 민간이 학술 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끌어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로 인해, 양 국민이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고 성심의 대화로 ‘독도=다케시마’ 문제 등, 양 국민에 관계된 과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제일 한국·조선인이 많다.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면 우호의 내일을 서로 구축할 수 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한일 양 국민과 한일 양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이해한다면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II. 본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의 구성은 아래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

실을 추적하는 연대기적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목차

시작하며 대립이 아닌, 평화 우호의 기반을 지키자

- 제1장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일 사건
 - 제2장 지도가 입증하는 죽도=독도의 영유권
 - 제3장 지도 분석의 정리와 발견
 - 제4장 에도막부는 죽도·송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 제5장 독도=죽도는 조선(한국)령이었다.
 - 제6장 청일·러일전쟁과 한국 침략
 - 제7장 Liancourt·Rocks(독도)의 강탈
 - 제8장 다케시마=독도의 시마네현 편입과 경영
 - 제9장 조선왕조 부조의 땅, 간도도 빼앗겼다
 - 제10장 패전 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 제11장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현상
 - 제12장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 참고문헌, 도판의 출전·소장 일람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는 구보이의 주장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직역하여 그대로 실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근세 에도막부(江戸幕府)도 근대의 메이지(明治)정부도 울릉도와 동시에 ‘독도=다케시마’를 조선(한국) 영토로 인정한 중결된 문제였다. 즉 에도 시대는 이국도해(異國渡海)를 금지했던 쇄국령의 시대였다. 1696년 정월 겐로쿠(元祿)의 돗토리번(鳥取藩) 다케시마 사건으로, 죽도(울릉도), 송도(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도해를 이국 조선국으로의 도해로 인식하고 금지했다. 또한 1836년 6월 덴보(天保)의 하마다번 다케시마 사건에서는 죽도(울릉도), 송도(죽도=독도)로 도항하는 무역은 이국과의 밀무역으로 엄중

히 처벌했다. 근대에도 메이지 정부 태정관 지령으로 1877년 3월 29일 ‘竹島外一島之儀, 本邦關係無之儀’로서, 죽도(울릉도), 외일도(독도=다케시마)를 조선(한국)영토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자 바다에도 국경선(영해)이 중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느긋한 입회(入會)의 바다에 있던 섬의 명칭은 개별 국가의 국민이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았다. 일본 어민은 조선(한국)의 울릉도를 ‘죽도’, 우산도를 ‘송도’로 칭했다. 이러한 사항이 양국의 관선서(官選書) 등 신뢰할 수 있는 문헌·그림 지도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영유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헌·그림에 대한 다른 책의 인용을 그대로 또 재인용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태만이다. 나는 가능한 한 원본 사료(史料), 그림 지도를 스스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하에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드러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1904년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 22일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시켜, 한국에서 일본이 갖는 전략요지의 점수 및 외교권에 한국의 동의를 강제했다. 1905년(페이지 38) 1월 일본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한국 영토였던 독도(다케시마)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대치하는 일본해의 제해권 요지로서 점유하고, 일본 영토화를 실행했다. 군사용 해저 전선을 깔고 망루를 세웠으며, 해군은 그에 필요한 조사를 전년도부터 실시했다. 이는 1910년의 한국 ‘병합’의 전단계가 되는 최초의 영토 쟁탈이었다. 한편 일본 측은 지역 어민의 강제잡이 신청에 응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기만이다. 최근 저자(구보이)는 일본 해군 군령부 ‘한국 및 사쓰마(薩摩)·쓰시마(對馬)·사할린 해저전선 시설사진(1904-1905)’을 보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하는 발틱함대의 예상 항로와 관련해 규슈(九州)에서 일본해 전역에 걸쳐 한국 연안·섬들, 조선해협, 쓰가루(津輕)해협에도 감시소·해저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조사와 공사를 실시한 100여 장의 사진 원판이 있다. 물론 ‘다케시마=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 어부의 신청 수리라는 위장의 논리는 이 사실들로 무너졌다.

러일전쟁 후 한국을 무장 점령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 각료에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실시하고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보호국으로 삼았다. 또한 저항하는 한국 고종 황제에 대해 “보호권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공갈 협박하고 퇴위시켰다. 이어 순종 황제 아래에서 1907년 7월 24일에 체결한 ‘제3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시정을 통감부 지도로 두고, 각료·고급관리의 임명은 통감부의 동의를 얻게 해서 국정의 실무를 장악하는 정무차관에는 일본인을 임명시키기도 했다. 이어서 한국군을 해산시키고 군사·사법·경찰권을 장악한 일본은 군의 주재군·헌병으로 무단지배를 전개해간다.

이미 1909년 7월 6일 가쓰라(桂) 내각은 ‘대한정책 확정 의 건’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요지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하고, 이를 제국 판도의 일부로 하기 위해서는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한국의 방어 및 질서 유지를 맡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켜, 가능한 한 다수의 헌병 및 경찰관을 한국에 증파해 질서 유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마치 점령지를 지배한 것처럼 주둔군과 헌병경찰을 이용하여 뿌리 깊은 한일의병을 진압하면서 한국 민중의 저항을 탄압했다. 1910년 8월 22일 이제 일본 괴뢰로 전략한 이완용 한국 총리대신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한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내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에 전권으로 기명조인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게 외교권·내정권까지 빼앗겨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한 한국 정부가 1906년 울릉 군수가 보고한 울릉군 속도의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에 영유화된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게다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 중앙관청·외무성의 정무차관은 통감부에서 임명한 일본인이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영토 문제로 거론하거나, 한국을 관할하는 일본 정부에 항의할 리가 없었다. 무인도인 ‘독도=다케시마’와 달리 10만여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던 넓은 간도 지방마저 한국 정부는 어떤 의향 제시도 못했고, 한국 정부를 대신한 일본국 전권대사가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여 청국 전권대사와 국경조약을 체결한 것이 당시의 영토를 둘러싼

상황이었다.

또한 패전국 일본을 점령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군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로 울릉도·Liancourt Rocks·제주도를 일본의 통치·행정에서 제외하고 한국령으로 했다. 이 Liancourt Rocks가 ‘독도=다케시마’다. 그러나 미소 냉전 하에서 전략 거점의 ‘독도=다케시마’는 한국에 반환되지 않고, 미군의 폭격훈련지로 사용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가 자국영토로서 점령 미군에 의해 인가되었다고 하는 등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평화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돌렸다. 이후 ‘독도=다케시마’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년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양국 모두 영토 분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판소에 부탁하여 판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효 지배하고 있는 측의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필요는 없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주권의 상징으로 독도를 보호·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확실히 일본이 실효 지배해왔다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커녕 국제 문제화되는 것까지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적(自己的)인 이중 기준의 모순된 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 없으며, 대외적인 알력을 조장할 뿐이다.

이상이 구보이의 주장이다. 한국의 주장과 거의 맥을 같이한다.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구보이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한 논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책 제목이 “도설 독도”인데, 지도 자료와 설명에 조금 문제가 보였다! 국회에서 발표

1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이 본인도 국회 발표회에서 이 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임을 고백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본래 연구를 충분히 숙성시켜 완성된 결과물을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아베정권의 도를 넘어서는 독도 도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초조감에, 우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고 이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회가 있는 후 이 책을 한국어로, 영어로 출판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내용상의 오류²로 인하여 번역 출판의 가치는 평가 절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이 책에는 무려 216컷에 달하는 사진과 삽화, 지도 및 기타 고문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자료의 80%는 일본 자료이며, 한국 자료는 11%, 기타 서구 자료는 9%에 그치고 있다. 필자가 일본인이므로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가 많이 활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도를 인식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자료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구보이 노리오 덕분에 많은 일본 측 자료를 접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독도 영유권 측면에서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큰 의미가 없는 지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표 1 참조)

2 오류 사례를 예를 들면, ① 29쪽의 지도, ‘China and Japan’은 독도가 없는 지도다. 아르고노트와 다즐레(마쓰시마)가 표현되어 있는데, 다즐레는 울릉도다. ② 38쪽의 지도, ‘신한 조선여지전도’에는 독도가 없으며, 울릉도만 두 번 표현되어 있다. ③ 39쪽의 지도, ‘조선여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며, 죽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에 해당되고, 송도는 울릉도다. ④ 104쪽의 지도, ‘일로청 한국동최신지도’ 역시 독도가 없는 지도다. 울릉도는 아르고노트 섬의 위치에 있고, 송도는 울릉도 위치에 있으며, 독도는 이 지도에 표현되지 않았다.

전체 자료들 중에서 사진(삽화) 자료는 58%, 지도는 35%, 기타 고문서(칙령, 지령, 기타 문서)의 비율은 7%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사진과 지도는 일본 측 자료다. 일본 측 자료가 많고, 한국 측 자료가 적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구보이가 한국 측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국 측 자료가 무수히 많지만,

〈표 1〉 이미지 자료 통계

자료 유형	한국 자료	일본 자료	기타 서구 자료	계
사진(삽화)	14	110	1	125 (58%)
지도	9	49	17	75 (35%)
기타 (칙령, 지령, 문서 등)	2	13	1	16 (7%)
계	25 (11%)	172 (80%)	19 (9%)	216

일본인인 구보이의 입장에서 볼 때, 논리를 갖춘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본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는 독도와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III. 맺음말

일본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양심 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들이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를 할 때는 한국 정부나 학계에서도 외국인 학자들이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논리나 근거가 명확한 자료나 연구 성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외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상식 밖의 가정이거나 결론 도출이 매끄럽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지도의 비중이 아주 높는데, 울릉·우산에 관한 정보는 한국 측 입장에 거의 부합하나, 서구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정보는 오류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표현되지 않은 지도를 제시하면서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식 명칭으로 표기되고 이들 두 섬이 일본령으로 표현된 지도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지도는 한국 측 입장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구 지도에 대한 오류가 많은 것은 그동안 독도 관련 연구들이 주로 한일 고지도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는 주체와 시기는 달랐다 하더라도, 한국 지도, 일본 지도, 서구 지도를 중첩시켰을 때 오류가 확연히 드러나는 지도를 사용한다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정상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의 설명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구보이의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에 나타난 이러한 부분적인

오류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구보이가 우리들에게 던져준 과제도 없진 않다. 예컨대, 구보이는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우산=독도’설에 대해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학계는 해외 학자들이 그러한 사안에 대해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그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구보이의 주장이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양심적인 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힘겨운 노력들에 우리들도 다양한 형태로 화답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영토·해양 일지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5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외교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배포에 엄중 항의 21일 :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예비회의 개최 30일 : 정부,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초청해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관료 참석 강력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NYT, 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 홈페이지 개설 보도 ; 영국 외교문서, 다오위다오 분쟁을 보류하기로 한 1982년 중일 합의사실 증명 6일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영상은 '중대한 도발' ; 한국,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 미 CIA, 한국편 지도에 독도 '리앙쿠르' 복원 12일 : 중국, 중국의 동중국해 행동 비난한 신임 일본 방위상의 발언 반박 13일 : 일본,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 예산 전년 대비 52% 증가 16일 : 일본 관방장관,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 입장 표명 24일 : 필리핀 정부, 중국 대사관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27일 : 중국, 남중국해[하이난[海南]섬 150km 남쪽에 위치한 링수이 가스전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전 발견 28일 : 일본, 덩샤오핑[鄧小平]의 다오위다오 발언 녹음 공개 29일 : 일본 정부,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차관급) 참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케시마의 날' 10주년 시마네현 자료실 특별 전시

2015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일 : '日 주민도 독도는 한국 땅' 문서 첫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마네현은 2월 22일~3월 말까지 독도 관련 패널과 자료 50점 특별 전시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경위와 죽도문제연구회 활동 소개 - 그 외 독도 시찰(1906)에 동행한 오쿠하라 교장의 자료 5점, 시마네현 출신 사진작가 구와바라가 촬영한 독도 사진(1965) 등 전시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조업방해' 문제 충돌 - 필리핀 "중국이 조업 방해" …… 중국 "고유영토 내 정상활동" 11일 : 시마네현 지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지식이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개최 …… - 日 정부 대표 3년 연속 파견 - 日 시마네현 독도 홍보시설 국가 차원 건립 요구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일 :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교수,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 20일 : 서경덕 교수 '독도 캠페인 3탄'으로 태정관지령 SNS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마네현, Web죽도문제연구소(2007년 시마네현 개설)가 보고서 작성 - 'Web죽도문제연구소'는 2013년 연구성과 등을 정리,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작성 - A4 101쪽 분량으로 1,500부 제작, 각급 기관에 배포,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 4일 :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해'에 대해 '일본해(동해)'로 병기한 초·중·고교 보조교재용 지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 17일 : 美 국무부 한국 여행정보 지도에 누락되었던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 ; 日 센카쿠제도 자국령 주장 뒷받침하는 1969년 중국 지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 23일 : 日, 독도 관련 정보 '특정 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이 확인 ; 美 한인 단체들, 구글 지도 독도 표기 복원 서명운동 전개

2015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일 :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발족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日, '독도 도발'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日 독도영유권침탈·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 ; 호사가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시한 1897년 판 <대일본제국전도>를 공개 - 이 지도는 일본 농상무성이 발간한 일본전도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호주 동포도 日 교과서 독도 왜곡에 적극 대응 - 규탄 성명, 독도 단체 탐방, 독도 사진전 등 활발한 움직임 24일 : 日 역사학자 "일본 정부 자료는 '해적판' …… 독도는 한국 땅" ; 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적극 검토"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8년 日 해군의 울릉도·독도 『측량일지』 발굴 - 한철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당시 아마기함 함장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가 작성한 『조선동안수로지(朝鮮東岸水路誌)』와 『측량일지』를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찾아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 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시마네현 '죽도대책실' 홈페이지에서 '竹島' 로고가 새겨진 '죽도자료실' 명함을 공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사용하여 이른바 '竹島'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함 24일 : 중국, 남중국해서 필리핀 어선 단속 …… 영유권다툼 격화

2015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 독도 방어훈련 실시 -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구축함, 해경 경비함 등 합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공군 전투기 등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일 : 일본 시마네현의 마쓰에[松江]·이즈모[出雲]·오키제도[隱岐諸島]가 프랑스의 저명 여행가이드북 '부르가이드' 개정판에 3성(星) 관광지로 선정됨 14일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에 대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며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독도는 분명히 한국 영토"라고 밝힘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외교장관, 영유권 갈등 - 존 케리(John Forbes Kerry) "남중국해 인공섬 우려", 왕이[王廣] "중국의 합법적 권리" 18일 : 美 전문가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접고 일본군위안부에 배상하라"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지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투고 요령]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초판 1쇄 인쇄 2015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